

| 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노동이 **당당한** 나라



| 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

# 노동이 당당한 나라



발간사 • 006

 내 삶을 바꾸는 10대 약속 • 008

✓  
**생애주기별**  
공약

아동 • 014  
청소년 • 021  
청년 • 029  
중장년 • 037  
어르신 • 044

✓  
**대상별**  
공약

노동 • 056  
농어민 • 065  
중소상공인 • 074  
빈민 • 083  
여성 • 092  
장애인 • 103  
소수자 • 110

✓  
**5대**  
근본개혁  
과제

정치개혁 • 120  
사법개혁 • 129  
재벌개혁 • 137  
조세개혁 • 145  
언론개혁 • 155

7 대  
국민 불안  
해소

보육 • 166  
교육 • 173  
주거 • 183  
일자리 • 195  
건강 • 200  
안전 • 208  
기본복지 • 217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

산업통상 • 232  
금융 • 241  
과학기술 • 250  
정보통신 • 260

정의로운  
시대 전환

에너지기후 • 268  
생태환경 • 277  
동물복지 • 286  
문화예술 • 292  
국방 • 299  
외교통일 • 310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지방분권자치 • 322  
지역균형발전 • 331  
지역별 공약 • 339  
행정조직 • 357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 • 364

 공약가계부 • 370

## 노동이 당연한 나라를 향한 정의당의 약속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땀 흘려 일해도 이유 없이 반값 취급받는 비정규직과  
직장과 가정을 오가면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워킹맘들의 나라이고,  
고시원과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에게 헬조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재벌공화국 60년의 잔혹사를 끝내야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6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2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민주정부 시절 남북관계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도 먹고사는 문제 있어서는 늘 기득권 편이었습니다.  
이제 60년 기득권체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먼저, 재벌경제체제를 끝내겠습니다.  
재벌3세 경영세습을 근절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기간제, 파견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금지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과감한 사회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자와 지급 기간을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실업부조와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노동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는 친노동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당연한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변화의 정치,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심상정과 정의당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17년 4월 16일 정의당





### 약속1 비정규직 차별 없는 대한민국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사용사유 제한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
-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성과퇴출제 및 양대지침 폐기

### 약속2 농민·중소상인에게 정당한 댓가를

- 식량자급률 법제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 월 20만원 농민기본 소득, 논·밭 직불금 인상, 여성농민 지위 보장
- 중소기업 고유업종 부활, 가맹본점·본사 갑질 근절, 이익공유제 도입
- 대형마트 입점·영업 규제, 카드수수료 1%이하, 상가세입자 보호확대

### 약속3 여성 안심, 성 평등한 대한민국

- 아빠육아휴직 의무제 등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육아 분담
-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까지, 육아휴직은 16개월로 확대
- 데이트·스토킹·디지털 폭력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 다양한 가족구성을 위한 「동반자등록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 약속4 공정사회로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을

- 청년사회상속제로 1천 만원 배당, 병사월급은 54만원으로
-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 학자금 이자 1% 이하
- 열정페이 퇴출, 5% 청년고용할당제로 좋은 일자리 23만개
- 현대판 음서제 취업특혜 근절, 고졸·지방 등 기회균형채용제

#### 약속5 정경유착과 불공정 근절 등 재벌개혁

- 정경유착 재벌 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재벌 일가 특혜 폐지
- CEO 등 최고임금제와 원청과 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분할명령제, 지주회사 요건 및 금산분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 약속6 복지증세로 불안과 걱정 없는 복지사회

- 사회복지(22조)·법인(11조)·소득(15조)·부동산(15조)세 등 복지증세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고교 무상교육
- 공공주택 연 15만호, 주거급여 20만원,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 미용성형 이외 100% 보험적용, 어린이 병원비와 암치료비 무상



### 약속7 장애인자립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주거권 보장 등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 아동수당 10만원과 상병수당 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강화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청년부터 실업부조 도입

### 약속8 자연과 인간,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로 탈핵2040 실현
- 동아시아환경협력 사무국,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감축해 대기질 개선
- 4대강 단계적 재자연화와 하천습지 복원, 물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
-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권 보장, 반려동물 의료보험 등 동물복지 실현

### 약속9 전쟁 대신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

- 사드배치 철회,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북한 핵 동결, 비핵평화체제 수립
- 한국형 모병제, 치유지원 전담센터, 기무사 해체, 문민 국방장관 임명
- 개성공단 재개, 5.24조치 해제, 남북교류협력 재개 등 공동번영 시대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약속10 적폐청산과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세월호 및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범죄수익 전액 환수
- 친일과 훈장 박탈,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
-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공수처 신설과 검사장직선제, 전관예우 근절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생애  
주기별  
공약



---

아동 | 청소년 | 청년

중장년 | 어르신

---

생애주기별 공약

**아동**



- 
- 1 모든 출산 가정에 임신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실시
  - 2 핀란드형 마더박스로 공평한 생애 출발
  - 3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책임
  - 4 아동수당 도입
  - 5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 6 친환경 그린스쿨과 폭력예방 설계

## 1. 모든 출산 가정에 임신부 ·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실시

### 진단

- 현재 대다수의 임신부들이 2~4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엄마와 아이가 친밀감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를 분리하기 때문에 자녀 정서발달에도 좋지 않고 임신부들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는 신세에 다를 바 없음. 게다가 집단감염 우려,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
- 2013년 서울시는 3개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0개 자치구에서 임신부와 태어난 아기(만2세까지)에게 전문 인력에 의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호주 시드니에서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기의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간호사의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산모 및 아이의 건강관리, 산모의 양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임.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출산 전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보편적으로 이미 국가가 책임지고 있음

### 약속

- 모든 출산 가정에 ‘임산부 · 영유아 방문건강제’ 시행
-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전산후관리, 산후우울증 등 건강체크, 올바른 육아 정보 제공, 모유수유 방법,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사업



## 2. 핀란드형 마더박스로 공평한 생애 출발

---

### 진단

- 빈곤아동 지원 국제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발표한 엄마 행복지수에서 핀란드가 2013년, 201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함. 그 이유 중 하나가 정부에서 모든 임신부에게 최고급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마더박스를 제공하기 때문임
- 핀란드의 마더박스는 출산용품 고민해결과 함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평등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음

### 약속

- 모든 출산 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 축하편지, 체온계, 침구 및 수유필요제품, 계절별 옷, 동화책 등 최고급 출산육아종합물품 제공(핀란드는 약 100만 원 수준)
- 핀란드형 마더박스로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평등교육 가능

### 3.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책임

#### 진단

- 2014년 기준 15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병원비는 총 1.7조원임. 이중 건강보험공단 1.2조원, 환자가 5,125억 원을 부담하고 있음. 10세 미만 어린이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9%, 10~19세는 80%임. 민간의료보험료는 가입 가구원 기준으로 10세 미만 월평균 57,056원, 10~19세는 49,060원을 지출하고 있음
-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책임진다면 난치병과 병원비 공포 때문에 굳이 월 5~6만원에 달하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어린이 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약속

- 0~15세까지 780만명 입원진료비(비급여 포함) 100% 무상
  - 소아암, 심장병, 희귀난치성 환아 등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의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 어린이 병원비 100% 보장할 때 5천억 원 소요
- 담뭍세 인상분(국세로 신설된 개별소비세 등 3.8조)으로 재정 충당

## 4. 아동수당 도입

### 진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6)에 따르면, 현재 91개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 35개 국가 중 미국, 멕시코, 터키,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음. 스웨덴의 경우 1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50크로네(약 15만원)를 지급하고, 일본은 중학교까지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1만엔~1.5만엔(약 11만원~16.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은 아동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OECD에 따르면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가구들의 빈곤율을 40% 가까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가족에게도 일정부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복지부(2015) 조사에 따르면,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 정책으로 51%가 '양육의 경제적 지원 확대'를 꼽음

### 약속

-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모든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
- 클로백(Clawback, 상위층 세금환수) 제도 도입

## 5.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 진단

-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것으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폭력을 아동학대로 명확히 인식하는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 시급함
-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 발생 시 유관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인프라도 미흡함. 아동학대예방포럼(2015)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50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8만 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상황임
- 학대행위자가 주생계자인 경우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월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해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

### 약속

- 대국민 홍보 강화, 눈높이 예방교육·홍보로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 강화
-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확대 적용
- 긴급생계비,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아동·가족지원 강화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상담·교육 의무화, 사례관리 강화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전문기관·쉼터 종사자 확대 및 처우개선
-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유관 기관 간 정보제공 내용 명시
- 아동유기 근절을 위해 출생한 아동에 대한 공적보호 체계 조기 작동

## 6. 친환경 그린스쿨과 폭력예방 설계

### 진단

-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오래된 학교건물이 29%, 내진보강 필요한 곳은 76%, 석면 있는 학교는 71%임
- 그린스쿨 사업은 2014년 중단,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는 2000년 폐지
-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범학교는 전국 226교로 적고, 위기학생 통합지원 서비스의 Wee 센터는 가정형 15곳 포함하여 204곳, Wee 스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곳임
- 전문상담교사 2천 182명으로 19%의 낮은 배치율. 공감과 갈등 해결로 학교폭력 예방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은 1천 11교에 불과함

### 약속

- 그린스쿨 사업 추진하여 낡고 오래된 학교를 친환경학교로 전환
-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개선, 재난위험시설 개보수, 냉난방기 등을 지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 범죄예방환경설계 학교, 가정형 Wee 센터, Wee 스쿨 확대
-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회복적 생활지도
-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

생애주기별 공약

# 청소년



---

- 1 선거권 연령 만 18세, 교육감 선거권은 만 16세로 하향
- 2 공공 청소년기관·시설 확충과 청소년지도사 의무 배치
- 3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4 일반고 무상, 직업고 2배,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환
- 5 시민교육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 6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실시
- 7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 1. 선거권 연령 만 18세, 교육감 선거권은 만 16세로 하향

### 진단

-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8세 또는 그 이하가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세계 190개국 가운데 147개국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임
- 선거권·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정당법상 정당가입 연령 제한,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등 청소년을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일련의 규정을 폐지해야 하며 교육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약속

- 선거권 연령 만18세로 하향 조정
- 교육감 선거는 선거권을 만 16세로 하향 조정해 청소년 참정권 강화
- 정당가입 연령에 대한 정당법 규정을 개정, 정당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선거운동 연령제한 폐지
-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지방의원은 25세에서 18세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에서 23세로, 대통령은 40세에서 35세로 낮춤

## 2. 공공 청소년기관 · 시설 확충과 청소년지도사 의무 배치

### 진단

- 전국청소년정책연대(2016)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청소년시설 설치률은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은 79.7%(227개 지자체 중 158개 설치), 청소년문화의집은 6.3%(3,487개 읍면동 중 219개 설치)에 불과함
- 2016년 자유학기제의 추진으로 진로탐색 · 체험활동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지도사 등이 크게 부족한 상황. 이러한 공공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가 성행하는 실정임.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저급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청소년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주요 국가의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시설 당 청소년인구가 1.4만 명에 달하는 반면, 독일 440명, 프랑스 504명, 영국 3,564명으로 최대 4배에서 31배까지 격차가 나고 있음

### 약속

- 공공 청소년기관 · 시설 확대
- 공공 청소년기관 · 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의무 배치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 3.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진단

-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 방과후학교, 토요일문화학교 등 공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교육부의 '2015년 학교체육 예술교육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지도자, 프로그램,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입시교육으로 인해 고등학생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은 저조한 편임
- 문화예술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예체능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입시를 준비하기 어려워, 학원교습, 개인레슨 등 개인적으로 상당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함

#### 약속

- 아동, 청소년 국공립 박물관·과학관 무료 입장 법제화
- 공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통합적 교과목, 교육과정 개발
-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교사 및 지도자 확충
- 과도한 예체능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예체능 계열의 입시제도 개선

## 4. 일반고 무상, 직업고 2배,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환

### 진단

- 우리 고등학교는 서열화.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을 먼저 선발하여 일반고 슬럼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입시기관처럼 운영되기도 함
-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 걱정 없는 나라 되면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감소.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직업교육 중점 투자 필요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비중은 19%. 선진국 평균은 47%임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아님

### 약속

- 일반고 선택과목 중심 무학년제, 인근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수학습경비 추가지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특목고 등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처럼 후기로 조정.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 초·중 학교급식 식품비 절반을 국고 지원, 고교까지 무상급식. 급식지원센터 확충하여 로컬푸드 선순환. GMO·방사능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 직업계고 2배. 최신 교육기자재와 추가 교수학습경비 등 행재정 지원. 직업계고 사이의 격차 해소. 전공과 연계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하고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 고졸취업장려금,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지원. 기존 근로장려금보다 대상 및 혜택 확대

## 5. 시민교육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 진단

-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임. 다양성, 인권 존중, 공감과 배려, 비판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것이나,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임
- 내년 2018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예정으로, 국정 교과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방식임
- 국정, 검정, 인정 등을 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은 안정성 부족과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릴 수 있음

### 약속

- 시민교육 3종 세트(민주시민·세계시민·평화시민)를 개발하여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하고, 교과서 교수학습자료 교원연수 지원
-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고 2019년부터 검정교과서 사용. 개발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충실히 준비하고, 내용 관련 교육과정 개정
- 국정, 검정, 인정 등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정책 실시

## 6.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실시

### 진단

- 한국전쟁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불온시하는 시각이 많음. 일상에서도 경찰서에 붙은 수배전단에 범죄 용의자의 용모를 ‘노동자 풍’이라고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남
-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1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도록 편성한 교과서가 있으며,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1/4 정도의 분량을 노동문제로 채우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시민사회 과목에서 1년 동안 1/3정도의 비중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임

### 약속

- 현재 학교 위주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
- 초·중·고등학교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 7.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 진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교생 가운데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못해 교통비·통신비·급식비·간식비 등을 스스로 벌어서 쓰는 경우가 29.0%에 달함. 2013년 기준 근로 청소년은 대략 22만 여명 정도로 15~18살 중고생의 3분의 1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함. 일상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근로 청소년도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업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25.5%에 그쳤으며,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31.9%로 나타남. 반면,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은 경험은 중학교 15.8%, 고등학교 16.8%에 그쳤음. 201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등에 총 241개소의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었으나, 상당수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됨

### 약속

- 안심알바신고센터 확대 및 운영 개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화
- 권리구제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지원체계 구축
- 사업주 대상 홍보·교육 강화, 포레상담 등 청소년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생애주기별 공약

# 청년



- 
- 1 청년 사회상속제로 청년들에게 1천만원씩 배당
  - 2 병사월급은 54만원으로, 군복무는 6개월로 단축
  - 3 무상·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담 해소
  - 4 열정페이 근절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
  - 5 현대판 음서제 근절, 취업 기회균형과 공정성 보장
  - 6 실업급여 대상 등을 확대하고 청년실업부조 도입
  - 7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

## 1. 청년 사회상속제로 청년들에게 1천만원씩 배당

### 진단

- 2011년~2015년 상속·증여자는 262만 8,683명이며, 금액으로는 총 314조 1,710억원임(1인당 1억 2천만원)
- 2017년 정부예산 중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42억원임. 이를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사회적으로 배당하여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8년 20세가 되는 청년은 61만명이 고, 2022년은 48만명으로 감소함. 현재의 상속·증여세 수입만으로도 20세 청년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의 사회적 배당이 가능함

### 약속

-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25세까지 배당 시기 본인 선택)
- 상속·증여세 5조 4천억원(2017년 기준)을 20세 청년에게 사회적 지원금으로 배당
-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를 받는 자는 환수(클로백 제도),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천만으로 인상

## 2. 병사월급은 54만원으로, 군복무는 6개월로 단축

### 진단

- 2017년 병장기준 병사봉급은 216,000원으로 시급 1,033원에 불과해 최저임금 6,470원의 16% 수준임
- 국방부는 2017년 기준으로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13,000원의 실비(점심식사비와 교통비)만 지원하고 있음
- 군복무기간은 단순히 21개월이 아니라 입대 전 대기기간과 전역 후 취업·학업까지 포함한 ‘총 복무기간’으로 보면 최대 76개월에 육박함.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로 현역 가용자원은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약속

- ‘청년병사 최저임금제’를 실시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2017년 기준 54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애국 열정페이 근절
- 직장에서 유급 처리가 되지 않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 최저임금 지급
-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전방부대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고 징집병사는 주로 후방의 지원부대에서 6개월간 의무 복무
- 병역판정검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고교 재학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졸자의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 실시로 청년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부대에 입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3. 무상·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담 해소

#### 진단

- 2016년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 416만원, 사립대 736만원, 국립 전문대 271만원, 사립 전문대 598만원임
-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반의 반값 등록금 수준에 불과하고, 대학은 용도가 불분명한 입학금을 걷고 있음
- 2017년 알바몬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빚이 있다는 대학생 비율이 29.9%, 부채 평균 2,580만원임. 빚을 낸 이유(복수응답)로는 학비 마련(82.3%), 개인생활비(34.0%) 순임. 부채 상환 방법으로는 취업 후 월급으로 상환(65.6%)이 가장 높음

#### 약속

-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징수목적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
-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 2.5%를 1% 이하로 인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65세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 개인회생절차 상 변제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35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고,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 대상에 포함

## 4. 열정페이 근절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

### 진단

- 현재 각종 산업에서 인턴십은 대학·기업체 간 협력, 재학생 현장실습 등 교육과 실습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성수기 등에 정규 노동자를 대체하여 연장·야간근로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질된 경우가 다수임. 이로 인해 인턴십의 열정페이가 심각한 상황임
- 2017년 3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35만명, 이중 청년실업자는 54만 8,000명, 청년실업률은 12.3%임.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24.1%임

### 약속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수습기간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100% 보장하고 인턴제 폐지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상향조정(1만 5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
-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 역시 5% 이상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적용(23만개의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

## 5. 현대판 음서제 근절, 취업 기회균형과 공정성 보장

### 진단

- 공기업·사립학교 등에서 취업특혜와 같은 현대판 음서제가 만연하여 청년들의 상실감과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음
- 기업들의 지방 사립대 출신 채용 비율이 지극히 낮음
-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약속

- 고위 공직자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청탁에 의한 부당 채용을 한 기업 처벌 강화로 공기업 등 취업 특혜 근절
- 사립학교 교원임용 채용의 교육청 위탁 의무화. 사학 채용비리 징벌적 조치 강화해 친인척 취업 특혜 근절
- 기회균형채용제 도입으로 청년고용할당에서 여성 30%, 고졸이하 학력 10%, 전문대와 지방대 30% 할당
-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도입, 차별 없는 채용과정의 법제화. 나이·성별·외모·출신지역·학벌·가족관계 등의 이력서 기재 금지

## 6. 실업급여 대상 등을 확대하고 청년실업부조 도입

### 진단

- 현재 고용보험은 ‘자발적 이직(離職)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원천금지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보장성이 취약함
-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못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임금노동자는 21.0%에 이르고,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42.5%에 불과함
- 청년 취업애로계층 중 70%에 가까운 81만 명의 청년들이 실업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

### 약속

- 실업급여제도 개선.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 청년실업부조 도입. 15세~35세미만 청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에 대한 청년 실업부조 도입. 소득 7분위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1년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50%인 월 68만원 지급

## 7. 1인 · 청년 · 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

### 진단

-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라는 대표적인 주거약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공공주택공급,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 정책 대상에서 1인 가구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대학생들의 경우 기숙사는 주거비 부담 없이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필수 교육시설이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 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주거 정책을 1인 · 청년 · 대학생 가구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가구의 특성에 맞게 전환해야 함

### 약속

-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고 청년에게 30% 할당
- 1인 가구 주거금융 지원
-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 대상 월 20만원의 대학생 주거수당 지급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생애주기별 공약

# 중장년



---

- 1 가계부채 해소
- 2 4대 가계비 부담 해소
- 3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가생활 보장
- 4 해고는 어렵게, 재취업은 쉽게
- 5 산재없는 건강한 일터
- 6 질높은 평생교육체계 구축

## 1. 가계부채 해소

### 진단

- 최고 금리가 「대부업법」의 법정이자율 연 27.9%, 개인간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제한법」 연 25%로 너무 높음
- 일본은 최고 금리를 15~20% 수준에서 규제. 미국의 경우 뉴욕 주가 연 16%, 캘리포니아 주가 연 10%로 규제.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이자 상한으로 규제
-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이자비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채무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동 비용을 포함하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됨

### 약속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동일하게 20%로 인하
-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할 경우 이자에 포함
-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이자총액제한법」)

## 2. 4대 가계비 부담 해소

### 진단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아님. 그리고 정부의 반값 등록금은 액수 낮추는 방식 아니라 장학금 주는 방식으로, 공약 완성했다 하나 체감 적다는 의견이 존재함
- 2016년 11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격은 평균 79.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7.2%)보다 3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 보장성 60% 내외에 불과함.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키워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 및 납부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 약속

- 교육비 부담 해소: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
- 주거비 부담 해소: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 사회보험료 부담 해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 사회보험료 50% 지원을 지역가입자와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
- 통신비 부담 해소.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사용 보장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 3.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가생활 보장

#### 진단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126시간(2016년)으로 OECD 회원국 중 2위이며, OECD 평균인 1,766시간 보다는 360시간, 독일(1,371시간)에 비하면 755시간 더 일함(1일 8시간 기준으로 94일 더 일함)
-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한도를 초과하는 노동자가 216만명으로, 장시간노동은 건강권 침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임
- 주 5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663만 명에게 주 5일제 적용을 의무화 하면 주당 3~4시간(연간 156~208시간)이 단축됨

#### 약속

-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하고 1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 적용
-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국경일과 공유일 유급휴일화로 모든 노동자에게 재충전이 있는 삶 보장
- 연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 상한제
- '5시 퇴근법(9to5)' 도입,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 퇴근 이후 시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등 포함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임금저하 방지 및 중소기업 부담경감 종합대책 마련

## 4. 해고는 어렵게, 재취업은 쉽게

### 진단

- 노동부가 불법적인 2대 지침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 이러한 행정지침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해고 제한이나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동의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낮춤
- 이외에 해고나 자발적 의사로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에도 낮은 실업급여,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

### 약속

-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위법한 일반해고 폐기 등으로 해고는 어렵게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구조조정)요건 강화. 경영상 해고 제한, 해고회피노력·노사협의절차 구체적 명시, 희생자 우선 재고용 의무 등
  - 저성과자 해고 지침 즉각 폐기,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해고 강제 금지
  - 해고 전 전환배치나 대기발령 등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
  - 취업규칙에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성과급제 등 노동조건 저하 내용 도입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와 합의 명시
  -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임금피크제’와 ‘성과급퇴출제’ 폐기
- 고용보험 강화로 안정적인 재취업 보장
  - 자발적 실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도 적용
  - 피보험단위기간을 3년간 180일로 완화, 급여기간 6~12개월로 확대
  - 산업구조 개편과 연동한 재취업 훈련-직업 연계 서비스 도입

## 5. 산재 없는 건강한 일터

### 진단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함. 5개 직종(건설기계, 화물, 버스, 킥, 문화예술인) 대상 '중소사업주 특례(임의가입)' 적용은 시행한지 10여년 지나도록 0.0003%만 가입. 대다수 배달대행업체는 청소년 4대보험 가입 거부. 소규모 건설공사는 보험료 징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됨. 비공식부문 노동자, 1인 사업장, 농민 등도 배제되고 있음
- 산재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게 하고, 실제 위험은 대기업이 생산하나 부담은 하청이나 용역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전가되고 있음

### 약속

- 작업 위험에 대해 노동자 알 권리 및 작업을 중지할 권한 보장
- 특수고용·해외파견노동자, 농민,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출퇴근 재해,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수면장애 등 직업병 인정
- 중소기업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입
- 청구절차를 개선해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산재 청구
- 하청업체의 산재에 대한 원청과 발주처에 대한 책임 강화, 개인실적요율제 폐지 등 영세사업장에 불리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

## 6. 질높은 평생교육체계 구축

### 진단

-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평생에 걸쳐 교육 받을 권리, 이를 지원할 의무를 국가가 갖게 됨
- 자신의 직업과 사회활동이 수준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고급의 평생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직업이동을 가능하게 해 주도록 다양한 기술 교육 등 필요
- 평생교육은 무료로 제공되고 충분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온라인을 통해 풍부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약속

-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교육센터 구축을 통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권 보장
- 대학과 연동한 평생교육원 확대
- 수준 높은 다양한 기술교육 확대
-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강화

---

생애주기별 공약

# 어르신

---

“누구나 존엄한 노년기 보내기”

- 1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께 기본적인 소득 보장
- 2 부양 의무 자격기준 대신 기본적 존엄 보장
- 3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참여경로 개발
- 4 삶과 삶을 통합하는 존엄한 노년기 보내기
- 5 평생을 살아온 삶터를 지키도록 주거환경 개선
- 6 편찮으신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한 좋은 돌봄체계 구축
- 7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 8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
- 9 ‘착한 장례식장’ 과 ‘표준장례비용’ 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 1.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께 기본적인 소득 보장

### 진단

-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률은 2013년 49.6%로 OECD 회원국 중 1위 이고, 33개국 평균 12.1%의 4배에 달함(OECD, 2014)
- 우리나라 노인이 빈곤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이 미비하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이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 약속

- 100%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 방식 폐지, 국민연금 A값 연계
  - 캐나다의 클로백(상위층 세금환수) 제도 도입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 군대·실업크레딧 확대, 양육크레딧 도입
  - 국민연금 불신해소 위해 국가지급 의무 법에 명시
- 1층(기초연금)-2층(국민연금)-3층(퇴직연금) 체계 구축
-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신설
  - 월소득 14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에게 현행 ‘두루누리’와 동일하게 국민연금료 지원
- 국민연금기금의 적절한 관리로 재정건전성 강화

## 2. 부양의무 자격기준 대신 기본적 존엄 보장

### 진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2010년에만 117만 명이 절대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
-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하더라도 복지수급관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 필요함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임

### 약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 세금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 체납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위험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선제공
- 정부조직이 아닌 제 3의 조직과 인력을 통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 3. 노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참여경로 개발

#### 진단

- 65세 이상 노인의 28.9%가 현재 일을 하고 있음. 현재 일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돈마련이 8.6%로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하고 있음. 반면, 시간 보내기 3.6%, 능력발휘 3.0%, 건강유지 3.1%, 경력활용 1.8% 등 경제 외적인 이유로 일을 하는 경우도 10% 수준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게다가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한 노인 인구가 높아지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일자리 참여 욕구도 높아질 것임. 따라서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와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임

#### 약속

-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맞춤형 사회적경제영역 지원 확대
- 고령친화적 사업장 연구 지원
-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고령노동자지원팀 설치
- 노동역량 감소를 고려해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다양화
-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법제화



## 4. 삶과 삶을 통합하는 존엄한 노년기 보내기

### 진단

- 노인의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적절히 마련된다면, 노년기 주요한 욕구인 자아통합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국의 경우 노년기 문화 활동 참여비율이 성년에 비해 높는데 반해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문화 활동 및 지속적 교육체계, 사회공헌활동 등이 제한되어 사회적 지위 감소와 단절을 경험하고 고립, 소외되어 감

### 약속

- 노인문화활동 참여 사회서비스 개발
- 문화산업에 있어 고령자 혜택 지원
-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한 대학의 고령자 평생교육지원체계 개발
- 경륜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및 지원
  - 어르신이 대접받는 지역사회,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어르신 역할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자 일자리’ 신설
  - 어르신 당사자가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통해 의미 있는 노년보내기
- 세대 간 연대와 연대의 경험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봉사 바우처 도입’

## 5. 평생을 살아온 삶을 지키도록 주거환경 개선

### 진단

-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 즉 Aging in Place는 현행 노인 관련 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Davey et al., 2004). 따라서 나이 들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약속

- 노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도입 및 확대
  - 의료인, 사회복지사 건강·복지서비스 제공, 편의시설 설치
- 독거노인을 위한 홈쉐어링 및 원룸형 공동주택 도입 및 확대
  - 개인공간과 공동생활공간 보장, 이동편의와 안전대책 확보
- 주거급여 2배 확대(부양의무제 폐지, 월 11 → 20만원으로 인상)
-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노인가구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역밀착형 주거 지원 확대
-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장기요양제도 내 주거지원 급여 신설
-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가운전자지원 혜택 마련,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 6. 편찮으신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한 좋은 돌봄체계 구축

### 진단

- 2015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21조 9,210억원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하는 상황임. 고령화 진행에 따라 이의 진료비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또한 만성질환은 의료를 포함한 돌봄의 욕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함.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2014년 기준 노인인구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 약속

- 보편적 방문보건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 노인장기요양대상자 매년 1%의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 공립장기요양시설(현재 1.4%) 확대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일본과 독일 등에서 실시하는 방문재활급여(물리치료서비스) 신설
- 집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 노인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양시설 특화서비스 신설
  - 호주 등과 같이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요양서비스를 특화서비스로 급여내 신설
-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한 요양서비스 인력지원

## 7.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 진단

-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0,569건으로 전년도보다 4.0% 증가함. 매년 신고접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과 국민적 관심 저조로 인하여 노인학대의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하고 있음

### 약속

-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대우법(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상담원 확대·처우개선, 보수교육 전문화
-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방지 대책 강화
  - 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 시설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 마련
-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 의무화로 재학대 방지
- 노(老)노(老) 학대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취약노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노인 단독 및 노인부부 가구 지원체계 강화

## 8.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

---

### 진단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식불명이거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하여 3.9%만이 찬성을 하고 있고, 절대 다수인 88.9%가 반대하고 있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2018년부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존엄사가 가능해짐. 반면, 죽음준비교육(0.6%)이나 유서작성(0.5%) 등은 소수만이 하고 있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와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함

### 약속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마련
  - 병원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9. '착한 장례식장' 과 '표준장례비용' 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 진단

- 2015년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평균 장사비용은 1,380.8만원임. 응답자(790명)의 68.7%는 국가경제, 효율성 차원에서도 '작고 검소한 장례문화로 가야한다'고 대답함
- 장묘 상품의 가격 표시에 있어 사설 수목장 업체의 14.6%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음. 장묘상품의 거래조건을 홈페이지에 전혀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78.5%로 매우 미흡함
- 과도한 장례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5년 5월 서울의료원이 '착한 장례 서비스' 운영을 시작함. 조문객 200명을 기준으로 안치, 발인, 운구, 화장, 봉안까지 장례 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600만원 수준으로 낮춤. 이밖에도 전북 순창군, 수원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부대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값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약속

- '착한 장례식장' 운영으로 반값장례비 실현
  - 공공병원 장례식장마다 '착한 장례서비스' 운영
- 매년 장례서비스 표준비용을 발표해 소비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 방지



---

# 대상별 공약



노동 | 농어민 | 중소기업인 | 빈민

여성 | 장애인 | 소수자



---

대상별 공약

**노동**



---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

- 1 비정규직 차별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 2 노동시간 단축으로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 3 정리해고와 성과퇴출 없는 안정된 일자리
- 4 최저임금 1만원과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 5 헌법적 가치인 ‘노조 할 권리’ 제한 없이 보장
- 6 갑질 손님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 없는 일터
- 7 노조가입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와 효력 확장
- 8 산업재해 등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일터

## 1. 비정규직 차별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 진단

- 노동자의 절반인 874만 명이 비정규직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151만원에 불과, 54.6%가 1년 미만의 불안한 일자리임
- 비정규직의 확산은 청년들에게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등의 꿈을 빼앗고 중장년층과 노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과 임금 등 차별을 유발하여 우리나라를 내일과 희망이 없는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 요인임

### 약속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계절적 업무,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결원 대체,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업무에 한해서만 비정규직 채용
-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불법파견 및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 및 단체교섭 의무화
-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약 20만명)하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하는 등 특수고용 제한
-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2. 노동시간 단축으로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 진단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126시간(2016년)으로 OECD 회원국 중 2위이며, OECD 평균인 1,766시간 보다는 360시간, 독일(1,371시간)에 비하면 755시간 더 일함(1일 8시간 기준으로 94일 더 일함)
-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한도를 초과하는 노동자가 216만명으로, 장시간노동은 건강권 침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임
- 주 5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663만 명에게 주 5일제 적용을 의무화 하면 주당 3~4시간(연간 156~208시간)이 단축됨

### 약속

-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하고 1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 적용
-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국경일과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모든 노동자에게 재충전이 있는 삶 보장
- 연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 상한제와 함께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함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보장
- '5시 퇴근법(9to5)' 도입,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 퇴근 이후 시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등 포함
- 노동시간단축 관련 임금저하 방지 및 중소기업 부담경감 종합대책 마련

### 3. 정리해고와 성과퇴출 없는 안정된 일자리

: 정리해고요건 강화, 부당인사명령 무효화 및 괴롭힘 금지 및 처벌

#### 진단

- 2016년 1월 노동부의 불법적인 2대 지침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이러한 행정지침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해고 제한이나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동의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낮춰 국민경제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약속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구조조정)요건 강화. 경영상 해고 제한,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협의 절차 구체적 명시, 희생자 우선 재고용 의무 등
-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폐기 : 관련 행정지침 즉각 폐기
-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해고 강제 금지
- 해고 전 전환배치나 대기발령 등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
- ‘열정페이’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엄중 처벌
- 취업규칙에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성과급제 등 근로조건 저하내용의 제·개정 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와 합의 명시
-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임금피크제’와 ‘성과급퇴출제’ 폐기

## 4. 최저임금 1만원과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 진단

-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월 135만원)으로 미혼단신의 월 생계비인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임. 최저임금 적용인구가 450만 명(90~110% 이내 약 184만명, 미달 약 226만명)에 이르고 있음
- 지난 10년간(2006~2015) 연평균 GDP 성장률은 3.5%, 물가상승률은 2.6%인데 비해 근로자 소득증가율은 1.3%로 미미한 수준임
- 2016년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원, 전년에 비해 10%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으나 대책은 부족함

### 약속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소득주도 경제발전의 토대)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 설정 기준 합리화 객관화(근로자 2~3인 가구생계비 등)
-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을 전액 국가가 보장(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하고, 악성 체불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노동자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최고임금법」 도입(일명 ‘살찐고양이법’. 최고경영자 등 고위 임원 보수 제한)과 원·하청 간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 장시간 노동착취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강요되는 노동시간과 휴일근로 및 임금 지급 방식 무효 명시

## 5. 헌법적 가치인 ‘노조 할 권리’ 제한 없이 보장

### 진단

- 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차별이 큼
- 5인 미만 사업장의 약 350만 명(「근로기준법」 미적용)은 여전히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존재함.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성을, 간접고용 노동자는 교섭권을 보장 받지 못함
- 교사, 공무원은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 이주노동자,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서 노동기본권 침해가 만연함

### 약속

- 헌법 조문 중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을 명시
-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중소기업지원과 연계)
-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을 포함하는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으로 노조 결성권 등 노동3권 보장
- 교사, 교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과 노동비자제 도입
- 초중고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존중의식을 함양, 청소년 전담근로감독관 확대
- 근로감독관을 현재 1천명에서 2천명으로 증원하고 노경합동수사처 신설
- 노동행정업무의 지방분권을 이루고, 지방정부에 노동전담부서 설치 지원

## 6. 갑질 손님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 없는 일터

### 진단

- 사회적 민주화는 진전되었으나 직장 내에서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직급이나 세대, 성별 차이를 넘어 차별과 괴롭힘, 학대로까지 발전되는 양상임. 당사자뿐 아니라 직장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감정노동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제도가 필요함
- 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1위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함

### 약속

- 직장 내 폭언·폭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괴롭힘의 산업재해 인정. 관련자 처벌, 예방교육실시 의무화를 포함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손님에 의한 갑질 행위나 성희롱 방지 법제화. 특히 가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과 가해자를 옹호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 「감정노동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교육 의무화,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사고 산재인정
-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성별 고용 및 임금 실태 공시제 도입. 공공기관은 평가에 여성임원 비중을 평가 지표에 반영
-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 시 산재인정 추진

## 7. 노조가입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와 효력 확장

### 진단

-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에 그치고,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2%에 불과함
- 노동조합의 산별교섭이 보장되지 않고, 단체협약의 효력 또한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과 ‘필수유지업무제도’, ‘과도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가압류’ 등으로 노동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약속

- 사실상 허가제인 노조설립 신고제 전면 개혁. 설립 신고서 반려제도를 폐지하고 서류접수 즉시 설립증명서 발급 의무화. 기초자치단체에 노조설립 상담·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지원 창구 개설
-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을 의무화하고, 단체효력의 산별 전체 적용을 통해 미조직노동자 보호
- 파업 시 공격적인 직장폐쇄 금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불법적 대체인력금지로 파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
- 노동이사제, 사외이사추천권 부여 등 노동자 대표 경영참가제 도입
- 노동위원 선정 합리성 전문성 강화, 중장기적으로 노동법원 설립



## 8. 산업재해 등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일터

### 진단

- 산업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생명·안전관리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도급화는 최근 산업안전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음
-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매년 10만(2017년 108,190)명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전 교육 및 관리 부실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약속

- 중소기업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하청업체의 산재에 대한 원청과 발주처에 대한 책임 강화
- 사업장 감시와 산재인정기준 등 정책결정에 노동자 참여 확대 보장
-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한 「산재보상법」 개정 추진
-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의 산재인정 기준 조정
- 현행 현장실습제도 전면 개편.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별도로, 현장실습의 목적인 교육과 취업에 충실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실시

---

대상별 공약

# 농어민



---

“식량주권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 1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 2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실현
- 3 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 4 여성농민 소득 및 지위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 5 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마을별 공동협업 구축
- 6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농촌
- 7 오염방지로 깨끗한 바다, 풍부한 어족자원 조성
- 8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 1.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 진단

- 쌀값 폭락을 이유로 논 농지를 감축하고 논에 타작물을 경작하게 하는 등 생산기반을 잠식하고 쌀 생산을 감산하는 정책을 전개함
- 친환경직불금의 시한부 지급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농어촌의 생태계 파괴가 가속됨
- 유전자 변형 농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 안전하지 않은 저급 농축수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국민 식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약속

-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공공급식에 친환경 쌀 우선 구매 의무화
- 친환경 직불금 지속적으로 지급, 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산지소(地產地消) 지역 먹거리 수급 시스템 마련(로컬푸드 활성화)
- 지자체 가축 전염병 공공수의사 배치, 동물복지농장과 친환경축산 확대
- 생태적 친환경 귀농·귀촌에 대한 특별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육성으로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 지원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 수입절차와 유통과정에서 단계별 식품안전 검사 확대
- GMO의 상업적 이용 금지, 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 2.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실현

### 진단

- 곡물자급률 23%, 식량자급률 50.2%에 불과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안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 식량자급률 의무달성 법제화 미비로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실패함
-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지, 농민, 농가소득 정책이 부재함
- 남북 교류·협력 중단으로 통일대비 식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약속

- 「헌법」 개정 시 먹거리 기본권,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지 유지, 농민소득 보장 등 반영
-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기초농축산물 국가수매 및 공공비축 확대, 경작면적·농영인력 확대
- 비농민 소유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제 강화로 경자유전 원칙 확립
- 청년취업농제로 매년 45세 이하 청년 1만명을 청년취업농으로 선발, 5년간 월 100만원씩 정착자금 지급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이행실적 평가로 피해분야 지원, FTA 농업부문 재협상
- 대북 쌀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 통일 대비 남북공동 식량계획 수립
- 국가 전체 예산(2017년 400.5조원) 중 5%(20조원)를 농업예산으로 편성(2017년 3.6%, 약 14.5조원)하여 농업 보호 및 지원

### 3. 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 진단

- 2015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6만원으로 도시노동자가구 평균소득의 64%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경지규모 5ha(15,000평) 이상 농가는 3.4%인 반면 0.5ha(1,500평) 이하는 40%로 늘고 농산물판매금액이 연 500만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의 54%에 달하는 등 농가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 기후변화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대상과 품목이 제한되어 실효성이 미흡함

#### 약속

- 65세 미만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급)
- 논과 밭의 고정직불금을 1ha당 각각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작물이나 재배방식에 맞는 직불금 지급 역누진제 적용)
-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직불금제 개편 (세계무역기구 허용보조 총액(2017년 약 8조원)의 1/2을 직불금으로 변경)
- 비경작 농지소유자 직불금 수령 시, 직불금 환수 및 농지처분명령
- 지자체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활성화 지원
- 다양한 재해에 대한 실질 보상이 되도록 농업재해보험 보장 대상 확대

## 4. 여성농민 소득 및 지위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 진단

- 여성농민 66.2%가 농사일의 50%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시 남성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농협대의원 및 각종 민관 협의회에 여성농민의 할당이 보장되지 않는 등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
- 농사일 뿐 아니라 가사노동까지 여성농민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어 교육과 문화 등 여가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재철 꾸러미사업, 토종종자 보급사업 등 여성농민 주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성농민 맞춤형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저조함
- 농어촌 마을 주거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에도 보행로 및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여성, 노인,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약속

- 여성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고 여성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및 직불금 50% 등을 직접 지급
-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협 및 농정참여 여성할당제 제도화
- 재철 꾸러미사업, 자가생산물 농식품 가공사업 등 농촌지역 농산식품 공동작업장 지원으로 여성농민 소득창출 확대
- 행복 바우처카드를 월 2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연령도 70세로 연장

## 5. 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 · 마을별 공동협업 구축

### 진단

-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하달로 농정에 농민참여가 미흡함
- 농협중앙회가 농민 조합원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
- 품목별 자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 및 정책지도 등이 미흡하여 자조금 활성화가 미약함
- 마을기업 등 농어민 주도 공동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중간지원조직이 부실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성과가 미미함

### 약속

- 사회적 합의기구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농 · 소 · 정 위원회’ 설치
- 농정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 중앙과 시군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여성농민 50% 참여 보장하여 농정자치 실현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품목별조합연합회 중심 경제사업 전개
- 친환경 쌀 자조금 및 품목별 · 축종별 자조금 활성화
- 공영도매시장에 생산자도매직판장 개설 운영 지원

## 6.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농촌

### 진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폐합된 소규모학교는 총 246개로 대부분 농어촌지역임
- 농어촌의 독거노인가구는 36만 6천 가구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전통 상부상조체계가 약화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지역응급의료 센터 115개 가운데 군지역 응급의료센터는 5개밖에 되지 않는 등 농어촌 의료복지가 취약함

### 약속

-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확대 등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11%에서 22%로 확대, 주요 대학은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하여 50% 되도록 행재정 지원
- 정책 기조를 소위 ‘학교총량제’ 등 학교통폐합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로. 구도심과 농산어촌에 더 훌륭한 선생님 등 다각도로 행재정 지원.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 지원
- 농어촌 독거노인에게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 지정, 공중보건의 4,000명 보건소 등 배치
- 농업노동에 따른 근골격계질환(농부증)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 확대
-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



## 7. 오염방지로 깨끗한 바다, 풍부한 어족자원 조성

### 진단

- 생활하수, 산업폐수, 쓰레기, 방사성 폐기물 등으로 바다 오염이 심각함
- 어선감축과 총어획허용량 관리 실패로 수산자원이 50% 감소함
- 연근해어선 등 선령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기관 손상과 같은 어선사고가 전체 선박사고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어선법」에 따라 비치된 구명조끼가 작업환경에 맞지 않아 착용이 저조함
- 건정 등 반건조 생선과 해조류 가공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여 주민참여 가공유통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함
- 서해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어민의 피해가 심각함

### 약속

- 해양생태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생활하수, 산업폐수를 정화하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해안 및 해양생태계 회복
- 민관협력 수산자원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어선감축, 총어획 허용량 규제
- 치어 남획, 금어기 위반 등 불법조업과 유통사업자에 대해 어업권·영업권 취소
-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이전에 노후 연근해어선 기관 교체 지원
- 조업환경에 적합한 구명조끼 개발 및 보급으로 어업안전 보장
- 어류 및 해조류의 주민참여 가공·유통을 지원하여 어촌 소득 창출
- 서해안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이행,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대응

## 8.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 진단

- 지역 고유의 개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자치농정보다 제한된 재정을 중앙농정 사업의 매칭에 사용하고, 중앙농정 사업의 관리·집행·보고에 급급한 중앙정부의 하부행정 기관화하고 있음
- 농업 관련 중앙기관과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2만 6천 명에 달하고 농협 소속 직원 등 농수임업 관련 조합 종사자가 7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대국민 농정지원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함

### 약속

- 국가 농정사무와 지방 농정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그 비용과 인력 재원을 중앙이 부담하거나 지방재정 확충
- 권한·재원의 대폭 지방이양 후에도 중앙농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행하는 국가사무를 직접 시행 시, 그 구체적 집행은 농식품부 내 <지방농정국>을 통해 실시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공무원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조정하여 국민식생활 안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농업,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행정으로 재편

---

대상별 공약

# 중소 상공인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을 살리겠습니다”

- 1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하고 고유업종제도 부활
- 2 하도급업체와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3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 4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 5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김영란법’ 피해 업종 특별지원
- 6 자영업자 부채 경감 지원과 노란우산 가입 30% 지원
- 7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과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 8 상가세입자 권리보장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시대 종식

## 1.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하고 고유업종제도 부활

### 진단

- 국내 고용시장의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는 2015년 기준 25.9%로 매년 감소하고는 있으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특화된 정책의 개발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신설이 필요함
- 고유업종 제도 폐지 후 대기업들은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영역을 확대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며 권고사항에 머무르는 수준임
-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로 지정된 적합업종은 5개 불과, 지금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74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신규업종 지정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 약속

-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
- 현재 74개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 및 업종·품목 확대
- 전통떡, 빵, 김치, 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
- 고유업종·품목은 중소기업상공인부 장관이 지정·고시

## 2. 하도급업체와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진단

- 불공정한 갑을관계에서 ① 대리점업체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 가맹점업체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함
- 불공정거래 근절 관련 법안은 부분적으로만 반영되거나 미처리 되는 등의 문제가 여전함

### 약속

-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상의 위법 행위 등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적용
-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
-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 간에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 협력업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사용
- 가맹본부와 가맹점, 본사와 대리점간에 집단적 교섭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

### 3.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 대형마트 규제

#### 진단

- 1999년 처음 들어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2014년 48조원으로 약 7배 급증한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46조원에서 20조 1천억원으로 56% 감소함
-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 허가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형마트와 할인점의 문어발식 확장은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다 줌

#### 약속

- 대규모 쇼핑몰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상업지역내 입점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 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해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일제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여 골목상권 보호
- 대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경영 지도를 수행하는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상품공급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개정)

## 4.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 진단

- 현재 운영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제한된 역할을 높여, 지역마다 소상공인 관련 모든 SOS 서비스(법률, 세무, 경영 상담 등)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상권이 붕괴 되고 있는 가운데 골목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이 필요함

### 약속

- 지역별로 소상공인 관련 모든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 골목 상권 별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 소상공인업소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 사회수당의 일부와 공무원(교육, 지방공무원 포함) 복지포인트의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지원

## 5.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김영란법' 피해 업종 특별지원

### 진단

-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2억 이하)과 중소가맹점(연 매출액 2억원~3억원)은 카드수수료율을 단일률(각각 0.8%, 1.3%)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 상한선(2.5%)내에서 카드사들이 개별 가맹점과 고압적 협상을 하고 있음
- 한국행정연구원에 의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업과 유통업, 요식업의 경우 매출이 40% 감소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음식점·주점업 종사자의 수가 94만 6058명으로 2015년 12월보다 3만 778명 가량 감소함

### 약속

-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
-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는 영세가맹점 예산 지원을 통해 최소 수수료로, 중소가맹점은 현행 1.3%에서 절반수준인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로 인하
- 소상공인전용 공공 밴(VAN, 부가가치통신망)을 도입해서 수수료 인하
- 한시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은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요식업 업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적용



## 6. 자영업자 부채 경감 지원과 노란우산 가입 30% 지원

### 진단

-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2010년 평균 7,132만원에서 2014년 평균 8,995만원으로 증가함
-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19조 5천억원이며 차주는 252만 7천명에 달함
-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일명 ‘자영업자 퇴직금’)임. 2016년 6월 기준 가입자가 80만 명 정도로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약 580만 명으로 추정)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

### 약속

- 공적 신용보증 확대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금리 대출 확대하고,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 대출 이자의 최고상한을 20%로 인하
-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
- 정책자금 대출시 거치기간 연장(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 중소기업인들이 퇴직금 적립 등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회에 가입 할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중소기업인으로서 월 20만 원이하의 소액 가입자’에 대해 정부가 30% 내에서 지원(서울시 1년간 12만원 지원)

## 7.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지원과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 진단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 및 납부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에 불과함.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임

### 약속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두루누리사업 2’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사업’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

## 8. 상가세입자 권리보장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시대 종식

### 진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적용범위와 독소조항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는 임차상인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음
-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이 빠져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한 소규모점포들 역시 제외되는 독소조항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음

### 약속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면 확대
-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 실시
-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관련 재래시장 적용 제외,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점포 제외 등 독소 조항 폐지
-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조정의 강제성 부여

---

대상별 공약

**빈민**



-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 2 빈곤층 주거급여 2배 확대로 월세 걱정 해결
  - 3 빈곤층 의료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비 걱정 해소
  - 4 「두루누리 사회보험 2」 도입으로 지역가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5 노점상생위원회 구성 및 「노점관리법」 제정으로 노점 상생대책 실현
  - 6 노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와 위생기준 마련
  - 7 「행정대집행법」 개정으로 노점단속 남용 규제
  - 8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전통시장 노점상생대책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

### 진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상대적 기준인 중위소득으로 바꾸었으나 2016년 12월말 수급자 수는 16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 수준임. 빈곤실태조사가 이뤄진 2010년의 경우 수급자 수는 155만명이나 117만명은 절대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함
- 빈곤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약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약 100만 명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권 보장

## 2. 빈곤층 주거급여 2배 확대로 월세 걱정 해결

### 진단

- 2014년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14.2%)보다 월세(34.0%)의 비중이 높으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29.0%로 저소득층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음
- 따라서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2만원 이하(중위소득의 43%) 가구이며, 지급 기준은 소득에 따라 지역별, 가구원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음(81만 가구, 월 평균 11만원)
-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임대료가 적용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주거취약계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약속

-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주거급여 지급액을 월 평균 20만원으로 인상 (지원 가구수 215만)
- 주거급여 추가 소요 재원은 부동산 과표 현실화,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증가분 활용

### 3. 빈곤층 의료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비 걱정 해소

---

#### 진단

-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 150만 명으로 국민의 3%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빈곤층(전 국민의 15%)의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음
-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계층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되어 지역가입자 약 200만 세대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이용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약속

-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범위 확대
  - 부양의무제 폐지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건강보험 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15% 가구의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4. 「두루누리 사회보험 2」 도입으로 지역가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진단

-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를 통해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40~60%를 지원받고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 및 납부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약속

-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신설
  -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동일하게 월소득 14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및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 40~60%(신규가입 60%) 지원



## 5. 노점상생위원회 구성 및 「노점관리법」 제정으로 노점 상생대책 실현

### 진단

- 도시 역사와 함께 해온 노점은 도시 빈민과 서민의 주요한 생계수단이자 전통적인 생계형 자영업의 일종임. 동시에 여전히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비공식 부문임
- 노점의 영업장소인 도로의 점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노점정책의 방향이 서로 다름.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지자체는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음
- 하지만 도시의 역사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점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음. 「노점관리법」은 ‘존재하는 노점에 대해 인정’하고, 보행권 등 다른 권리보다 생존권이 우선하며, ‘공공의 거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노점상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제도와 정책을 사회적으로 합의해 가는 과정임

### 약속

- 노점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 노점상 생활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점관리법」 추진
  - 노점에 대한 인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 노점대책 상생방안, 노점상 생존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행권 등 다른 권리와 조화, 이를 바탕으로 노점단속 보다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
- 노점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완화 및 용역폭력 근절
- 지자체 허가제의 문제점 개선과 노점상생위원회 구성

## 6. 노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와 위생기준 마련

### 진단

- 음식을 조리하는 노점은 점용허가를 받아도 식품위생법상의 문제가 발생함.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상 문제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적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 이 때문에 악의적 민원이나 구청 단속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위생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음. 현재 노점단체들은 스스로 위생지침을 세우고 위생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하는 곳도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푸드트럭을 언급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허가가 가능해짐. 서울 시도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해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푸드트럭의 사례를 보면 식품노점도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약속

- 정부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 노점에 대한 위생교육과 위생인증제 도입 등 위생기준 마련

## 7. 「행정대집행법」 개정으로 노점단속 남용 규제

### 진단

-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의 절차에 대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행정대집행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고 있는 현실임
- 실제 노점에 대한 대집행 과정에서도 적치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형태로 집행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상의 심각한 손실을 만들고 있으며, 적치물을 압수하여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임. 최근 법 개정으로 야간 대집행이 금지되었으나, 이 역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실정임

### 약속

-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 시행령의 ‘대집행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명시 또는 노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 8.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전통시장 노점상생대책

### 진단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노점의 경우 10~15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함. 노점에 대한 단속 강화로 과태료를 매일 부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부과 시 노점상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됨
- 한편 전통시장 안팎에 많은 노점상이 존재하고 있음.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장 내 노점상을 내쫓았으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다시 노점을 유치하는 경우도 발생함. 노점상과 상인회가 함께 시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민원 및 대립이 첨예한 곳도 있음. 중소도시 5일장의 상인들은 대부분 노점상임

### 약속

- 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 개선
  - 과태료 부과 전까지 개선유도 기간을 두는 방식,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설정하여 금액은 낮추는 방식, 거리가게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변상금만 부과하는 방식, ‘일시적 무단점용’에 기존 노점은 포괄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방식 등
- 전통시장 내 노점상 보호대책 마련, 중소도시 5일장 안정화/활성화대책 마련
- 통행권 등과 무관하거나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처리방식 개선

---

대상별 공약

# 여성



---

“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안전한 사회 ”

- 1 「슈퍼우먼방지법」,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 2 성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3 임신부터 양육까지 국가책임제 실시
- 4 1인 가구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5 장애·이주·농민·북한이탈 여성 등 다양한 삶 존중
- 6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
- 7 신종 3대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 8 자취방 등 취약주거 개선으로 여성안심
- 9 여성건강 증진과 임신·출산 자기 결정권 보장
- 10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

## 1. 「슈퍼우먼방지법」,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 진단

- 출산전후 휴가 90일은 일본(14주)·프랑스(16주)·덴마크(18주)등에 비해 짧음.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남성 육아휴직 비중도 8.5%에 불과함
- 한국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33개 중 32위로 최하위권임. 출산과 육아로 인한 30대 초반의 경력단절의 지속이 이어짐. 특히 장기 간근로와 사내 눈치문화 등 일·가정양립 관련 낮은 제도이용률을 보임

### 약속

-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3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상·하한선 인상 : 50~100만원 → 80~150만원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12개월 → 16개월로 확대(엄마, 아빠 3개월 할당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 사업주의 가족돌봄휴직제 거부 조항을 개정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도록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 육아휴직으로 결원보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돌봄지원인력 센터 도입, 이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확대
-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강화 및 위반 시 처벌강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
-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위한 직장문화 개선과 유연근무제도 확대
- 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다양화로 전문직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2. 성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진단

- 남녀 간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6%로 OECD 평균 격차 16%의 2배 이상임
-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의 지속은 여성의 고용불안정성, 저임금 문제로 직결되며,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과 고용형태 격차에 따른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의 차별에 직면함
- 고용노동부의 고용개선조치 점검 결과, 3회 연속 직종별 여성근로자,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명단 공표가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27개소에 불과함('16년 기준, '17년 발표)
- 돌봄노동자 등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와 감정노동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스트레스와 피해가 심각함

### 약속

-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 비정규직차별금지 관련「근로기준법」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 추가
-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등에 패널티 강화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수준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교통비와 야간·휴일 서비스 할증 단가 적용 및 수당제 현실화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및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과 노동자 보호 의무 법제화

### 3. 임신부터 양육까지 국가책임제 실시

#### 진단

- 30대와 4대 초반 여성 출산율의 증가와 산전후 산모 및 아이의 건강 관리 및 양육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
- 핀란드는 모든 출산가정에게 10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공보육시설의 공급부족과 낮은 민간보육시설의 질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의 양산이 지속되며 보육교사의 처우도 매우 열악함
-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함
- 부모들은 난치병과 병원비 공포 때문에 월 5~6만원에 달하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며, 어린이 병원비 100%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연간 4조에 달하는 보험료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약속

-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해소 및 국공립 확대
- 지역 보육거점센터 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 역량 강화와 교사 처우 개선
- 보육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하면 곧바로 출동해 상황을 점검하는 '보육 119' 도입으로 아이 인권 보장
-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개방형어린이집 실시
-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 0~15세까지 780만 명 입원진료비(비급여 포함) 100% 무상



## 4. 1인 가구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진단

- 1인가구는 520만 가구(2015년)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여성 1인 가구는 261만가구(46.2%)에 달하며 주거복지가 취약하며, 한부모가족의 경우 전세, 보증부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주거 약자의 특징을 보임
- 이혼, 사별, 별거 등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한부모 가족 급증과 양육, 생계, 취업 및 정서적 문제에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2015년 기준, 약 178만 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 중 9.5%)
- 생계부양과 자녀 돌봄을 한명의 부 또는 모가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과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특히 자녀 간병을 위한 휴가 및 임신과 출산, 출산 이후의 지원이 절실함

### 약속

-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주거공약 참조)
- 한부모가족 복지주거센터 확충, 임차보증금 무이자 소액대출사업 확대, 맞춤형 공동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 육아와 구직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부모종합지원프로그램 마련
- 양육비 지급의 국가책임 강화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 사업주의 가족돌봄휴직제 거부 조항을 개정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임신과 출산 및 산후조리, 출산 이후의 지원까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구축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5. 장애 · 이주 · 북한이탈 여성 등 다양한 삶 존중

### 진단

- (장애여성) 장애여성 고용률은 19.8%로, 장애남성 고용률 49.4% 보다 매우 낮아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움
- (이주여성)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서 오는 피해, 언어 · 의사소통의 장애, 자녀양육의 어려움, 가정폭력 등이 이주여성의 안정적 지위와 인권 위협함. 또한 취업 이주여성 역시 극심한 차별과 성희롱 · 성폭력에 노출됨
- (여성농민) 농업노동은 물론 가사와 육아 등 돌봄노동을 전담함에도, 생산자인 여성농민에 대한 정당한 법적, 사회적 지위가 보장 되지 않음
- (북한이탈 여성) 적극적인 정착 지원 노력에도 구직 시 육체적 어려움 (52.4%), 육아문제(22.2%) 등을 호소하며, 정착 부적응 현상, 열악한 건강 상태, 학력과 경력 단절, 사회의 편견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약속

- (장애여성) 생애주기별, 유형별 지원 강화를 위한 성인지적 장애인 생활 자립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및 의료체계 확립
  -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배우자 폭력과 인신매매, 성매매 방지 및 보호. 취업이주여성의 노동 인권 및 가족 권리 보호 등 관련 국제협약 비준
  - (북한이탈 여성) 가족 생활을 위한 임신, 출산, 양육 등 지원.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치유, 임파워먼트(역량강화) 센터 등 장기적 대책 마련
- ※ (성소수자), (여성농민)은 소수자 공약 및 농민 공약 참조

## 6.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

### 진단

- 강남역 사건 등 다양한 여성 폭력으로 인한 불안은 정부 각종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 규제가 필요함
- 성매매 처벌에 대한 단순처벌이 대부분이며, 각급 수사기관에서 보고한 성폭력 발생건수는 29,863건(2014년)으로, 2005년 이후 지속 증가함. 직장 내 성희롱 경험한 경우는 40.5%(여성 72.6% > 남성 27.4%)임
- 전 연령대에 걸쳐 30%를 상회하는 부부폭력이 발생,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도 수반되며 2014년 22만 7,608건, 2015년 22만 7,727건으로 일일 평균 624건의 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심각한 상황임

### 약속

-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평등대우법)」 제정
- 국제사회 권고 수준의 ‘인신매매의 범죄’ 구성요건 법제화 및 성 착취, 성매매,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
- 「형법」상 성폭력 개념, 범위 확대 등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초·중·고 공교육 과정에 실질적인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반성폭력 교육안을 구체화해 성차별, 성폭력 성별 감수성 교육 체계화
-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정의의 포괄적 명시, 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폭언·폭행 예방 조치 강화
- 가정폭력 초기응급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

## 7. 신종 3대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 진단

- 지난 5년 간 데이트폭력에 따른 상해 사건은 1만 3,252건, 사망한 사람은 467명에 달하며,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폭행도 5,687건임
-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별도의 법률로 스토킹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위반에 불과함
-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1년 이후 급증한 몰래카메라 피해자의 95%는 여성이며,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기소율은 31.2%에 불과하여 경찰 등의 미온적인 대처도 심각한 문제임

### 약속

-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사전예방 및 피해 심각화 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가해자 재범 방지 및 처벌 문제 등 데이트 폭력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데이트폭력 위험이 있을 시, 가정폭력 전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형 클레어법(Claré's Law)을 도입해,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수사 기관의 의무조치 강화
- 스토킹·데이트 폭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는 특례법 제정
-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온라인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수립

## 8. 자취방 등 취약주거 개선으로 여성안심

### 진단

- 최근 '#이제\_여성의\_자취방이다'는 해시태그 운동은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의 일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심지어 공포스러운지 잘 보여줌. 이를 통해 각종 성폭력 위협과 불안함 삶의 공론화가 이뤄짐
-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2016년) 2030 청년 여성 10명 중 4명(36.3%)은 주거지 불안을 느끼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와 주거지 내부 계단 및 복도 등 은닉 장소가 불안의 주원인으로 나타남
- 여성 비혼 1인 가구, 여성 한부모 가구 등 외부와 접촉할 상황이 생기면 방어적 행동으로 집안 설비의 수리, 택배기사의 방문을 최소화하거나 마주치지 않으려 함

### 약속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설을 신설 또는 확충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 최저주거기준에 '안전기준'을 포함, 창문이나 문 등의 시건장치 여부를 방법 항목에 포함시키고 최소주거기준으로 설정
- '여성홈 방법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여성안심주택을 확대하고, 서울시 사례처럼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여성전용안심복합건물로 리모델링

## 9. 여성건강 증진과 임신·출산 자기 결정권 보장

### 진단

-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휴지, 심지어 신발 깔창을 사용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 슈화되었으며, 이는 여성 건강권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제임
- 여성 몸매와 외모를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 다이어트와 성형 열풍의 무분별한 확대와 이윤 추구 전략으로 여성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함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임
-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지의 사유로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임신중절을 위한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 합법적인 임신중절시술은 전체 5%에 불과, 95%가 불법 낙태로 추정됨

### 약속

-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의 국가 책임 강화
-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한 과도한 미용·성형산업에 대한 규제,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방송 규제 강화, 의료진 설명의무 준수, 성형의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
-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마련 및 공공의료기관(지역보건소와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 여성 건강정책 전담부서 마련
- 여성의 생애, 몸의 특성에 따른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 10.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 사회 실현

### 진단

-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지수 144개국 중 116위, 정치적 대표성 92위로 최하위권임
- 고용노동부의 고용개선조치 대상 점검 시, 여성고용비율은 37.8%, 여성관리자 비율은 20%에 불과함(2016년 기준)
-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과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만으로 공직진출,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여성가족부의 부처 체계 및 위상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15년 9월)에도 여전히 성평등 정책 철학의 선명성을 제대로 갖추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개편이 필요함

### 약속

-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 마련
- 경영평가, 부서평가 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 기업 우대 및 지원 확대
- 성평등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으로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명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으로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추진 부서로서의 기능 강화

---

대상별 공약

# 장애인



---

- 1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 2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 3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 4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 5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 6 장애여성 종합지원 체계 구축
- 7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 1.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 진단

-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이 대형시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대형 시설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며 그 자체로도 인권 침해적인 정책임. UN이 제시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려면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정착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200만원~1,200만원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지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2013년 OECD 평균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은 2.11%인 반면, 우리나라는 0.61%로 최하위 수준임

### 약속

-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국회특위(당사자, 국회, 정부) 설치
-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수립
- 탈시설을 위한 초기 지원 체계 마련
  -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제도화 및 인상
  - 체험홈 및 자립주택 등 전환주거정책 수립
-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19%로 3배 이상 확대

## 2.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 진단

- 장애인등급제(6등급)는 행정편의적인 정책의 대표적 예로 장애인을 천편일률적으로 등급화해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이는 맞춤형 복지 시대로 나아가는 현 시대상에도 맞지 않음
- 중증장애인의 경우 충분치 못한 활동보조서비스로 인해 집안 내 화재 등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의 사건 발생하고 있음
- 활동보조인의 처우 역시 열악함.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매우 낮고, 시급제 호출 노동으로 안정적 생계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 약속

- 현재 1~6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 부양의무제 폐지
-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전면 개정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현실화
- 활동보조인 임금 현실화
  - 활동보조인 이동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보장. 야간·주말할증단가 인상
  - 활동보조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 3. 최저임금 적용,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진단

-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임.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들이 있긴 하나 원천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뿐임
-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무고용제의 실효성 문제임. 대기업일수록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있음
- 소규모의 장애인자립장 뿐만 아니라 스웨덴 삼할그룹처럼 공공부문 등에서 장애인공기업 설립이 필요함

#### 약속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최저임금법」 개정)
-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편
  -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5%로 상향
  - 고용장려금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제와 연동
- 시도별 장애인공기업 설립 등 새로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발굴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개발, 작업장 편의시설 확대

## 4.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 진단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제도화되었으나 시내버스 중 일부에만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음.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는 이용이 아예 불가능함
- 지자체가 운영하는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법정의무 대수에도 미치지 못하며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갈아타야 하는 상황임
- 국·공립 특수교원 법정정원은 배정정원의 절반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기간제 교사도 상당수 차지함

### 약속

- 저상버스 확대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
  -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저상버스 100% 도입
  -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단계적 의무화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 자가 운전자를 위한 운전 장치와 차량 개발 및 보급 대중화
- 특수교육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정규직 교사 채용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기준 마련 및 지원 확대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 5.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 보장

### 진단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방송포함) 이용 시 청각장애인의 차별경험이 7.8%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에 따라 건강과 질환상태, 입원과 외래진료, 건강관리 등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특성에 맞는 건강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 약속

-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시청각 장애인 접근권 확대
  - 보완대체의사소통 제도화 등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영화관, 극장, 관광지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및 시군구 공공재활병원 설치
  - 질높은 장애인주치의제 시행 및 치과주치의 도입

## 6. 장애여성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 진단

- 장애여성 고용률은 19.8%로 장애남성 고용률 49.4%의 절반 이하이고, 의무고용제도로 고용된 장애남성은 80.5%인 반면 장애여성은 19.5%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장애여성은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에 있어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화적 차별에 놓여 있음
-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13세 미만 지적장애아에게조차 성매매 판결을 내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자기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함

### 약속

-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 적용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성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피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장애 친화적 산전산후서비스 도입
  - 장애인가족 자녀양육·학습도우미 제도 마련, 가족상담 체계화
-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 장애여성 성폭력·가정폭력에 대응해 장애 친화적 경찰·사법시스템 마련

## 7. 발달장애인 ·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 진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강제성이 미흡해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정신·발달장애인 분야의 법개정도 요구되고 있음
-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 입원 비율은 2013년 73.5%이며, 강제투약, 과도한 약물치료, 격리·강박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014. 서울정신보건지표). 비인권적인 병원 입원보다는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선거방송 및 토론회 시 수화통역사 배치, 투표장 1층 설치 등 일부 개선들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소투표 등 참정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약속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추가
  -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차별조항 정비 및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지원 및 낮 시간 활동지원 강화
- 장애인 가족 지원과 발달장애인 신탁서비스 도입
-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권리옹호체계 수립
- 시설 거주 장애인 거소투표제 제한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

---

대상별 공약

# 소수자



---

- 1 「평등대우법(차별금지법)」 제정
- 2 다양한 가족구성을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
- 3 혐오범죄 가중처벌
- 4 성소수자 차별금지
- 5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
- 6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와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1. 「평등대우법(차별금지법)」 제정

### 진단

- UN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모두 법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및 차별 금지와 시정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임

### 약속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기준으로, 차별예방 및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등대우법(차별금지법)」 제정

## 2. 다양한 가족구성을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

### 진단

- 노인의 동거, 장애인 등 각종 공동체, 미혼·동성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보호할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1인 가구 급증, 노령화로 인한 인구, 가족 변동 등으로 전통적인 결혼제도 만으로 다양한 가족구성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음
- 가족을 꾸려도 법적으로 가족이 될 수 없기에 배우자 수술동의서에 사인할 수도, 공공임대주택에 함께 살 수도 없으며, 사회보험제도나 조세혜택, 경조사 휴가 대상도 될 수 없음
- 이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스라엘 등 20여 개 국가에서 결혼 이외의 파트너쉽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프랑스(2010년 기준)는 25만쌍이 결혼한 커플이고, 팩스(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 제도로 20만 커플이 등록함. 이중 이성간이 98%, 동성간이 2%를 차지하고 있음

### 약속

- 비혼 이성커플, 동성커플, 장애인공동체 등 비혈연공동체, 동거노인 등이 생활 동반자로 등록
- 일상적인 가사 대리권, 사회복지 수급권, 주택임대차 승계권 등 보장. 이밖에도 직장, 학교,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일상생활에서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 보장
- 상호부양과 협조의무, 채무책임과 생활비용 공동부담 등 책임부여

### 3. 혐오범죄 가중처벌

#### 진단

- 동성애자, 특정 집단 및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 등 허위 사실과 왜곡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 반인권적 선전선동과 행동으로 편견과 공포가 증폭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임
- 혐오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일반 폭력 범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억제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음

#### 약속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에 대한 언론 등 대중매체의 차별조장 광고 규제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조항 신설 내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혐오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 4. 성소수자 차별금지

### 진단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감염인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실명보고 등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음. 또한 구금시설 수용자 강제검사, 격리수용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나 강제퇴거 등 인권침해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음
- 성소수자가 성별 변경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식능력 제거, 성장환경 진술서, 인우보증, 정신과진단서 제출 등 요건이 매우 엄격함. 성별 변경의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도 얻기 힘든 상황임
- 군대 내 이성 간 성행위는 징계처벌, 동성 간 행위는 징역형 처벌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군형법」에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 성폭력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동성 간 성행위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은 불합리함

### 약속

- HIV 감염인 인권 보호(「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 간병·상담·복지, 치료의약품 의무공급 등 HIV감염인 보호조치 정비
  - 강제검진, 전파매개 금지 등 인권침해 조항 개정
-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법규 정비
- 성전환자 병원비 건강보험 급여화, 국가지정 전문의료기관, 노동권 보호
-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동성 간 성행위만을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 신체검사·군인사·병영관리 시 동성애자 차별 금지 및 예방

## 5.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

### 진단

- 3D업종과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임
- 현행 고용허가제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문제, 열악한 주거 및 식사환경, 알선장 없는 구직활동, 일정 기간 내 사업장 변경 불가, 출국 후 퇴직금 지급 등 수 많은 인권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재입국제도가 있지만, 사업장 비변경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강요로 이어지고 있음

### 약속

- 기술 숙련도,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
-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여, 친인권적인 이주노동 및 노동비자 영주제도의 사전단계로 활용

## 6.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와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진단

-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채용, 승진 및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어 연속성, 실효성 등의 한계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담당부서는 2개 과에 불과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불가능함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3명)과 비상임위원(7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사 적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인권위원 임명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는 인권위원 인사의 투명성, 적절성, 다양성 등이 미흡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하였음

### 약속

-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에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의무화
  -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강화 및 기관 평가에 반영
  - 내실있는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 설치
- 국가인권위원 인권위원 검증 강화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
  - 모든 인권위원 혹은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제도 실시
  - 시민사회의 인권위원 추천, 인사 청문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 청취와 반영 제도화 「균형법」 조항 폐지, 신체검사·군인사·병영관리시 동성애자 차별 금지 및 예방



---

# 5대 근본개혁 과제



---

정치개혁 | 사법개혁

재벌개혁 | 조세개혁 | 언론개혁



---

5대 근본개혁 과제

# 정치 개혁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완수”

- 1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국민주권 실현
- 2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민 뜻대로 의석 배분
- 3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4 만18세 선거권 부여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 5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 6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 7 정당 책임정치 강화와 민주적 정당체제 구축
- 8 정치참여 활성화와 참여 민주주의 확대

## 1.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국민주권 실현

### 진단

-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투표장을 넘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임
- 촛불시민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직접민주주의 제도로는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가 있으나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유권자들이 직접 끌어내리는 방법,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국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또한 국민투표의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그것도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음

### 약속

-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파면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선거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헌법개정발의가 가능한 헌법 국민발안제를 부활하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 도입
-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의무화 및 국회와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권 부여

## 2.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민 뜻대로 의석 배분

### 진단

-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 정당득표율로 의석의 50.7%를 차지했고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5% 정당득표율로 의석의 41.0%를 차지했음
- 단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이 되는 승자독식 단수다수대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전체 의석의 15.67%)에 불과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처럼 정당지지도와 의석점유율이 비례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음

### 약속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고 의석 전체를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함. 정당별로 배분된 의석 안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비례대표 후보로 채움
  - 정당명부 제출은 전국 단위로 하고 후보 공천은 당내 경선을 비롯한 민주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 3.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진단

- 한 표만 많이 얻으면 당선인이 되는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 하에서는 대개의 경우 과반에 미달하는 대통령이 탄생함
- 거센 후보단일화 압박으로 사실상 1:1 구도로 치러진 지난 대선을 제외하면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은 50%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음. 이러한 대통령의 소수대표 문제는 정통성, 대표성, 통치력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도 그 후보가 당선가능성이 낮다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차선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를 선택하게 됨. 이는 양당제를 강화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거대양당은 이런 선거제도에 기대어 안주하려는 경향이 높아짐
- 또한 매번 대선 때만 되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후보단일화 논란’이 반복되고 민의와 무관한 합종연횡이 거듭되어 왔음

#### 약속

- 대통령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는 1차 선거일 2주 후에 실시하도록 함
  - 개헌 시 「헌법」에 근거규정 명시

## 4. 만18세 선거권 부여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 진단

- 현행 정치관계법은 청소년을 정치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으며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만 18세 또는 그 이하가 아닌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며 세계 190개국 가운데 147개국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임.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 청소년·청년도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거권·피선거권뿐 아니라 정당법상 정당가입 연령 제한,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등 청소년을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일련의 규정을 폐지해야 하며 교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약속

-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조정
-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대통령 40세 →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5세 → 23세, 지방의원 25세 → 18세)
-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제한 폐지
-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조정

## 5.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 진단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지만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선거일에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 이후 사전투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2일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 게재순위에 있어 거대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기호순번제가 시행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역행하고 있으며, 고액 기탁금 제도로 인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가로막고 있음

### 약속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선거일 유급휴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오후 6시→9시)
- 전자투표 도입, 공공장소투표소 확대, 투표 인센티브 부여로 투표율 제고
- 사전투표 현행 2일에서 10일로 확대 시행
-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 공직후보자 기탁금을 현행의 10분의 1수준으로 완화하고 반환기준도 10% 이상 득표 시 전액, 5% 이상 득표 시 반액으로 완화

## 6.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 진단

- 한국행정연구원의 『2016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적 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4점 만점에 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대 국회 들어 각 당이 특권 해체를 약속하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구성,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이어졌으나 실제 성과는 거의 없는 상황임
- 2017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 연액은 약 1억 3,79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8.5배에 해당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임
- 막말 등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되어도 동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 정당간 대립으로 징계결정도 못 내리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기 일쑤임
-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지출증빙 없이 써도 되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81억여 원에 달함

### 약속

-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 시민 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 국회의원 겸직 금지 강화
-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 상시국회 도입, 예결특위 상임위화로 예결산 심의 내실화 · 행정입법 감독권 강화
- 거대정당 째짜미 교섭단체제도 폐지로 국회 운영 민주화

## 7. 정당 책임정치 강화와 민주적 정당체제 구축

### 진단

-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통로이며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의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를 대변하는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체제가 필수적임
-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정당은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하고 특정 인물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음
- 선거부정, 뇌물수수 등으로 소속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그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주요 정당이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현행법상 정당의 지역조직에 대한 규제, 정당에 대한 후원의 금지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

### 약속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재·보궐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 부담 법제화
- 시·군·구당 복원으로 풀뿌리 생활정치 실현
- 정당 후원회 설치 허용으로 소액다수 후원 보장
- 거대정당 독식하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모든 정치자금 수입 지출 인터넷 상시 공개



## 8. 정치참여 활성화와 참여 민주주의 확대

### 진단

-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이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정당가입 등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정치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미비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지역구 공천 여성 할당제는 안 지켜도 그만이고 지역구 공천 30% 여성할당은 권고조항에 불과함

### 약속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정당가입과 후원 허용)
- 국회의원 비례대표 및 지역구 공천 여성 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 온라인 정치참여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시민주도 법안 발의, 국민투표 제안 등)

---

5대 근본개혁 과제

#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 사법 정의 실현**”

- 1 대법관 다양성 보장과 법원 인사 개혁
- 2 헌법 재판관 자격 확대 및 다양성 보장
- 3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사장 직선제 실시
- 4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 5 재벌총수 사면, 황제노역 등 유전무죄 근절
- 6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7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

## 1. 대법관 다양성 보장과 법원 인사 개혁

### 진단

-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천거된 후보자 중 심사대상을 대법원장이 추천함으로써 대법관 구성의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어, 서열과 학벌 등에 따른 법원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변화하는 가치관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법관 재임용을 평가하는 기준인 ‘근무성적’ 평정 요인들의 적절성 문제로 법원이나 정치권력에 비판적인 법관의 재임용 탈락 사례가 발생함
- 연임 부적격으로 판정된 해당 판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불충분함
- 법관 인사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법관들의 이해요구나 의사에 따르는 등 ‘부당인사’ 문제가 발생함

### 약속

- 대법원장이 심사대상 대법관을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 폐지
-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후보자로 제청한 사람의 추천자 및 사유 등 공개
-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자격 인정
- 법관 인사 및 재임용 평가방식과 절차 개선
- 대법원장으로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고등법원으로 분산
-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로 인사 공정성 확보

## 2. 헌법 재판관 자격 확대 및 다양성 보장

### 진단

- 임명직 공무원인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칠 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막을 수 없음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경우에도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 서열과 학벌 등에 따른 법원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변화하는 가치관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

### 약속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 모든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
-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확대 및 국회 내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 헌법재판관 중 판사와 검사 출신 인원 제한
-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

### 3.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사장 직선제 실시

#### 진단

- 우리나라의 부패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음
-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 등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관이 필요함
-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 원칙 등 검찰의 권한 집중과 비대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견제가 불가피함
-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 위계적 조직 구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감독체제로 검찰 업무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음

#### 약속

-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과 처벌을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 대통령 인사권에서 벗어나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지방검찰청장에게 소속 검사 인사 및 운영권 부여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 청와대 출신 검찰 재임용 금지

## 4.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 진단

- 전직 판사나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검찰이 범죄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 처분 등을 통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은 퇴직 후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 그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청탁 등의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을 받는 등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 변호사 사건, 전직 검사장인 홍만표 변호사의 ‘전화변론’을 통한 거액 수임료 사건 등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가 여전히 심각함

### 약속

-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전관예우 위반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및 양형과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 박탈
- ‘몰래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확대,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 강화

## 5. 재벌총수 사면, 황제노역 등 유전무죄 근절

### 진단

-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재벌 총수 등 부정부패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음
- 노역장 유치제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입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방안이나, 재벌 등 고액소득자나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에 선고되어 제도 목적이 훼손되고 있음
-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최소 하한선은 정해졌으나 ‘노역 일당’ 제한 규정이 없고 노역유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됨, 이로 인해 전두환 차남 전재용은 ‘일당 400만원’에 해당하는 ‘황제 노역’을 함
-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잔여 유치기간에서 납입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을 공제해주고 있어 노역장 유치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

### 약속

- 재벌총수 등 부정부패 관련 기업인과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원천 배제
-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하고, 재벌 일가 황제노역 황제면회 금지, 형집행정지·가석방·사면은 제한. 횡령·배임 등 특가법으로 징역형 선고 받으면 기업체 임원 등록 제한
- 1일 ‘노역 일당’의 최대 금액 설정 및 유치기간 5년으로 연장
-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입하게 하며, 별도 납입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유치일수 공제제도 폐지

## 6.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진단

- 대한민국 검찰은 비교법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전 과정에서 광범위한 강제력 동원 권한을 독점하고 있음
- 압수수색, 체포, 계좌추적, 구속영장 신청 등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등의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눈치보기, ‘제 식구 감싸기’나 ‘수사 무마’ 등으로 사법정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
- 외국의 경우 검찰은 수사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경찰과의 협력 내지 보완적 수사권만 보유하고 있음

### 약속

- 특정 범죄 및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수사권 경찰 보유
- 장기적으로 독립성, 민주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검찰 및 경찰 개혁’의 청사진 속에서 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통제방안 재정비
-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 7.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

### 진단

- 순정 군사범죄가 전체 범죄의 20%가 되지 않는 등 군사법원 관할 사건이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임
- 군판사 대부분이 경력 1년 미만이며, 군검찰관 혹은 법무장교로 근무하고 있어 전문성, 독립성 등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관할관에 의한 무분별한 형의 감량 및 심판관제도를 통한 지휘관의 재판개입 등으로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음

### 약속

- 평시 군사법원 폐지.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보통군사법원 설치
-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폐지로 재판의 공정성 확보
- 군검찰의 관할을 순정 군사범죄로 제한하고, 5~6개의 광역검찰단과 국방부 고등검찰단 1개 설치
-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장교 순환보직 제도 폐지로 군판사 전문성, 공정성 확보

---

5대 근본개혁 과제

# 재벌 개혁



“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정의롭게 ”

- 1 전경련 해체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 2 총수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 개선 및 견제
- 3 순환출자, 지주회사 이용한 지배력 남용 방지
- 4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와 금산분리 강화
- 5 재벌의 모든 불공정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6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은 폐지
- 7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

## 1. 전경련 해체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 진단

-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삼성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430억원 뇌물을 직접 공여했고, SK와 롯데는 사면 및 수사 무마, 그리고 면세점 사업권을 위해 기금을 출연함
- 전경련은 K스포츠, 미르 재단 설립의 조직적 공범이자, 「기업활력제고법」, 「규제프리존법」 등 재벌 청부입법에 대한 조직적 로비를 해옴
- 한화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 받음
- SK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을 횡령함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을 최종 선고 받았으나, 2015년 생애 두 번째 사면을 받아 형기 중에 풀려남

### 약속

- 뇌물 등 정경유착을 통해 이권을 챙겨온 재벌 총수 전원 구속, 삼성 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부당이익 등 범죄수익 전액 환수. 정경유착의 온상이자,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인 전경련 해체
-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하고, 재벌 일가 황제노역 황제면회 금지,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은 제한. 횡령·배임 등 특가법으로 징역형 선고 받으면 기업체 임원 등록 제한

## 2. 총수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 개선 및 견제

### 진단

-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행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지분 보유요건이 너무 엄격함(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의 지분 필요)
- 집중투표는 1주당 이사후보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그 투표권을 한 명의 이사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액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이나 재벌대기업 계열사는 대부분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음
- 대다수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어나 감사위원회위원이 부재함. 이로 인해 총수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 짐. 한편 유럽의 여러 나라는 노동자들의 이사회 참여가 광범위하게 제도로서 보장되어 있음

### 약속

- 주주대표소송 시 단독 주주권 도입 등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회사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를 행한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와 온라인 투표방식인 전자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노동자 추천 이사 선임

### 3. 순환출자, 지주회사 이용한 지배력 남용 방지

#### 진단

-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체제는 재벌 총수의 지배권 강화 및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그룹은 7개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임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2006년 336조에서 2016년 794조, 최근 10년간 458조 증가)과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독과점 폐해가 심각함

#### 약속

-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
- 인적 분할 시 자사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의무 보유 하한선을 발행주식 총 수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 국외상장법인, 공동출자법인,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30%) 이상으로 강화
-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제,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4.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와 금산분리 강화

### 진단

- 현재 국민연금 등 500조원의 자산 중 약 100조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규정·모범규준을 시행중임
- 계열금융사의 고객 돈이 재벌총수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사금고화 문제가 심각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다른 회사의 보유 주식 및 채권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적용해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되고 있음

### 약속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규정 및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보유지분을 1% 이상 시 의결권 행사 의무화하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법제화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방식에서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및 채권 가격을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격) 기준으로 변경
-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 보유 한도(현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과 총자산의 3% 중 적은 것) 기준 강화
- 은행, 보험사가 소유한 비금융기관 주식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15%에서 5%까지로 인하

## 5. 재벌의 모든 불공정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진단

- 대기업의 불공정한 6대 갑질 행위는 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반품 행위, 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2011년부터 기술자료 제공요구 위반, 2013년 이후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해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
- 경제개혁연구소는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13조 8,088억원으로 추정함

### 약속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등 모든 불공정 행위와 함께, 「공정거래법」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제도 도입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20%로 인하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차감 없이 거래액 전체에 증여세 적용

## 6.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은 폐지

### 진단

- 개인정보 유출, 연비조작 사건, 가습기 사건 등 기업들의 잘못과 불공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힘들고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도 어려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이 부여 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임

### 약속

- 피해자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 집단소송제 도입
-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계약취소, 환불, 교환 등)를 명령하는 제도 도입(「소비자기본법」 개정)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해당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익형량을 고려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7. 재벌 · 대기업의 독과점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

### 진단

-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에 달함
-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협상을 할 수가 없음
- 대형마트와 할인점의 문어발식 확장이 국내 유통업의 89.5%를 차지함

### 약 속

- 공기업,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2016년 기준 공기업은 10배(약 1억 5천만원), 대기업은 30배(약 4억 5천만원)으로 설정
- 원청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률에 사용하도록 유도
- 「하도급법」과 「대리점공정화법」에도 단체 구성 및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도입
-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 재벌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

---

5대 근본개혁 과제

# 조세 개혁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를”

- 1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 2 법인세 MB 감세 철회와 사내유보금 과세
- 3 소득세 누진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 4 상속공제 축소 등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와 탄소세 도입
- 5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 6 초과이익공유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 지원
- 7 세입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형차 개별소비세 폐지
- 8 예산 낭비 방지 제도화, 부담금 제도 개편
- 9 탈세 등 처벌 강화와 쪽지(카톡)예산 근절

## 1.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 진단

- 한국의 국민(조세)부담률은 GDP의 25.1%로 OECD 평균 34.1%에 비해 9% 정도 부족함(약 144조원 부족)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OECD 회원국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프랑스는 31.5%)
- 부족한 사회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이 필요함

### 약속

- 재원 사용처가 복지사업으로만 정해진 목적세로 양극화 해소와 보편 복지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 ※ 목적세: 1970년대 자주국방 방위세, 1980년대 미래세대 교육세, 1990년대 WTO가입 농어촌특별세, 2000년 교통·에너지·환경세
- 사회복지세는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임
- 2018~2022년 동안 총 109조원 (연 평균 21.8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 현행 세율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5년간 소득세분(연 11.0조원), 법인세분(연 9.4조원), 상속증여세분(1.2조원), 종합부동산세분(0.3조원)의 사회복지세 확보

## 2. 법인세 MB 감세 철회와 사내유보금 과세

### 진단

- 법인세율 인하 이후 기업의 내부유보금은 2009년 438조원에서 2013년 886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충분한 세금 부담능력이 있음. 그러나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투자 자산 증가로 이어짐
- 비업무용 자산에 따른 이자 및 배당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법인세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11~1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이후 유효세율도 크게 하락하여 14%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음(유효세율 2008년 18.26% → 2015년 14.45%)

### 약속

- 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원위치 함을 통해 개별 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세를 철회함. 이를 통해 연 6.72조원(향후 5년간 평균)의 재원 확보
- 사내유보금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임대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10% 할증 과세를 통해 고용 및 설비투자를 유도함. 이를 통해 연 2.69조원(향후 5년간 평균)의 재원 확보
- 모든 법인세 조세특례에 최저한세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0-12-17%에서 10-15-20%로 상향 조정,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연 1.06조원(향후 5년간 평균) 재원 추가 확보

### 3. 소득세 누진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진단

- 현행 소득세율은 '6-15-24-35-38-40% 체계'로 세율 구간 간 격차가 불규칙하고 복잡함
- 2016년 소득세율 최고세율구간을 '5억원 초과 40%'로 개편, 아래 구간인 38%와 2%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최고세율로서의 의미가 없음
- 2013년도 공시가격(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한국감정원 공시가격 및 국토교통부)은 아파트(공동주택)는 71.5%,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로 부동산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65%이고,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불과함

#### 진단

- 소득세 세율을 '6-15-25-35-45 체계'로 개편하고 1억 5천만원 초과에 대해 45%의 최고 세율 적용[2016년 대비 연 6.4조원(향후 5년 평균)의 추가 세수 확보 가능]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해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향후 연 6.9조원(향후 5년 평균)의 추가 세수 확보]
-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져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단순 일원화

## 4. 상속공제 축소 등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와 탄소세 도입

### 진단

- 2010~2014년 상속인원 145만 7,066명 가운데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3만 285명으로 과세 비율은 0.02%에 불과함. 상속재산은 54조 9,540억 원이고 산출세액은 9조 4,890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7.2%에 불과함
-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정보를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만 6,277명이 총 3조 463억원을 증여받았으며,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 1,615만원임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별다른 성과가 없고, 석탄화력 발전 등 미세먼지 규제가 취약함

### 약속

- 상속공제 한도 5억원으로 축소, 고액 상속 과세 강화하여 부의 대물림 방지. 이를 통해 연 1.5조원(향후 5년 평균)의 추가 세수 확보
- 증여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 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제도 시행 강화
-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자손녀에게 상속하는 세대 생략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 화석연료 등에 탄소세(기후정의세)를 부과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를 방지함(연 1.3조원)

## 5.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 진단

-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하지 않고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음
- 금융자산 10억원을 보유해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적게 냄
- 금융상품 과세체계는 유가증권 거래세 부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상장주식(소액주주 제외)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은 20% 세율, 대기업은 20~30% 부과

### 약속

-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로 연 3,425억원(향후 5년 평균)의 세수 확보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의 기준금액을 현재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이를 통해 연 7.3조원(향후 5년 평균) 세수 확보
-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 세율(기본세율 20%, 탄력세율 10%) 적용 삭제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 연 5,586억원(향후 5년 평균) 세수 확보

## 6. 초과이익공유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 지원

### 진단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세전이익율은 4.4~4.7%와 3.0~4.0%인 반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됨
-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불공정 거래에 따른 것이거나, 협력기업의 공동 노력의 결과이므로, 성과를 나누어 대·중소기업간 및 원·하청간 임금 격차 해소에 사용되어야 함
- 비정규직은 839만명(임금노동자의 43.6%)이고, 비정규직의 96.1%(839만명 가운데 807만명)가 임시근로자 또는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매우 불안정함
-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51만원으로 정규직(311만원)의 48.7% 수준, 전년대비 정규직 임금은 3.8% 인상, 비정규직 임금은 3% 인상됨

### 약속

-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공유이익의 30%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확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직접 고용) 시 채용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



## 7. 세입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형차 개별소비세 폐지

### 진단

- 현행 10% 세액 공제 대상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전세 자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 전월세 이동 시 이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에 세제 지원이 필요함
- 2016년 1월 청년실업률 9.5%로 2000년 이후 최고, 취업한 청년의 64%가 비정규직-취업준비기간은 휴학 포함해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됨
- 생활필수품인 승용차, 특히 사치품이라 할 수 없는 중소형 승용차에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 약속

- 월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연 750만원 한도)
- 서민들의 이사비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15% 세액공제 신설(각각 150/100만원 한도)
-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기량 2천CC 미만의 중소형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 8. 예산 낭비 방지 제도화, 부담금 제도 개편

### 진단

- 대규모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공무원들의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수 십조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주요 재정 사업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예산낭비 논란이 반복되면서 예산 운용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재정을 수반하는 주요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하는 구조임
- 현행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89개로 이를 통해 연간 20조원이 징수될 계획임
- 부담금 징수단가가 현실적이지 않거나 필요성이 결여된 항목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항목이 발생함

### 약속

- 「국민소송법」 제정을 통해 재정 낭비 방지로 재정 민주주의 확립
- 대규모 예산사업, 분야별 지출 순위 국민참여예산제 도입(연말 정산 신청서에 찬반 의견 설문 동시 시행)
- 국가 재정정보의 상세한 공개를 통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 제고
- 너무 적거나 많이 책정된 항목을 조정하여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 부담금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한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 부담금 경감 축소와 현실화를 통해 제도 운영의 취지 복원

## 9. 탈세 등 처벌 강화와 쪽지(카톡)예산 근절

### 진단

- 2016년 고액 상습 체납자(3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는 16,655명(개인, 법인)으로 총 세납액은 12조 3,018억원(1인당 7.4억원)에 달함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접수는 꾸준히 발생(년 800건 이상)하고 있음. 2015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접수 852건 가운데 ‘불공정 행위’가 가장 높은 369건(43.3%)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 심의 때마다 소위 ‘쪽지예산’ · ‘카톡예산’ 논란이 되풀이 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음
-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예산이 포함되면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약속

-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배제, 정부조달 참여 배제 확대
- 부정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및 삼진아웃제 강화
- 증액 예산 요청한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심의 과정 투명성 담보

---

5대 근본개혁 과제

# 언론 개혁



- 
- 1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 2 미디어 정책 총괄 기구의 독립성 강화
  - 3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 회복
  - 4 종합편성채널 공정성 제고 및 각종 특혜 철폐
  - 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
  - 6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 7 EBS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평생학습권 보장
  - 8 유료방송·통신산업 비정규직 철폐 및 공적 책무 강화
  - 9 신문 진흥 및 지역신문 활성화

## 1.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 진단

-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정부의 방송 장악 및 언론인과 저널리즘 탄압, 종편 특혜, 표현의 자유 위축 등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훼손이 심각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서도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지속적인 언론 통제가 중요한 사유로 지적됐을 정도로 방송·미디어의 정치적 종속성이 심각하여 국민의 권리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수립이라는 조건에서 정부 출범 이전에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종합적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 약속

- 대선 직후 한시적으로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시민사회, 미디어 현업 및 학계, 미디어사업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회의자료 공개 등 투명성 확보
-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통해 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언론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② 공정보도를 주장하다 부당 징계·해고당한 언론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보상과 명예 회복, ③ 방송의 공정성·독립성과 시청자의 권한 확대를 위한 개혁과제 구체화 및 로드맵 마련

## 2. 미디어 정책 총괄 기구의 독립성 강화

### 진단

-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방송 분야의 핵심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 신문 및 포털서비스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등 독임제 정부 부처가 미디어정책을 주도함
-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형식상으로는 합의제 기구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을 통한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정부·여당에 의한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익성·공정성이 훼손됨
- 방송 분야에서도 진흥과 규제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누어 담당함에 따라 정책 기조의 혼선이 발생하고, 이용자 권리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 권리 침해로 이어짐

### 약속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통신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 분야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인 (가칭)미디어위원회 설치
- (가칭)미디어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다양성 확보
  - 대통령이 위원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시청자·이용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국회 추천으로 위원 선임
  - 여성 및 지역 할당 위원 선임

### 3. 공영방송의 독립성 · 공정성 회복

#### 진단

- 청와대-방통위-이사회로 수직적 구조화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로 인해 KBS, MBC, EBS 인사 선임 마다 청와대 개입이 논란이 됨
- KBS 사장 선임 청와대 홍보수석 개입 의혹, EBS 사장 선임 과정 최순실 개입 의혹 및 이념편향 부적격 인사들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수구 · 보수 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전초기지 확보를 위해 최근 MBC 사장에 대한 ‘알박기’ 선임을 자행함
- 이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공영방송은 공적책무 이행의 핵심 매체이나, 정권에 편향된 보도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약속

-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현재의 정치권에 의한 이사 추천 방식을 개선하여 정치권 및 종사자, 시민단체 등 추천 기관 다양화. 객관적인 사장 성과 계약제를 도입하여 공영방송의 중립성 보장
-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 · 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영방송 등 지상파의 공적 책무(무료보편성, 다양성, 지역성, 소외계층 배려) 이행 의무화

## 4. 종합편성채널 공정성 제고 및 각종 특혜 철폐

### 진단

- 2009년 이른바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의해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종편만을 위한 광고 직접영업, 종편4사 의무전송, 황금채널 배정 등 편법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보도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와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는 저조한데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봐주기식 재승인 심사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약속

- ‘종합편성’ 채널의 위상에 맞는 편성의 다양성과 방송의 공익성, 재정 및 경영 건전성, 공정거래 등의 심사 항목 및 재승인 기준 강화
- 차별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편사업자에 지상파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 도입
- 종편 4개 채널 모두 의무 전송하는 규정을 선택적 의무전송으로 변경



## 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

### 진단

-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어 왔으며,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보고서,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언론의 자유 지수, 국경없는기자회의 평가 등을 통해서도 확인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와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청와대 비호용 심의를 일삼는가 하면, 대통령과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소송을 남발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인터넷게시물 일반에 대하여 삭제 및 폐쇄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임. 국가인권위원회, UN 등에서 이러한 기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반적인 인터넷 내용 심의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 이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약속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방송 심의 중 ① 행정심의는 아동·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최소화해서 신설되는 (가칭)미디어위원회가 담당 ② 일반적 심의는 독립적 민간기구의 자율규제로 전환, ③ 방송사 자체 심의는 시청자위원회에 권한 부여
- 통신 심의는 행정심 의 완전 폐지 및 자율규제로 전환,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

## 6.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 진단

- 시청자의 참여와 권익 보호 기능을 위해 지상파·종편·보도채널·DMB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청자위원을 방송사 사장이 선임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사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또한 방송편성·심의 등 시청자 불만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처리 절차에 대한 참여는 보장되지 않음
- 사이버폭력·스마트폰 중독 등의 부작용이 증가하고 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과 지원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정보격차 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약속

- 시청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와 방송사 노·사 동수 추천으로 시청자위원 선임
- 시청자위원회의 기능 강화(사무국 설치, 방송 자체심의 기능 및 제재 조치 권한 부여,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 참여 보장)
- 유료방송(케이블방송·IPTV·위성방송) 시청자위원회의 지역별 구성을 의무화하고 채널 편성, 방송 상품 구성, 이용약관 등에 대한 심의 권한 부여
- 학교, 지자체, 민간단체의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합적 미디어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

## 7. EBS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평생학습권 보장

### 진단

-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에 이르며 사교육 참여율은 77%에 달함
  - ※ 2015년 사교육 참여율 : 초등학생 88.8%, 중학생 74.6%, 고등학생 55.0%
-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심각한 데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82.8%(42만원)인데 반해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32.1%(6만 6천원)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약속

-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EBS의 교육 콘텐츠 강화를 통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맞춤형 학습권 보장, 특히 사교육 비중이 높은 영어, 수학 교과 콘텐츠 강화
-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교육센터 구축을 통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권 보장

## 8. 유료방송 · 통신산업 비정규직 철폐 및 공적 책무 강화

### 진단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유료방송정책으로, 서비스 차별화 없는 가입자 뺏기 경쟁, 다단계 하도급 구조 만연, 지상파 ·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빈번한 대가분쟁,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로 인한 독과점 구조 강화 등 방송산업 생태계가 왜곡되고 있음
- 설치 · 수리업무, 콜센터, 영업 업무 등의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원청방송사는 시청자 · 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질 낮은 일자리 양산, 불안정한 서비스제공, 가입자 ‘호갱’ 만들기,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유통 등이 초래되고 있음

### 약속

- 유료방송산업 설치 · 수리 업무, 장애신고 접수 및 고객상담 업무 하도급 금지, ‘동네 노동자’ 설치 · 수리기사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가입자 서비스 품질 제고
-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기준 및 배점에 방송의 공공성 · 지역성 항목 대폭 강화
- 지역채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케이블 방송), 정보격차 해소(IPTV), 도서산간지역 난시청 해소(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 특성에 맞는 공적 책무 부여 및 지원

## 9. 신문 진흥 및 지역신문 활성화

### 진단

- 현재 신문은 방송에 비해 영향력과 경영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및 집행이 가능해졌지만 기금 총액은 매년 줄어드는 데 반해 지원 언론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역신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를 두고 있지만 실제 지원사업은 주로 위탁사업자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발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 제시’만을 하는 역할에 국한되고 있음

### 약속

-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신문 공동제작 및 유통, 콘텐츠 진흥, 디지털 전환, 여론다양성 보장 사업 등 지원
- 지발위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운용의 결정권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 지역신문 지원 기관으로 위상 강화 및 지발위 위원 구성과 위촉,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의 독립성 보장

---

# 7대 국민불안 해소



---

보육 | 교육 | 주거 | 일자리

의료 | 안전 | 복지일반

---

7대 국민불안 해소

# 보육



- 
- 1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자녀양육 안정
  - 2 공정한 보육기회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3 교사처우 개선,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으로 민간 공공성 강화
  - 4 협동조합 어린이집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 5 보육119 긴급출동, 주민센터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 6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 1.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자녀양육 안정

### 진단

- 출산전후 휴가 90일은 일본(14주)·프랑스(16주)·덴마크(18주)등에 비해 짧음.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남성 육아휴직 비중도 8.5%에 불과함
- 한국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조사대상 OECD 33개 국가 중 32위로 최하 위권. 출산과 육아로 인한 30대 초반의 경력단절의 지속이 이어짐. 영아기의 경우 아이의 정서발달을 위해 유럽에서도 가정 내 보육을 권장하고 있으나 직장 눈치 등으로 육아휴직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약속

-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3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상·하한선 인상 : 50~100만원 → 80~150만원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12개월 → 16개월로 확대(엄마, 아빠 3개월 할당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 사업주의 가족돌봄휴직제 거부 조항을 개정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도록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 육아휴직으로 결원보충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돌봄지원인력 센터 도입, 이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확대
-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강화 및 위반 시 처벌강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
-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위한 직장문화 개선과 유연근무제도 확대



## 2. 공평한 보육기회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진단

-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선호도가 1위이나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 중 10.6%에 불과함.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등록해 몇 년 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임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격차도 심각한 상황임. 국공립어린이집 건축 시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이 과중하기 때문인데 보육의 질도 점차 지역별로 양극화되고 있음

### 약속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26만명 해소 등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50%까지 확대
  - 리모델링, 민간매입, 공공기관 유휴 공간 활용 등으로 비용 절감
  -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중소기업연계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보육균형발전지표 도입으로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 국고 지원 확대

### 3. 교사처우 개선,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으로 민간 공공성 강화

#### 진단

- 국공립어린이집 보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아동 90%가 이용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운영에 허덕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강의공간 등이 부족한 상황. 게다가 시설이 낙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경에 이상이 있더라도 리모델링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임
- 보육교사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원으로 매우 열악함.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14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38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임
- 탄력보육 시행으로 보육교사 1인당 돌보아야 할 아동수가 1명~3명까지 초과되고 있음. 보육교사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이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아예 없는 경우가 40.6%로 나타남

#### 약속

- 보육거점센터 지정으로 민간어린이집에 교재, 기자재 등 대여
-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임금 인상 → 유치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탄력보육 폐지로 콩나물반 방지
  - 영아반은 보조교사, 유아반은 보육교사 확대
- 소규모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지원
  - 환경안전진단 지원, 친환경 페인트 사용, 친환경 장난감 등 지원

## 4. 협동조합 어린이집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

### 진단

- 보육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부모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육아가 이뤄지고 있음. 자연친화적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이 주를 이루며, 친환경적인 먹거리 등을 사용해 아이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됨
- 공동육아는 목돈의 출자금 및 조합비를 내야하고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도 체계적인 개선이 어려움

### 약속

- 부모, 교사 등이 공동의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 공동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지원

## 5. 보육119 긴급출동, 주민센터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 진단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의사소통에 취약한 영유아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게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함
-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성을 겸비한 질 높은 보육이어야 함.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

### 약속

- 보육 119 도입
  - 어린이집 인권침해 발생 시 익명으로도 신고하면 긴급 출동해 점검
  - 아동심리상담전문가, 공무원 등이 한 팀을 이뤄 출동하고, 필요시 경찰수사 의뢰
  - 정기적으로 아동심리상담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동발달에 대한 교육지도, 상담, 보육환경 진단
-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일상적으로 읍면동 보육시설 관리감독
- 우수교사 양성
  - 일정 경력이 지나야 담임교사로 배치
  - 원장, 교사 보수교육 강화 및 대체교사 인력 지원 확대
- 개방형어린이집 실시
  - 부모의 직접 등·하원 장려, 부모상담·교육 등 강화

## 6.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 진단

-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는 아동 수에 따라 쿠폰(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이 때문에 어린이집은 아동 유치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
-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도 현실에 미치지 못해 어린이집들은 적자 운영을 만회하기 위해 낮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모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맞춤형보육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0~2세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들음. 다만, 월 15시간의 긴급보육쿠폰(바우처)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맞춤형보육으로 인해 전업주부와 워킹맘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인터넷에서는 전업주부를 비하하는 용어가 횡행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음
- 반면 부모들은 무상보육이라고 하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무상보육을 무색케 하는 추가 보육료 때문에 부담이 큰 상황임

### 약속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방식을 시설 직접 교부로 전환
  -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편가르는 맞춤형보육 개선
  - 쿠폰(바우처) 방식에서 교사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시설로 직접 교부
-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 기타필요경비 적정성 평가 후 지원 확대
-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특성화활동 대체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

7대 국민불안 해소

# 교육



“우리 교육의 체질 혁신. 책임 · 융합 · 시민”

- 1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
- 2 초6, 중2, 고1부터 한반 20명 책임학년
- 3 작은 학교 살리기와 공부 클리닉 확대
- 4 일반고 무상, 직업고 확대, 외고 등 전환
- 5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 6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민주주의
- 7 친환경 그린스쿨과 폭력예방 설계
- 8 '수능 절대평가', 기회균등 대입전형 50%
- 9 대학 네트워크로 대학 서열과 울타리 극복

## 1.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

### 진단

- 만 3~5세의 유아 3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부처와 시설 교사 등이 다른 상황임.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는 일원화 필요하지만 유보통합은 3단계 관리부처 통합에서 멈춘 상황임
- 만 3~5세 누리과정은 생애 초기의 기회균등을 위한 조처임. 예산 문제는 특별회계로 잠시 봉합되었으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방안 마련해야 함
- 누리과정 지원은 국공립유치원 11만원, 사립유치원 29만원, 어린이집 29만원임
- 국공립유치원은 원아수 기준 24.4%. 단설 305개원 포함 4천 696개원

### 약속

- 유아 3년 공교육화로 기본 학제에 포함. 교육부로 유보통합. 보건복지부 관련 조직의 이관으로 교육부는 2차관, 교육청은 복수 부교육감.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교사 자격과 보수체계 정비
-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이양 또는 국고 지원
-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늘리고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양질의 유아 공교육 제공
- 국공립유치원 확충. 단설 180개원 등 단설과 병설유치원 늘려 원아수 기준 40%.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 수립하여 시행

## 2. 초6, 중2, 고1부터 한반 20명 책임학년

### 진단

- 초6, 중2, 고1은 사춘기이자 잠재능력이 풍부함. 말 걸기부터 자녀지도까지 벅차지만 중요한 시기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맞춤형교육이 필요함
- 우리교육은 암기 수업과 줄세우기 시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하여 창의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
- 우리교육은 한반 학생 수가 OECD 하위권임. 현재 진행 중인 학생수 절벽을 기본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약속

- 초6, 중2, 고1 등 학교구성원이 자율선정한 학년부터 한반 20명
- 암기 수업을 토론수업, 프로젝트학습, 거꾸로교실, 스팀(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등으로, 줄세우기 시험을 절대평가 서술·논술평가 과정평가 등으로 개선
- 선생님의 더 많은 관심과 개개인 맞춤형교육 속에서 창의력 인성 함양
- 대상 학년 확대하면서 혁신학교·자유학기제와 함께 씨줄날줄 혁신



### 3. 작은 학교 살리기와 공부 클리닉 확대

#### 진단

- 학생수 급감한다고 정부는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대도시 구도심과 농산어촌 학교들이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전국 125곳으로 기초지자체 226곳보다 적음. 클리닉센터는 집중상담과 학습코칭 등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
- 선행학습은 잘못된 교육행위의 전형으로,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에서 허용되고 있음

#### 약속

- 정책 기조를 소위 ‘학교총량제’ 등 학교통폐합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로, 구도심과 농산어촌에 더 훌륭한 선생님 등 다각도로 행재정 지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시군구당 한 곳 이상 되도록 2배 확대.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정규직 확대에 보다 나은 학습코칭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예산 증액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 선행학습 제한. 방과후학교,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치원 등에서 선행학습하면 행·재정 조치 및 처벌

## 4. 일반고 무상, 직업고 확대, 외고 등 전환

### 진단

- 우리 고등학교는 서열화.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을 먼저 선발하여 일반고 슬럼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입시기관처럼 운영되기도 함
-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 걱정 없는 나라 되면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감소.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 직업교육 중점 투자 필요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비중은 19%. 선진국 평균은 47%임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아님

### 약속

- 일반고 선택과목 중심 무학년제, 인근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수학습경비 추가지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특목고 등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처럼 후기로 조정.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 초·중 학교급식 식품비 절반을 국고 지원, 고교까지 무상급식. 급식지원센터 확충하여 로컬푸드 선순환. GMO·방사능 없는 안전한 급식
- 직업계고 2배. 최신 교육기자재와 추가 교수학습경비 등 행재정 지원. 직업계고 사이의 격차 해소. 전공과 연계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하고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 고졸취업장려금,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지원. 기존 근로장려금보다 대상 및 혜택 확대

## 5.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 진단

-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임. 다양성, 인권 존중, 공감과 배려, 비판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것이나,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임
- 내년 2018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예정으로, 국정교과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방식임
- 국정, 검정, 인정 등을 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성 부족.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릴 수 있음

### 약속

- 시민교육 3종 세트(민주시민·세계시민·평화시민)와 노동인권교육을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하고, 교과서 교수학습자료 교원 연수 지원
-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고 2019년부터 검정교과서 사용. 개발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충실히 준비하고, 내용 관련 교육과정 개정
- 국정, 검정, 인정 등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정책 실시

## 6.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민주주의

### 진단

- 교육 문제는 노동 문제. 좋은 일자리 많아지면 교육문제의 절반 해결. 학교는 공공부문 중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고, 고용과 처우 차별
-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 미인정
- 학교 민주주의는 존중과 소통의 학생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함. 학부모회와 교직원회 등 자치기구들은 법적 기구 아니며, 국정교과서의 문명 고에서 볼 수 있듯, 일부 사립학교의 독단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약속

- 「교육공무직법」 제정으로 학교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생활임금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 인정
- 국립대 총장직선제의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하면서 학부모회 등 자치기구와 행정실의 법제화. 시군구 지역교육장 주민직선
-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교직원·학부모의 교육권 침해한 이사(장)은 퇴출, 비리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들이 개방이사로 선임
- 교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전교조와 교수노조 합법화,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의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폐지
- 만 18세 선거권.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 교육미래위원회 설치

## 7. 친환경 그린스쿨과 폭력예방 설계

### 진단

-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오래된 학교건물이 29%, 내진보강 필요한 곳은 76%, 석면 있는 학교는 71%임
- 그린스쿨 사업은 2014년 중단,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는 2000년 폐지
-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는 전국 226교로 적고, 위기학생 통합지원 서비스의 Wee 센터는 가정형 15곳 포함하여 204곳, Wee 스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곳임
- 전문상담교사 2천 182명으로 19%의 낮은 배치율. 공감과 갈등 해결로 학교폭력 예방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은 1천 11교개임

### 약속

- 그린스쿨 사업 추진하여 낡고 오래된 학교를 친환경학교로
-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개선, 재난위험시설 개보수, 냉난방기 등에 만전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 범죄예방환경설계 학교, 가정형 Wee 센터, Wee 스쿨 확대
-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회복적 생활지도
-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있게 운영

## 8. '수능 절대평가', 기회균등 대입전형 50%

### 진단

- 우리나라는 수저계급론 사회.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고른 기회 대입전형은 현재 11%. 공정성과 역동성 위해 확대 필요
- 대입전형의 유형은 크게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 수능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로 점수를 많이 따서 다른 사람 이기기 경쟁
- 수학은 시험 부담 등으로 포기학생 존재. 또한 영어와 더불어 사교육비 가장 많은 교과임

### 약속

-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11%에서 22%로 확대, 주요 대학은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하여 50% 되도록 행정적 지원
- 전형유형을 수능,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등 세 가지로 간소화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취업·승진·처우 등에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 있으면, 처벌 및 행·재정 조치. '간판 따지면 손해' 사회풍토 조성
- 수능 절대평가
- 중학교 내신은 온전한 절대평가. 3학년 영어교과를 성취평가제 하나로

## 9. 대학 네트워크로 대학 서열과 울타리 극복

### 진단

- 정부의 반값 등록금은 액수 낮추는 방식 아니라 장학금 주는 방식으로, 공약 완성했다 하나 체감 적다는 의견이 존재함
-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유연성이 중요함. 우리나라는 대학서열과 울타리인데, 협력하고 융합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함
- 우리나라 국공립대는 학생수 기준 23%, 방통대 제외 시 19%로 OECD나 유럽연합과 상당한 차이가 남

### 약속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액수 상한제 표준등록금 도입하여 사립대 반값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립대 육성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기초학문, 뿌리산업,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정원은 확대. 부실 사립대는 국립화 등 다각적으로 모색
- 대학 네트워크. 「대학 연계협력법」으로 울타리 넘어 유연한 시스템, 서열 넘어 균형발전 시스템 구축. 1단계는 공동 교육과정, 학점 교류, 전학, 전과 등 울타리 넘어 교육과정 클러스터, 2단계는 요건 부합하면 공동학위, 3단계는 공감대와 합의 있고 여건 구비시 통합전형
- 전문대 재정지원 늘려 고등 직업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 대학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시행 예정 강사법의 중단,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및 사회적 합의로 새 강사법 마련, 통합 정부책임형 연구강의교수제 등 비정규교수 근본대책 수립

---

7대 국민불안 해소

# 주거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 1 매년 15만호의 반값 임대주택 공급
- 2 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 3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 4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5 독일이나 미국처럼 공정임대료제 도입
- 6 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7 부동산 조세정의로 주거안정 재원 마련
- 8 정의롭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 9 적정임금제 등 정의로운 건설 산업 정착
- 10 어르신 무상교통, 버스까지 확대
- 11 대중교통 공공성·안전성 강화



## 1. 매년 15만호의 반값 임대주택 공급

### 진단

- 2015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3.5%에 달하지만 자가점유율은 53.6%에 불과함. 2015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6만호로 전체 주택 재고의 6.0%에 불과, OECD 평균 1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지난 3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2013년~2016년 국토교통부는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계획 물량의 21.8%,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61.7%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는 사실상 고소득층만이 입주 가능해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공공택지 원가 공급 등을 통해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의 실제도급가액에 기초하여 건축비를 낮춘다면 (3.3㎡당 450만원) 반값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히 가능함

### 약속

-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를 위해 매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분납임대 아파트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 도입
- 공공택지 공급 대상을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 공공임대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
- 주택청 신설로 주거복지정책 전담 및 토지·주택 비축 금고 역할 수행

## 2. 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 진단

- 2014년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14.2%)보다 월세(34.0%)의 비중이 높으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9.0%로 저소득층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음
- 따라서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2만원 이하(중위소득의 43%) 가구이며 지급 기준은 소득에 따라 지역별, 가구원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음(81만 가구, 월 평균 11만원)
-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임대료가 적용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주거취약계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약속

-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주거급여 지급액을 월 평균 20만원으로 인상(지원가구수 215만 가구, 연평균 3.2조원 추가 소요)
- 주거급여 추가 소요 재원은 부동산 과표 현실화,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증가분 활용

### 3.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 진단

-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520만가구로 가구원 수 대비 가장 높은 비중(27.2%)을 차지하고 있음
- 1인가구는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라는 대표적인 주거약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공공주택공급,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 정책 대상에서 1인가구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대학생 기숙사는 주거비 부담 없이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필수 교육시설이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 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주거 정책을 1인·청년·대학생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가구의 특성에 맞게 전환해야 함

#### 약속

-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주택법」 최저주거기준 개정 등)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하고 청년 30% 할당
- 1인 가구 주거금융 지원
-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 대상 월 20만원의 대학생 주거수당 지급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4.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진단

- 올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2년 전보다 6천800만원, 18%나 상승하였음
- 2016년 11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06년 10월 이래 1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79.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7.2%)보다 3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남
-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현행법 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음. 임대인이 전세값 과다 인상,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전세 평균 거주기간 4.2년)
- 올해 2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은 75.7%에 달해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 발생 위험이 높아짐.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위험 회피 수단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집주인 동의,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3.6%에 불과함

### 약속

-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보조)

## 5. 독일이나 미국처럼 공정임대료제 도입

### 진단

-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경우 임대주택 수가 800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에 불과함
-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해지면서 임대료가 합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 임의대로 산정되고 있어 임차인이 공정한 계약을 맺기 어려운 환경임
-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영국 등의 국가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 비교임대료·공정임대료·표준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부담가능한(Affordable) 임대료가 산정되고 있음

### 약속

- 「공정임대료법」 제정
-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 지자체 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건축비물가지수, 주택의 소재·종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산정·공시
- 공정임대료위원회를 통해 공정임대료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및 분쟁 조정 수행
-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

## 6. 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진단

- 현행 아파트 선분양제는 과거 70~90년대 주택공급 확보를 위해 분양가 규제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음. 하지만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계속 상승한 분양가는 2014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경우 3.3㎡당 3~4000만원대로 폭등했음
- 선분양제가 유지되는 한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책정을 막을 수가 없음. 또한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인 분양권 전매 투기를 방지할 수 없음
-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공사비의 근거자료인 설계내역 등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주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상품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품질을 판단하고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고 주택 품질 강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함

### 약속

- 선분양제 민간 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1개 세부항목 공개
- 분양가 상한제를 선분양제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시행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제 도입 민간아파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
- 유형별 표준주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표준건축비 도입

## 7. 부동산 조세정의로 주거안정 재원 마련

### 진단

- 우리나라 상위 10% 주택자산 평균은 7억4300만원, 총액은 794조4544 억원으로 전체 주택자산의 35.0%를 점유하고 있음. 상위 20% 소유 주택자산은 전체의 51.7%로 부동산 자산가격의 격차가 매우 심함
- 불로소득 과세를 통해 노동의 대가가 인정받고, 계층간·지역간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절실한 상황이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과표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시가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의 1~2%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 국토연구원 조사결과 아파트, 단독주택, 개별토지의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각각 72%, 59%, 61%에 불과함. 현재 공시가격의 평균 65%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재산세 1.9조원, 종부세 2.1조원 등 약 4.5조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됨

### 약속

- 보유세 정상화(부동산 과표 산정 실거래가 반영률 80% 상향 조정)
- 표준지와 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취등록세와 재산세를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의 활발한 조세행정 유도)
- 부동산 과표 산정 자료 상시 공개
- 현행 3주택자 이상 적용 전세소득 과세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
- 월세 소득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종합과세 실시

## 8. 정의롭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 진단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되었음.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가 과열되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고 있음
- 재건축 초과 이익금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계속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투기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낡고 영세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주거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됨
- 재개발·재건축 사업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조합원과 허가권자인 일부 공무원, 전문가(심의위원)만 정보를 독점하면서 사업 비리를 키우고 있음. 이에 따른 공사비 등 각종 비용의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주택 시장 가격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음

### 약속

- 재개발·재건축 사업 개발이익 50% 환수
- 조합 설립 동의 요건 4/5로 강화
- 재건축 허용연한 50년 이상 설정
-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조합장 권한 위임 범위 축소 등)
-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관련 자료 인터넷 상시 공개



## 9. 적정임금제 등 정의로운 건설 산업 정착

### 진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는 약 153만명에 달함.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비의 책정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는 2015년 평균 일당 158,590원(8시간 기준)임. 하지만 현장 건설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돈은 10시간 이상 일해도 10만원 수준에 불과함
- 미국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건설노동자 임금을 사무직 노동자 임금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고, 공공사업장의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공정임금제의 경우 적정임금 보장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일거리가 없는 건설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제(Fair wage)를 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적폐인 불법다단계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청이 책임지고 시공하는 직접 시공제 도입이 필수적이나 정부는 50억 미만 공사에 한해 적용하여 실효성이 전혀 없음

### 약속

-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임금 보장 법제화
- 공공사업장 건설노동자 법정 임금과 8시간 노동 보장〔국가계약법〕개정
-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
- 공공사업의 경우 직접시공률이 높은 업체에게 정부 발주 수주 우선권 등 혜택 부여

## 10. 어르신 무상교통, 버스까지 확대

### 진단

-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음.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하철이 없고 고령 인구가 많은 군단위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 사실상의 무상교통이 가능함
- 서울시 지하철의 무임교통에 드는 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3,154억원임. 무상교통 비용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버스의 경우 보조금 체계 개편을 통해 무상교통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약속

- 어르신 무상교통, 버스까지 확대
  -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 버스 보조금 체계 개편을 통해 무상교통 비용 마련
- 농어촌, 도서지역 무상택시 도입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

## 11. 대중교통 공공성 · 안전성 강화

### 진단

- 박근혜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일반 열차 감축, 노선의 폐선, 운행의 감축, 안전사고 위험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면 교통 요금 인하, 버스 증차를 통한 출퇴근 혼잡 해소, 승용차 사용량 감축으로 인한 배기가스 감소가 기대됨
-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참사,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모두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유발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음

### 약속

-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회, 민영화된 수서발 KTX 노선 코레일과 재통합
-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지방정부의 버스공영제 실시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버스 면허권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 대중교통 안전사고에 따른 참사 원인제공자 사후적 처벌 강화
  - 화물·버스·택시 노동자의 충분한 임금과 휴식 시간 보장
  - 여객운수사업법에 버스 적정인력 명시 및 규제 강화
  - 안전인력 충원 가로막는 총액인건비제 공공기관부터 우선 폐지
  -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원천금지

---

7대 국민불안 해소

# 일자리

---

“ 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 ”

- 1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할당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 2 사회서비스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100만개
- 3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 4 미래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4차 산업 일자리 창출

## 1.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할당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진단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126시간(2016년)으로 OECD 회원국 중 2위이며, OECD 평균인 1,766시간 보다는 360시간, 독일(1,371시간)에 비하면 755시간 더 일함(1일 8시간 기준으로 94일 더 일함)
- 주 5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663만 명에게 주 5일제 적용을 의무화 하면 주당 3~4시간(연간 156~208시간)이 단축됨
- 2017년 3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135만명 중 청년실업자는 54만8000명, 청년실업률은 12.3%임.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24.1%임

### 약속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하고 1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 적용
  - 노동시간단축 시 임금저하 방지 및 중소기업 부담경감 종합대책 마련
- 청년고용할당제로 질 좋은 청년일자리 보장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상향조정(1.5만개 일자리 창출)
  - 300인 이상 민간기업 5% 이상 청년할당제 적용(23만개 일자리 창출)

## 2. 사회서비스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100만개

### 진단

-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9안전센터 등 현장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규모는 19,254명에 달함. 소방공무원이 처한 열악한 노동·작업환경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인력 확대와 처우개선 필요
- '13년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가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됨. 게다가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5.4%(11년)로 OECD 평균(10.2%)의 절반에 불과. 일자리 창출 여력 상당
-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와 역할 변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확대 및 강화 필요. 그러나 돌봄·재활·상담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저임금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질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도 이뤄져야 함

### 약속

- 전문성 갖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확충, 5년간 단계적으로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확충,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정규직화
- 보건의료, 교사,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전문 일자리 창출
-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보육교사, 장기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및 양성 관리 등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3.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 진단

- 노동자의 절반인 874만 명이 비정규직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151만원에 불과, 54.6%가 1년 미만의 불안한 일자리임
- 비정규직의 확산은 청년들에게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등의 꿈을 빼앗고 중장년층과 노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과 임금 등 차별을 유발하여 우리나라를 내일과 희망이 없는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 요인임

#### 약속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및 정규직 전환. 계절적 업무,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결원 대체,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업무에 한해서만 비정규직 채용
-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불법파견 및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약 20만 명)하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해 적정임금 보장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하는 등 특수고용 제한
-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4. 미래산업, 재생에너지산업, 4차산업,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 진단

- 지금 전 세계는 전기자동차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산업구조 이행은 쉽지 않음. 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
-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의 발달은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지원 및 규제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함.
-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복원 가능

### 약속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 등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 미래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장기투자 로드맵 마련
- 기업들이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투자 주도. 미래산업을 선도할 분야 R&D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
-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이를 통해 기초과학·공학·수학 등 융합교육(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사회적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사회적경제 GDP 대비 10%까지 육성



---

7대 국민불안 해소

# 건강



- 
- 1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보장성 80% 실현
  - 2 저소득·장애인·이주민·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 3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정상화로 건강관리책임제
  - 4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 5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 6 국민건강부 신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 7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 해소를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 1.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보장성 80% 실현

### 진단

- 건강보험 보장성 60% 내외에 불과함.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키워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가 전체 진료비의 17%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시행하는 상병수당 부재, 효과와 타당성이 미검증된 신의료기술과 약제가 무분별하게 비급여로 허용되고 있어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약속

- MRI,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제도 폐지
-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미용목적성형 등만 배제)
-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는 보장성 90%
- 담뱃세 국고 인상분(3.8조원)을 어린이(0~15세)입원진료비 100% 보장과 암예방·치료비 100% 보장에 우선 사용
-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신의료기술·약제 무분별한 사용금지, 안전성·효과성 입증 시 급여화
- 인별, 건별, 질병별 수가에 기초한 지불제도 도입, 적정수가 보장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혁
  - 재산·자동차 폐지, 분리과세·양도·상속증여소득 부과
- 민간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건강보험급여 내 실손형 판매금지, 보험사 횡포방지 및 가입자 권리보호(「민간의료보험법」 제정)

## 2. 저소득·장애인·이주민·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 진단

- 의료급여 대상자는 150만 명으로 국민의 3%에 불과하며 지역가입자 약 200만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이 시급함

### 약속

-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 확대, 하위 15%가구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를 국민에서 국내 거주 시민(미등록체류자, 유학생 등)으로 전환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도입,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확대
- 신(新)고려장 아난 선진 장기요양체계 구축
  -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공공시설 확충 및 인력·시설 기준 강화
  -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로 통합된 지역서비스 제공
  - 예방급여(건강보험 건강관리, 장기요양 4~5등급) 확대
  - 장기요양병원 인력연동지불제 도입, 요양보호사 수가제 개선

### 3.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 정상화로 건강관리책임제

#### 진단

- 병원의 일상화된 1시간 대기 3분 진료, 의사 불신으로 인한 의료쇼핑  
 횡행 등 1차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안심하고 편하게 건강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도 역시 부재함
- 대도시 병원 쏠림 현상 등 대도시와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약속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행
  - 협동조합형 주치의, 자발적 등록 주치의 등 다양한 형태 보장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 장애인주치의제 강화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
  -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
  -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
-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읍면에는 보건지소 강화
- 공공의료복지 허브 구축
  - 시군구 지역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로 의료복지허브 구축
  - 시도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시립병원)'을 묶은 특수법인 설치
  - 선진 외국 수준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
  - 공공병상 필요도에 따라 지역거점 지방의료원 단계적 확충

## 4.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 진단

- 인구 1천명 당 보건의료인력 종사자 수가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 하중 등으로 이직도 매우 높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약속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 비정규직 철폐 및 보건직 공무원 전환
- 모든 병원의 병실에 포괄간호 서비스 전면 제공

## 5.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 진단

-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료와 건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 약속

- 임신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실시(간호사 가정방문 산후조리)
  -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및 상담, 영양관리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건강증진학교 실현
  - 발암물질 없는 학교 실현, 적절한 체육시간 보장, 야간학습 금지, 안전한 시설, 식수관리 등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도입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 유해물질·공정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 작업중지권 보장
  - 원청 위험전이/책임의 하청 전가 방지(「기업살인법」 제정)
  - 지역노동건강센터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업안전보건체계 구축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건강관리사 배치

## 6. 국민건강부 신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 진단

-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어 옴. 이는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혼선과 보건의료시스템의 허약함 때문으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 약속

-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 국민건강부 신설로 부처별 건강정책 통합,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 질병관리청(질병관리본부), 안전보건청(안전보건공단)으로 승격
-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치
  - 고용·교육불평등 등 건강결정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설치, 운영
-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대개혁 위원회에 의사, 정부, 시민 참여
- 광역시도마다 건강국 신설, 지역건강위원회 설치로 지역보건의료기관 평가·감독과 정책·예산 심의
- 건강영향평가 실시
  - 모든 정부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과정에 건강영향평가 실시
  - 주거·영양·식수·대기 등 건강불평등 환경개선과 격차 해소

## 7.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 진단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함. 5개 직종(건설기계, 화물, 버스, 쿼, 문화예술인) 대상 '중소사업주 특례(임의가입)' 적용은 시행한지 10여년 지나도록 0.0003%만 가입. 대다수 배달대행업체는 청소년 4대보험 가입 거부. 소규모 건설공사는 보험료 징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됨. 비공식부문 노동자, 1인 사업장, 농민 등도 배제되고 있음
- 산재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게 하고, 실제 위험은 대기업이 일으키나 부담은 하청이나 용역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전가되고 있음

### 약속

- 특수고용·해외파견노동자, 농민,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수면장애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중소기업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입
- 청구절차를 개선해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산재 청구
- 개인실적요율제 폐지 등 영세사업장에 불리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

7대 국민불안 해소

# 안전



“ 위험 사회에서 안전 사회로 ”

- 1 안전사회 첫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 2 안전 최우선, 재난안전 대응 국가시스템 개편
- 3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소방재정 확충
- 4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 5 「지역사회알권리법」으로 화학물질정보 투명 공개
- 6 핵발전소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원전안전관리체계 구축
- 7 적극적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 8 GMO·식품첨가물 완전표시, 방사능 먹거리 규제 강화

## 1. 안전사회 첫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 진단

- 세월호가 3년여 만에 인양되어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선체조사위의 활동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활동기간 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동기간을 최장 10개월로 한정하고 있음
-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정밀조사는 그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조사활동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활동방해와 악의적인 법 해석으로 활동이 강제로 종료되었음

### 약속

- 선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인력, 예산 보장 등 선체조사위법 개정
- 실질적 조사 권한을 보장하는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 유가족과 협의해 선체의 영구 보존 방안 마련
- 세월호 교훈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 2. 안전 최우선, 재난안전 대응 국가시스템 개편

### 진단

-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으나 국민안전처는 메르스나 지진 대응시 미흡한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고 국가재난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업무 성격과 조직의 법적 위상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또한 소방방재청이 중앙소방본부로,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으나 해경 해체는 세월호 참사 시 미흡한 대응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돌리기 위한 졸속 행정이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던 소방방재청은 엉뚱하게도 중앙소방본부로 지위가 격하되었음
- 무엇보다 청와대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함에도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버티며 책임을 회피해 국민적 비난을 받았음

### 약속

-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대통령이 통할하는 국민안전부로 격상시키고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복원시켜 국민안전부의 독립외청으로 재편
- 청와대 비서실 산하 위기관리수석 신설 및 위기관리센터 강화(안보 및 재난 통합컨트롤타워 기능 복원)
- 공공기관 안전중심경영 구축
- 전문성 갖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확충

### 3.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소방재정 확충

#### 진단

-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9안전센터 등 현장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규모는 19,254명에 달함. 실질적인 3교대 실시율은 50%를 갓 넘는 수준으로 피로 누적과 체력·집중력 저하 등으로 소방관들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 받고 있음
- 소방장비도 부족해 안전장비를 자비로 구입하거나 사용연한이 지난 구조사다리를 사용하는 비율도 20%에 달함
-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900억원에 달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개별소비세액의 20%)가 신설됐으나 이를 빌미로 소방안전예산을 삭감해 오히려 소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음

#### 약속

- 5년간 단계적으로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확충(2만명)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실질적인 3교대 근무율 100% 실현,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화, 인사적체 해소, 순직 인정범위 확대)
- 소방대응장비 국고보조 대상 확대 및 기준 보조율 상향 조정

## 4.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 진단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업무조차 외주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음
- 우리나라 일터는 3시간마다 한 명이 죽고 5분마다 한 명이 다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산재사망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음
-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재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약속

-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정규직화
-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 5. 「지역사회알권리법」으로 화학물질정보 투명 공개

### 진단

- 구미 불산 누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충남 금산 불산 누출, 여수 GS칼텍스 송유관 파손, 삼성전자 수원공장 오폐수로 인한 원천리천물고기 집단폐사 사건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주민들은 공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뿐더러 사고 이후에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음
-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주민은 물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시청 공무원도 불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음. 금산 누출 사고 때는 해당 업체가 사실을 은폐해 주민이 대피할 시기를 놓치기도 함

### 약속

- 화학물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매뉴얼 마련
-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 6. 핵발전소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원전안전관리체계 구축

### 진단

- 2016년 경주 지진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경북 월성 4호기에서 새로 장착 중이던 핵연료 한 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비롯해 부산 고리 4호기 냉각재 누설로 인한 수동 정지, 고리 3호기 등의 철판 부식 등 원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 우리나라 원자력안전행정 체계는 중앙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으나 핵발전소나 핵연료시설 등 관련시설이 소재하거나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전무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유와 참여 경로도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약속

-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시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다중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

## 7. 적극적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 진단

-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서 시작되어야 함.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중앙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차원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미비한 상태임
- 도시형 생활주택 등 규제완화로 도입된 주택시설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수, 인천 등 전통시장은 잇따른 화재로 상인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음

### 약속

-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우범지역 진단 및 물리적 환경개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전략 수립
-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



## 8. GMO · 식품첨가물 완전표시, 방사능 먹거리 규제 강화

### 진단

- 「식품위생법」상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의 범위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 되었음
- 하지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또 표시의무자 범위에 식품접객업소가 추가되지 않았음
-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에 규제 조항이 없음
- 아질산나트륨 등 각종 식품첨가물이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용도에 따라 하나의 첨가물만 표시해도 되는 일괄표시가 허용되고 있으며, 포장 크기가 작은 경우나 대형마트 등에서 만들어 파는 즉석식품인 경우 표시가 면제되고 있음

### 약속

- GMO 성분 잔류와 상관없이 모든 식품 원재료 대상으로 GMO 완전표시제 실시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방사능 오염 먹거리 규제
-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해 예외 없이 표시 의무화

---

## 7대 국민불안 해소

# 기본 복지



- 
- 1 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인상으로 공적연금 강화
  - 2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80% 보장
  - 3 질높은 장기요양으로 좋은돌봄 실현
  - 4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 5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전국민 산재안전망
  - 6 「두루누리사회보험 2」로 소상공인·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 7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8 3대(생계·의료·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
  - 9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 10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로 질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 11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인력 확대 및 자치복지 강화
  - 12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 13 노동복지부 신설 및 노동복지부총리제 실시

## 1. 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인상으로 공적연금 강화

### 진단

-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률은 2013년 49.6%로 OECD 회원국 중 1위 이고, 평균 12.1%의 4배에 달함(OECD, 2014)
- 우리나라 노인이 빈곤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이 미비하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이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60년에도 22%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명목소득대체율이 2028년 40%로 인하되기 때문임
- 노인빈곤 발생의 또 다른 이유는 공적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때문임. 전업주부, 학생 등 1,012만 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배제되어 있으며, 납부예외자 457만명, 장기체납자 113만명 등까지 더하면 공적연금 가입자는 18~59세 인구의 절반(50.7%)에 그침

### 약속

- 100%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 방식 폐지, 국민연금 A값 연계
  - 캐나다의 클로백(상위층 세금환수) 제도 도입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 군대·실업크레딧 확대, 양육크레딧 도입
  - 국민연금 불신해소 위해 국가지급 의무 법에 명시
- 1층(기초연금)-2층(국민연금)-3층(퇴직연금) 체계 구축

## 2.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80% 보장

### 진단

- 건강보험 보장성 60% 내외에 불과함.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키워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함. OECD 회원국이 도입한 상병수당 부재로 입원 시 생활도 어려운 상황임
- 병원의 일상화된 1시간 대기 3분 진료, 의사 불신으로 의료쇼핑이 횡행함. 일상적인 건강상담·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도가 없음

### 약속

- MRI,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제도 폐지
-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미용목적성형 등만 배제)
-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는 보장성 90%
- 담뱃세 국고 인상분(3.8조원)을 어린이(0~15세)입원진료비 100% 보장과 암예방·치료비 100% 보장에 우선 사용
-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어린이(0~15세)는 100% 보장
-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신의료기술·약제의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혁
- 의료급여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하위 15%가구 보험료 지원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행
  - 협동조합형 주치의, 자발적 등록 주치의 등 다양한 형태 보장
  - 18세 이하 치과주치의제 시행, 장애인주치의제 강화

### 3. 질높은 장기요양으로 좋은 돌봄 실현

#### 진단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전화걸기, 버스 및 전철타기, 가벼운 집안일하기 등)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18.2%에 해당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등)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11.3%에 달함
- 장기요양보호사는 26.7만 명이나 약 7천원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성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함

#### 약속

- 장기요양대상자 매년 1%p씩 확대
- 1.4%에 불과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 일본과 독일 등에서 실시하는 방문재활급여(방문물리치료) 신설
- 집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 호주처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요양시설 특화서비스 신설
- 예방급여(건강보험 건강관리, 장기요양 4~5등급) 확대
- 장기요양보호사 수가 개선(단가 개선, 이동시간·점심시간·보고서 작성시간 보장, 야간·주말할증 인상), 재가서비스 시 성폭력방지 대책 마련,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인정 및 예방 매뉴얼 마련

## 4.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 진단

- 현재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발적 이직(離職)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원천금지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고용보험 보장성이 취약함
-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못한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임금노동자는 21.0%에 이르고,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42.5%에 불과함
- 특히 청년 취업애로계층에 중 70%에 가까운 81만 명의 청년들이 실업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

### 약속

-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제공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을 월 18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
- 실업부조 도입
  - 15세 ~ 35세미만 청년 중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50%인 약 68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
  -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 5.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 진단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함. 5개 직종(건설기계, 화물, 버스, 킥, 문화예술인) 대상 '중소사업주 특례(임의가입)' 적용은 시행한지 10여년 지나도록 0.0003%만 가입함. 대다수 배달대행업체는 청소년 4대보험 가입 거부. 소규모 건설공사는 보험료 징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됨. 비공식부문 노동자, 1인 사업장, 농민 등도 적용받지 못함
- 산재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오히려 산재를 은폐케 하고, 실제 위험은 대기업이 생산하나 부담은 하청이나 용역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전가되고 있음

### 약속

- 특수고용·해외파견노동자, 농민,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수면장애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중소기업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입
- 청구절차를 개선해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산재 청구
- 개인실적요율제 폐지 등 영세사업장에 불리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 6. 「두루누리사회보험 2」로 소상공인·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진단

-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사업)를 통해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40~60%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 및 납부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약속

-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신설
  - 두루누리사회보험과 동일하게 월소득 14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및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 40~60%(신규가입60%) 지원



## 7.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진단

-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하고 가입국가 중 꼴찌 수준임.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양적 확대 모두 필요한 상황임
- 선진 복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회수당 도입으로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막는 정책이 필요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6)에 따르면, 현재 91개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임. 스웨덴의 경우 1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50크로네(약 15만원)를 지급하고, 일본은 중학교까지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1만엔~1.5만엔(약 11만원~16.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아동수당은 아동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OECD에 따르면 아동수당이 자녀 양육가구들의 빈곤율을 40% 가까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꺼리는 가족에게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남

### 약속

-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모든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
- 클로백(상위층 세금환수) 제도 도입

## 8. 3대(생계·의료·주거급여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

### 진단

-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심각한 빈곤 사각지대가 생김.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꾸었으나 2016년 12월말 수급자 수는 16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 수준임. 빈곤실태조사가 이뤄진 2010년 수급자수는 155만 명임. 당시 117만 명이 절대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유로 탈락함
- 2014년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14.2%)보다 월세(34.0%)의 비중이 높으며,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9%로 저소득층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음
-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 150만 명으로 국민의 3% 수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계층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되어 지역가입자 약 200만 세대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음
- 빈곤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

### 약속

- 생계·의료·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50%로 확대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60%로 확대(월평균 11만원 → 20만원 인상)

## 9.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 진단

-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와 역할 변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

### 약속

- 모든 출산가정에 임신부·영유아방문건강제(간호사 방문 산후조리)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 국공립 대기자수 26만 명 해소 등 국공립 비중 확대
  - 병설유치원, 지역통합형·중소기업연계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 협동조합어린이집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 보육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해 민간 공공성 강화
  -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및 지역사회 서비스로 선진요양 실현
  - 노인장기요양대상 매년 1% 확대 및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 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설치(돌봄육구·서비스고충 상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간 연계 지원체계)
  -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방문재활급여 및 특화서비스 신설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 활동보조인 이동시간 보장, 야간·주말단가 인상, 월급제 시행

## 10.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 진단

- 2013년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가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됨. 그러나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5.4%(2011년)로 OECD 평균(10.2%)의 절반에 불과함
-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과도한 민간의존은 지역간 불균형, 종사자 처우의 열악함, 시설운영의 어려움, 서비스 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을 불러 오고 있음
-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지역간 불균등한 제공은 대국민 사회서비스의 질 하락 및 낮은 접근성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

### 약속

-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 사회서비스 수립 계획에 따라 인력공급·관리 종합계획 수립
  - 사회서비스 노동자 교육 및 훈련 등 양성프로그램 마련
  -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인력 직접 고용 및 지역 공급 관리
- 민간부문 서비스 표준운영모형 개발 및 관리, 지원체계 마련
-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제공시 종사자 처우개선 인센티브 마련

## 11.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인력 확대 및 자치복지 강화

### 진단

- 17개 중앙부처에서 292개 복지사업 수행, 이 중 170개가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음. 지자체는 약 4만개 사업 시행 중임
- 보건사회연구원(2013)에 따르면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5,249명, 복지 대상자수는 1,545명에 달함. 반면, 영국은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284명, 호주는 806명임(2005년 기준)
-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는 처우가 더욱 열악함.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평균연봉은 2,806만원,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는 3,332만원으로 복지전담공무원(4,214만원)의 72% 수준임(201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2015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1,496개 복지사업을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해 무분별하게 축소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하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되고 있음

### 약속

-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공무원을 국민 1천명당 1명으로 확대
  - 복지공무원 1인당 2020년 3천명 → 2022년 1천명으로 임기 내 실현
  - 신규선발 충원, 승진 시 우대, 가점부여 등 인사제도 개선,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확대, 지자체 기준인건비제 개선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 유사중복사업 정비중단, 중앙복지(소득보장)의 지방정부 재정 전가 방지

## 12.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 진단

- 한국의 국민(조세)부담률은 GDP의 25.1%로 OECD 평균 34.1%의 9% 정도 부족함(약 144조원 부족)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OECD 회원국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프랑스는 31.5%)
- 부족한 사회복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이 필요함

### 약속

- 재원 사용처가 복지사업으로만 정해진 목적세로 양극화 해소와 보편 복지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 ※ 목적세: 70년대 자주국방 ‘방위세’, 80년대 미래세대 ‘교육세’, 90년대 WTO가입 농어촌특별세, 2000년 교통·에너지·환경세
- 사회복지세는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임
- 2018~2022년 동안 총 109조원(연 평균 21.8조원) 마련
- 현행 세율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5년간 소득세분(연 11.0조원), 법인세분(연 9.4조원), 상속증여세분(1.2조원), 종합부동산세분(0.3조원)의 사회복지세 확보

## 13. 노동복지부 신설 및 노동복지부총리제 실시

### 진단

-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 반면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고용, 주거 영역은 중앙부터 지역까지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음. 이는 복지서비스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도 발생하게 해 국민들의 복지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게 함
-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등이 있어 왔음. 지금의 시대정신은 노동과 복지임

### 약속

- 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해 ‘노동복지부’로 재편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노사관계 분야는 경제부처로 재편) 통합
  - 노동복지부 산하에 주거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주택청 신설
  - 노동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청(현금급여 전담) 신설
- 노동복지부장관이 노동복지부총리 수행
- 복지국가대전환위원회 설치로 OECD 평균 복지국가 로드맵 마련
  - 정부, 국회, 노동조합, 시민사회 참여 ‘복지국가대전환위원회’ 설치
  - 2025년 OECD 평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

---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



산업통상 | 금융

과학기술 | 정보통신



---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

# 산업 통상



## “4대 발전전략으로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 1 미래산업·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 2 뿌리산업으로서 제조업의 첨단화와 서비스화
- 3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
- 4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

##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을”

- 5 재벌 특혜 무역에서 정의로운 무역으로
- 6 서비스와 농축산 분야 등 한미FTA 재협상
- 7 통상정책의 원칙은 포용적 통상협정
- 8 재벌 위한 고환율정책 중단, 국내투자 확대

## 1. 미래산업 ·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 진단

- 지금 전 세계는 전기자동차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음
- 그러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적 성공의 가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별기업 차원에서 산업구조 이행은 쉽지 않음
-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정체를 줄이고 한국경제의 경로를 전환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

### 약속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 등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 미래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및 장기투자 로드맵 마련
-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투자 주도
- 미래산업을 선도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
-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의 원화표시 국내투자를 허용하여 재원 확충

## 2. 뿌리산업으로서 제조업의 첨단화와 서비스화

### 진단

- 세계 각국은 제조업 근간을 다지기 위해 제조업 발전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중임
  - 미국) 첨단 제조업 구상(AMI), 일본) 일본산업재흥플랜, 독일) Industry 4.0, 중국) 중국제조 2015
- 우리나라도 제조업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제조업 발전전략이 필요함

### 약속

- ‘탈공업화의 함정’에서 벗어나 제조업의 재부흥 전략으로서, ‘첨단제조업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
- ‘한국 제조업 혁신전략’의 컨트롤타워 구축
- 자율주행차 등과 같이 제조업의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첨단화
- 제조업체가 제품의 판매, 구매와 사용단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구매, 사용, 폐기단계 등 제품수명주기 전 구간에서의 관련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서비스화
- 지역내 기업, 대학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간 산학협력체계 구축
  -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지원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의 인력 양성

### 3.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

#### 진단

- 혁신클러스터는 중소기업간 거래비용을 감축하고 정보와 위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함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복원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임

#### 약속

- 우리 경제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을 10%로 올려 나감
-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
  - 상품개발, 유통,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지역대학, 연구소, 사업서비스를 결합하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수익성과 동시에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

## 4.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

### 진단

- 2010년 중국과 대만은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한 후 정경분리 원칙으로 경제공동체 차이완(Chiwan)이 형성됨
  - 협정 체결 이후 주 30편에 불과했던 정기항공 노선은 8백여 편으로 늘어났고, 왕래인원은 연간 8백만명에 이르렀으며, 8만개 대만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2백만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화해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됨
- 기존 남북경협을 근원적 한계를 넘어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평화의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제도화된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약속

- 확고한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간 협정인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추진
- 개성공단의 확대는 물론 남북 철원공단, 환동해 경제·관광벨트, 나진·선봉지구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남북간 경제협력 진전
- 남북철도 및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 동북아 천연가스 송유관 등의 사업으로 확장

## 5. 재벌 특혜 무역에서 정의로운 무역으로

### 진단

- 「통상절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음. 이행상황 평가는 경제적 효과 및 피해산업 대책의 실효성, 상대국의 이행 상황이 대상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단위가 취약하고 분석된 평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나, 상대국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나 협상을 이유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재벌 대기업은 가공 중계무역 등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으나,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 없고 농축산물 등 특정 계층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음

### 약속

- 한미 FTA 등 그동안 체결했던 FTA가 국민경제를 포함해 인권 등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 인력 확보 및 관련 정보 공개(유럽은 인권 영향 평가를 의무화)
- 일부 통상관료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민주적 통상 거버넌스로 대체하고,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절차법」을 민주적으로 개정
- 농축수산업 등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은 개선하고, 무역이득 공유제 등 통상 재분배 기능 강화

## 6. 서비스와 농축산 분야 등 한미FTA 재협상

### 진단

- 한미FTA 추진 당시 정부는 GDP 5.6%, 일자리 34만개 창출, 수출증가, 소비자 후생, 외국인 투자증대를 기대효과로 제시했으나 결과는 미비함
- 교역량은 덜 줄어든 정도,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우리보다 3배 이상 증가, 2016년 자동차가 포함 전까지 수혜와 비수혜 품목간 수출 증가율 차이 없었음. 직접투자의 경우 대미 투자가 2006년 116억불에서 2015년 572억불로 증가했으나 대한국 투자는 247억불에서 342억불에 그침
- 2016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가 없었다면 한국의 무역흑자가 400억불 이상 확대되었을 것이라 분석함
- 한미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불가역적인 래칫시스템 등 독소 조항과 함께 양국간 법적 지위의 차이나 반덤핑 장벽 미개선 등 불평등 조항이 여전히 큰 문제인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함

### 약속

- 한미FTA 재협상 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S) 조항을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 한미 FTA에 대한 양국 국내법과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
-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폐지하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은 개선
- 농축산물 등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나 특정 계층과 관련한 협정 재협상

## 7. 통상정책의 원칙은 포용적 경제협력

### 진단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 통합을 논의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1년부터 ASEAN을 중심으로 추진 중임
- RCEP는 발효 후 10년 내 관세철폐 비율을 80%로 잠정합의하여 상품 자유화도가 낮아 농산물시장 개방 우려가 덜함
- 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시장개방도가 높은 FTA였으나, 미국의 탈퇴로 협정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짐

### 약속

-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RCE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포용적 경제협력을 원칙으로 국가간 국익과 상호호혜 원칙 준수
- 식품안전을 위한 농산물 검역, 쌀 수입쿼터, 수급안정을 위한 국영무역제도 등 농산물시장 개방은 제외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등 주권침해 소지 조항 삭제
- 통상을 통해 이익을 본 산업과 기업은 ‘무역이득 공유제’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익 공유화
- 노동자, 중소기업, 농어민 등 특정 계층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통상 협상중단



## 8. 재벌 위한 고환율정책 중단, 국내투자 확대

### 진단

- 고환율정책은 수출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며, 내수와 수출 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킴
- 내외 금리차로 인해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손실만 2016년 10월 35조 원에 달하며, 전체 외환보유액으로 인한 손실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자본의 해외유출인 준비자산 증가는 국내투자에 부정적 효과를 줌
- 국내투자 부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내투자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마당에 한국투자공사가 해외투자 위주로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임
- 한국투자공사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메릴린치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은 한국투자공사의 해외직접투자 능력에 대한 의문을 가져옴

### 약속

-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원달러환율 인상 중단
- 외환보유액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법률·행정 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
-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을 원화표시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

# 금융



---

## “ 서민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 ”

- 1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
- 2 소멸시효 채권 거래 금지 및 담보대출 개선
- 3 연대보증 개선과 시민단체 채무 대리인 선임 가능
- 4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
- 5 공적 구제제도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개선

## “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역금융 활성화 ”

- 6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7 금융시스템 개선 및 사모·헤지 펀드 규제 강화
- 8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과 도민은행 설립

## 1.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

### 진단

- 최고 금리가 「대부업법」의 법정이자율 연 27.9%, 개인간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제한법」 연 25%로 너무 높음

#### [외국의 이자 규제 사례]

- 일본은 최고 금리를 15~20% 수준에서 규제
  - 미국의 경우 뉴욕 주가 연 16%, 캘리포니아 주가 연 10%로 규제
  -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이자 상한으로 규제
-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이자비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채무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동 비용을 포함하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게 됨

### 약속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동일하게 20%로 인하
-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할 경우 이자에 포함
-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이자총액제한법」)

## 2. 소멸시효 채권 거래 금지 및 담보대출 개선

### 진단

- 채권자가 은행에서 대부업체 등으로 바뀌면서 부당한 추심에 노출됨
-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소멸시효 채권의 거래가 금지되었으나,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일부 상환 시 시효가 되살아남
- 채무자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연체되는 경우에도 담보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채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 이후에도 미회수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동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약속

- 파산·면책·사망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신용회복 또는 확정기 결정된 채권 등은 매각 금지 법제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활 금지 법제화
- 소멸시효 이전의 채권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명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대출 표준약관과 표준거래계약서에 포함
- 담보대출의 이자 연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권 실행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화

### 3. 연대보증 개선과 시민단체 채무 대리인 선임 가능

#### 진단

- 연대보증은 금융위원회의 지침으로 2012년 은행, 2013년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나, 대부업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의 경우 금지되지 않아 여전히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함
- 채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을 선임할 수 있으나 금전적 부담으로 서민층이 이용하기 어려움
-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업자 등을 제외한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와 이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예외임

#### 약속

-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 연대보증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과태료 부과(「대부업법」 개정)
- 채무자 대리인으로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채권추심법」 개정)하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금지(「채권추심법」 개정)

## 4.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 및 국민행복기금 개선

### 진단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요건은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자,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개인워크아웃은 무담보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60%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고, 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만 감면함
-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에 대하여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 최대 60%(취약계층 90%) 감면함

### 약속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요건 가운데 연체기간, 소득 조건을 완화하여 소액채무자는 누구나 개인워크아웃 신청 허용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시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70%(취약계층 100%)로 감면률 확대
-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개인워크아웃의 대상자에 포함시켜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잔여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주고 장기분할상황으로 전환

## 5. 공적 구제제도 채무자에게 우호적으로 개선

### 진단

- 채무자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가능하도록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개인회생절차에는 중지명령제가 있으나 파산절차에는 없어 채권자의 압류를 방지할 수 없고 압류금지 생계비가 1개월에 불과한데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는 면책대상채권에서 제외함
- 개인파산 면제재산 보증금 액수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원)보다 적은 금액(서울 3,400만원)에 불과함

### 약속

-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하되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으로 변경(「채무자회생법」 개정)
-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채무자회생법」 개정)
- 압류금지 생계비를 1개월간에서 6개월간으로 변경(「민사집행법」 개정)
- 압류금지 물건에 컴퓨터, 스마트폰을 명시적으로 포함(「민사집행법」 개정)
-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대상채권의 범위에 포함(「채무자회생법」 개정)
- 보증금 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보호받는 금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액(현행 대도시 5,400만원) 수준으로 면제재산 인상(「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6.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진단

-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해당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여 저금리 부채였다가 고금리 부채의 덩어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불완전판매, 약탈적 대출, 약관을 위반하는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을 우선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약속

- 대부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은 2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사적 및 공적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 신용상담을 받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
-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 직무유기, 배임행위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7. 금융시스템 개선 및 사모·헤지 펀드 규제 강화

### 진단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에 노동자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없음
-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감독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부각시킴
- 정부기구인 금융위원회는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감독집행 기능은 민간감독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 공모펀드는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 외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 약속

- 금융통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추천기관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 이사회에 노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 포함
-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를 요구하였으나 2개월 이내 미이행 시 단독조사를 허용하고,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정부기구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 폐지 - 차입한도, 파생상품 거래 한도 등
- 역외 소재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 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가안보 영향 심의 및 허가제 시행

## 8.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과 도민은행 설립

### 진단

-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등은 “돈 가뭄” 현상을 보임
- 현재 지방은행은 부산, 대구, 전북, 경남, 광주, 제주 6개 지방은행이 있으며, 강원권, 충청권(대전), 경기권(인천)에는 없음

### 약속

- (가칭)「지역금융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농협, 우체국, 금융공기업 등에 우선 시행(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신용평등기회법」, 일본의 「금융평가법」 참조)
  -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서민과 지역주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의무 부과
- 현재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부터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
  - 이사회에 중소기업인, 시도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 광역시도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

# 과학 기술



##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 1 연구개발(R&D) 거버넌스 및 예산투자의 파괴적 혁신
- 2 과학기술 출연(연)의 자율성·독창성 제고
- 3 R&D 평가 전문화와 부실 R&D 평가지표 마련
- 4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연구실 안전 강화
- 5 원스톱 지원 등 지역경제 혁신 네트워크 구축
- 6 R&D 부정비리 근절과 연구윤리 강화
- 7 4차 산업혁명 전담부서 및 정부위원회 설치
- 8 연구개발 공제, 대기업은 절반, 중소기업은 두배
- 9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열린 과학

## 1. 연구개발(R&D) 거버넌스 및 예산투자의 파괴적 혁신

### 진단

- ‘한국 과학기술 진단’ 설문결과, ‘불공정 연구비 배분’, ‘정부 지나친 간섭과 일방적 정책추진’, ‘과기계 현장 소통 부재’를 핵심적으로 지적함
- 미래부가 기초연구 투자방향·우선순위 수립에 개입하여 추격형·단기성과창출 중심 연구지원을 하고 있음. 기초연구 비중이 40% 수준이나, 순수기초연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전환 필요
- 부처별 인기주제 선점경쟁, 경쟁적 대형과제 발굴경쟁에 대해 상대평가 외 실질적 통제·견제 장치 부재. 부처별·부처내 협력과 연계가 단절되어 정부 투자의 중복성 및 비연계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됨
- 과학기술 이슈는 사회 전영역과 결합되어 사회갈등과 비용증대로 이어짐. 과학기술과 사회 관련 문제에서 갈등 조정과 통합적 관점이 필요함

### 약속

- 과학기술분야 국가전략과제 방향제시 및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
- 예비타당성 조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묻지마 위험수용’이 아닌, 위험수용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 강화
- 기초·원천 R&D 비중 45%,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40%로 확대
- 범부처 국가적 전략·정책·규제 등 위해 국과위 산하 부문별 특위(원자력, 화학물질안전, 에너지/기후/환경, 미래성장동력, 우주 등) 설치·운영

## 2. 과학기술 출연(연)의 자율성 · 독창성 제고

### 진단

- 출연(연) 예산은 정부출연금 41~43%, 자체수입 57~59%로 구성됨. 출연금 예산은 기재부가 편성지침을 내놓고, 미래부가 개입하여 최종 확정함
- 출연(연) 자체수입 또한 대부분 미래부 등 정부 과제 수주로 충당. 미래부가 부처별 R&D 예산배분 · 투자방향 · 우선순위 수립, 지출한도 · 중기계획 설정, 예산심의권을 가짐. 기초 · 원천기술 연구보다 정부 이해에 맞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낼만한 연구에 먼저 재원이 할당됨
- 정부가 출연(연)과 연구자들의 돈줄과 연구방향을 여전히 쥐고 있어 연구자들의 자율성 · 독창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경제협력개발기구(2014)는 한국 공공R&D가 실용연구 · 기술개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함. 현대경제연구원(2015)은 공공R&D 생산성이 '12년 기준 1조원 투입시 132억원 기술료 수입발생에 그친다고 분석함

### 약속

- 출연(연) 정부출연금을 70% 이상으로 하여, 관료의 개입을 최소화
- 출연금의 포괄예산 전환, 부처별 R&D예산을 연구대주제 · 산업별 포괄예산 전환, 연구자인건비 부문별 70~100% 보장, 기업 R&D수행 시 인건비없이 직접비만 요구하여 기업자체 R&D비용 대비 10~30%로 수행
- 미래부 개입 최소화, 기관장 선임 이사회 독립성 및 자체감사 강화
- 현장 과기계와 정기적 · 실질적 소통기구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재정립
- 출연(연) 임원진에 의무적인 해당 기관 연구자 출신 노동이사 1인 구성

### 3. R&D 평가 전문화와 부실 R&D 평가지표 마련

#### 진단

- 정량화된 평가기준이 성과보다 결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측정하기 어려운 연구결과를 놓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음. 사업 평가인력 전문성이 낮아 도전적·혁신적·창의적 R&D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9개 분야 59개 중분류별(①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SW(Software) ② 생명·보건의료 ③ 에너지자원 ~ ⑨ 환경·기상) 투자 우선순위 및 지침을 수립·적용하고 있으나 기술로드맵 부실로 허명에 불과함
- 정부 R&D는 사실상 실패 상태로 부실 전략·추진과제에 대한 정밀 진단이 요구됨. 기존 28개 추진과제별 선후(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과 추진과제별 반영 방안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함

#### 약속

- 양적·질적 전문가평가를 병행하되 양질 연구 판단·평가능력 향상을 위해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피평가자 민원수렴
- 부실 R&D 단계별 평가지표 작성(1차-백화점식 정량지표 불명확/계획부재, 2차-시장수요/개발기획 연계부족, 3차-수요창출 계획부재, 4차-목표부재), 기존 R&D 추진과제 선후관계·문제점·개선방안 정밀 분석
-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선정·자립화, 분야별 고경력 전문 연구자 대상으로 기술개발평가 계획·전략(로드맵) 작성 위원 임명 및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 조직·운영 장려 및 인센티브

## 4.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연구실 안전 강화

### 진단

- 2015년 현재, 25개 출연(연) 현원은 총 1만 1,446명인데, 비정규직이 4,273명(27.2%)이며, 간접고용까지 포함시 비정규직은 6,602명임
- 여성 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각하고, 연구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전문과학기술인력 미충원 비율이 50% 수준임
- 과학기술 출연(연)의 비정규직은 연봉은 정규직 대비 53.5%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남성이 22.8%, 여성이 56.9%로 여성 비중 매우 높음
- 대학 실험실에서는 매년 100여 건의 사고 발생하나 신고 비율 낮음

### 약속

-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도입 취소 및 과학기술 연구직 정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전 수준(65세) 환원
- 연구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출연(연) 박사후 연구원의 자유로운 채용 및 안정적인 근무기간 보장, 용이한 정규직 전환
-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 여성·고경력(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 교육 및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소기업 자문·연구인력 채용 시 및 인건비·4대 보험 일부 지원
- 출연(연) 청년연구원의 정규직 비중을 85%로 높이고,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5%로 낮춤. 향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더 높게 전환
- 공공·민간연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위의 실질적 운영, 기관장·국공립 총장 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반영

## 5. 원스톱 지원 등 지역경제 혁신 네트워크 구축

### 진단

- 창조경제센터는 기존 중기지원센터와 유사·중복되며 정책전달체계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창조경제 성과를 단기간에 내고자 사업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기업을 우선 끌어들이거나 소극적·제한적 수준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 또한 명확한 유인구조가 미비한 상황임
- 중소기업 대상 '기업기술혁신 인식조사' 결과(15.8), 정부지원 경험 기업은 41.4%에 불과함. 미활용 사유는 정보·전문인력·자금 부족 때문이었으며, 창조경제센터 통한 기술혁신 효과에 65%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별 과학기술역량 진단 결과, 상위10% 지역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 비중이 50.3%로, 지역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지자체별 강점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별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약속

- 창조경제센터 폐지, 중기지원센터와 통폐합, [정부-광역/기초지자체-중소기업-대기업노조-중소기업노조-지역주민] 실질적 작동 지역경제 혁신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지원 담당 원스톱센터 설치운영
- 사업타당성 높은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도와 중소기업의 지적소유권이나 아이디어 융합·연계
-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력 강화
-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 6. R&D 부정비리 근절과 연구윤리 강화

### 진단

- 연구 품질과 생산성이 위협받을 정도로 연구자들의 연구진실성 준수 수준 낮음. 현행 기관 자체 연구진실성위는 실효성·투명성이 의심스러움
-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14)에 따르면 947건의 과제가 중도 해약됐고, 협약액 2,552억원 중 2,204억원의 손실을 보았음. 중단사유는 ① 선행연구분석 미비 ② 협약위반 ③ 과제 수행포기 ④ 수행지연 ⑤ 연구부정행위 등이었음. 5개 사유 모두 명백한 연구자 과실임
- 미래부는 R&D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며 홍보가 미비하고 접근성과 인지도가 대단히 낮은 상황임

### 약속

- 독립적으로 연구윤리문제를 조사·감독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제도와 보호 정책의 구체적 마련
- 연구비총액 강제 환수 및 5년 이상 R&D사업 지원 제한, 위법성 발견 시 추가 제재금 징수 등 R&D사업 처리규정 상 처벌규정 강화
- 정부·민간·대학 연구소 연구비 관리 자체 감사 및 자정적 관리체계 확립
- 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하고, 대학 산학협력단 및 출연기관 등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신고접수 간소화)
-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중도포기·부정비리 연구기관(연구자) 명단, 징계·처벌 내용 및 근거, 재발방지 방안 등 매년 국회와 미래부 보고

## 7. 4차 산업혁명 전담부서 및 정부위원회 설치

### 진단

-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의 발달은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지원 및 규제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함. 특히 정부의 포괄주의 규제 원칙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이어서 문제가 큼
- 미국 백악관 보고서 권고와 같이, AI기술 관련 공개훈련·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모니터링·현황 정기 보고, AI 관련 규제 개발, AI 전문인력 양성, 해외 국가와 협력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과 지원 방안이 필요함
- 미래부는 2026년까지 1만명 이상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효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정부와 민간의 협업체계가 부족함

### 약속

- 과학기술 전담 부처에 AI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산업계·시민사회·학계·노동계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신설. 위원회를 통해 규제 신설·폐지 관리, AI기술 활용 제품들의 위험요소를 명확히 평가 및 측정 규제 담당
-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이를 통해 기초과학·공학·수학 등 융합교육(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8. 연구개발 공제, 대기업은 절반, 중소기업은 두배

### 진단

- '14년 전체 R&D 세액공제 조세지출액은 전체 국세수입의 약 1.7%(3.4조원)에 이르며 절반(1.73조)이 매출 5천억 이상 대기업 공제혜택임. 5천억초과 대기업 실효세율은 17.1%, 1천억~5천억 중견기업은 17.7%로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0.6%p 더 내고 있음
- 정부는 법인세 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하지만, 연구개발세액공제 축소방안은 없이 실효세율 인상효과가 크지 않은 생산성향상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에 그친 반면, 되려 설비·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에 중소기업도 포함시켜, 중소기업 R&D 투자를 위축하고 있음
- 삼성전자의 최근 3년 R&D세액공제액은 약 2.8조원, 현대자동차의 최근 3년 R&D세액공제액은 3,564억원 이었음

### 약속

- 중견·대기업 연구인력개발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추가투자분 세액공제율 기존 40%에서 20%로 축소.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중견기업 5%, 대기업 3%에서 각각 3%, 1%로 축소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60%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 9.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열린 과학

### 진단

- ‘과학기술 국민의식 통계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1.4%가 광복 이후 이는 과학자가 없다고 답해 국민 과학기술 관심수준이 현저히 낮음. 이공계 출신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표면적으로 완화된 것 같지만 순수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열정은 여전히 낮음
- 다양한 직업군의 어른, 유아·청소년들이 과학을 놀이로 즐기면서, 가정·학교·직장에서 필요한 과학수요를 제안할 공간이 없음

### 약속

- 전국 시군구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 상근교사로 퇴직,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및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직업연계형 R&D수요 수렴,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교육과정 및 초중고 현장학습에 ‘우리동네 과학놀이터’ 프로그램 추가하여 과학 흥미 제고
- 광역시도 국립대학에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운영
  - 대학·지자체 공동지원 지역기반 과학연구교수 운영, 시민 삶과 직결된 과학기술이슈들에 대한 감시·평가, 과학지식과 정보 공개와 확산

---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

# 정보 통신



---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1 '보편요금제'로 통신비 대폭 절감
- 2 단말기 값 거품 제거와 제4이동통신 도입
- 3 인권·노동·안전·환경 중심의 ICT 통합체계 구축
- 4 빅데이터 시대 프라이버시권 강화
- 5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 6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 1. '보편요금제'로 통신비 대폭 절감

### 진단

- 이동통신 가입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162만 명(2017년 1월말 기준)으로 보편적 통신 수단이며, 스마트폰이 정보와 콘텐츠 활용 매체이자 재난 대처와 국민안전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과 달리 이동통신 서비스 수준과 가격은 통신사의 결정에 맡겨져 있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금 결정 근거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약속

-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사용 보장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 LTE 기준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2년에 한 번씩 '보편요금제'의 세부 내용을 '통신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
  - 주파수 경매대가 등을 개선해 요금 인하 혜택으로 연결
- 통신서비스 이용자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정부부처가 '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요금을 심의하고 관련 자료 공개

## 2. 단말기 값 거품 제거와 제4이동통신 도입

### 진단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2014~16년의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23% 증가하고 같은 기간 마케팅비용은 14% 감소한 반면 국민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단통법」이 제정됐지만 통신비, 이용자 선택권, 단말기 가격 및 지원금 투명성 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음
- 정부는 통신비 인하와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을 지원해 왔지만 산업 고도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대부분 영업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제4이동통신 출범 추진은 높은 진입장벽과 기존 이통사의 반발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약속

-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선택권 확대
  -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폐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공시제 실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선택약정할인 30%로 확대, 약정 위약금 상한제 도입
- 알뜰폰산업 지원 정책 방향을 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통신비 인하

### 3. 인권 · 노동 · 안전 · 환경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통합체계 구축

#### 진단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이하 'ICT')의 발전이 가져올 사회변화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등의 수사는 많지만 개인정보, 정보 격차, 일자리, 표현의 자유, 신종 범죄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슈들 및 새로운 사회 시스템에 관한 종합적 고찰과 대비는 미흡한 실정임
- 박근혜 정부의 ICT 정책은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진흥과 개인정보 · 노동권 · 안전 등의 규제 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는 민간의 수요와 창의성에 기반한 진흥을 이루기도 어렵고 삶의 질 훼손과 대규모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무제한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권 · 노동 · 안전 · 환경을 중심으로 규제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사회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약속

- 산업계 · 시민사회 · 학계 · 노동계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인권 · 노동 · 안전 · 환경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 정립
-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ICT 진흥정책 개선
- 녹색경제, 환경생태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4. 빅데이터 시대 프라이버시권 강화

### 진단

- 정보주체 동의 없는 비식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위치정보 보호규제 완화 추진 등 빅데이터 시대 대량감시(mass surveillance)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여 한계가 존재함
- 공인인증서 사용 등 정부가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만 충족하면, 홈플러스, 네이트, KB국민카드 사례 등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기업을 처벌하지 않으며 정보유출 피해자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음

### 약속

- 무분별한 개인정보 상업적 활용을 방지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지 및 정보주체 동의 없는 비식별 정보 활용 금지
-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처벌 등 대응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폭 강화

## 5. 보편적 지식 · 정보 접근권 보장

### 진단

-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에 관한 논문 등의 자료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있음
-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공공성이 높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공부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 정부의 지원은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세계 웹표준이 아니라 액티브엑스(Active X) 등 비표준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는 추가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용과정에서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약속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한 자료 · 논문 등을 전면적으로 무료 개방하는 오픈 액세스 제도화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및 의무 사용 비율 제도화
- 액티브엑스(Active X)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 6.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 진단

-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ICT 노동자들은 부당한 근로계약, 임금체불, 일상적 야근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도 미흡. ICT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실태 파악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문제가 드러났을 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임
- ICT 산업의 발전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과 ICT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음

### 약속

- 전국의 ICT 산업 밀집 지역에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 ICT 노동자들이 교류와 공론의 장으로서 센터 운영에 참여

---

# 정의로운 시대 전환

---



에너지 기후 | 생태환경 | 동물복지

문화예술 | 국방 | 외교통일

---

정의로운 시대 전환

# 에너지 기후



- 
- 1 2040년 원전 없는 탈핵 한국 실현
  - 2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추진
  - 3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로 확대
  - 4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 5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보호
  - 6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 7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 8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 1. 2040년 원전 없는 탈핵 한국 실현

### 진단

- 우리나라는 25기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음.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임. 고리 핵발전소 단지 30km 반경에 38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최악의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음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안전신화는 깨졌고, 중대 사고 비용 등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면서 세계는 급속하게 탈핵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 경주에서 5.8 규모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지대에 놓인 핵발전소의 위험성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약속

-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주로 에너지전환
-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 즉각 폐쇄
- 활성단층 지진위험지대 월성 2, 3, 4호기 조기폐로 계획 수립
-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중단,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1, 2호기 건설 백지화, 계획 중인 삼척, 영덕, 울진 핵발전소 신규계획 백지화

## 2.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추진

### 진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전체 전력소비량은 5위 수준이며, 전력 소비효율지표인 전력원단위는 OECD 34개국 중 31위에 머무
- 전력소비량 중 산업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석유·화학 등 1차 금속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전력다소비 원인은 다소비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약속

- 전기요금체계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 독일, 일본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전력수요관리 정책으로 1000MW 급 원전 15기 분 감축
- '기후정의세'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핵발전소 사고 위험 및 핵폐기물 위험성을 반영한 핵발전연료세를 부과하여 에너지세제 개편

### 3.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로 확대

#### 진단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OECD 최하위인 34위이며, OECD 34개국의 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평균 17.4%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함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OECD 34개국 중 33위이며, OECD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평균 32.8%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함

#### 약속

-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
-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 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업체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전환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녹색산업으로 지정하고 R&D투자, 설치지원, 조세감면 등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분권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 장거리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 4.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 진단

- 사용후핵연료는 최소 10만년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치명적인 고준위 핵폐기물이며,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이 결정되어야 고준위방폐장의 규모가 결정되는데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임
- 파이로프로세싱사업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핵연료를 만드는 기술연구로서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선진나라들이 실패한 사업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음. 재처리 과정에서 맹독성 방사성물질의 외부누출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함

### 약속

-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을 중단하고, 제2원자력연구원 추진계획 중단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방안은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결정

## 5.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보호

### 진단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고농도 방사능 누출이 수습되고 있지 못하며, 국내에 일본산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석탄재가 국내 시멘트로 사용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방사능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약속

- 후쿠시마 등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수산물 외에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 방사능 피폭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을 제정해 방사능 기준치를 국민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

## 6.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 진단

-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방사능과 전자파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많은 시설의 건설 및 폐지를 결정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립과정에 환경성과 국민참여가 보장되지 못함

### 약속

-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을 통해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 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 2040 탈핵목표년도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국제사회가 정립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규범과 원칙을 담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상향 개정함

## 7.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 진단

-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제 및 원자력안전행정 체계에 국민과 시민 사회, 특히 원전 및 원자력 관련시설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약속

-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격상하고, 원자력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수용성도 심의 · 의결 사항으로 확대
- 원전 및 원자력 관련시설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거버넌스 형태의 지역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관리 · 감독, 시민과 전문가 참여 보장

## 8.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 진단

-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7위 국가로서 책임 없는 낮은 수준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량 중 25.7%만이 국내 감축량이며 11.3%는 구체적인 방법 없는 탄소시장을 이용한 감축안으로 달성가능성이 불투명함
-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오염의 30% 이상의 배출원으로서 기후변화 영향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20기 신규건설을 강행하고 있음

### 약속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적인 책임과 역량에 맞게 절대량 감축으로 상향조정함. 2010년 배출량 대비 2030년 30%, 2050년 60~70% 감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건설 백지화로 2050년 탈석탄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합성과 통합성을 갖는 정부조직으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성, 기후변화영향조사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 기후변화 취약산업,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취약동식물 등에 대한 적응 지원 및 보호 강화

---

정의로운 시대 전환

# 생태 환경



- 
- 1 「지속가능한 발전법」 기본법제화 및 생태복지 「헌법」 개정
  - 2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 3 화학물질과 환경성 질환에 안전한 생태복지국가
  - 4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국가
  - 5 4대강 재자연화와 적폐청산
  - 6 물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 7 한강 하구와 새만금의 생태복지화
  - 8 공공수역 관리 예산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 1. 「지속가능한 발전법」 기본법제화 및 생태복지 「헌법」 개정

### 진단

- 현행 「헌법」은 환경생태위기가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은 시점에 만들어져, 개괄적인 형태로 환경권만 들어가 있음. 기후변화, 환경가치와 생태복지 개념의 확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반려동물의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조건을 반영한 「헌법」이 필요함
-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기본법인 「지속가능한발전법」이 「저탄소녹색성장법」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함. 이를 복원하고 집행권한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복원되어야 함.

### 약속

-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 「녹색성장기본법」 폐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기후에너지, 물, 생태, 대기 등의 환경 관련법 정비
- 집행권을 가지는 대통령직속으로 지속가능한 위원회 설치, 지자체단위의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설치
-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등 환경분야 재정개혁 추진

## 2.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 진단

- 생물다양성협약 목표(아이치목표 Aichi Target)는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15% 이상을 복원하는 등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이행하기로 한 목표임. 우리나라는 보호지역 육상 17%, 연안 1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함. 이를 위해 법정보호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강화, 재정확보를 위한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필요함
- 남한의 백두대간, 연안, DMZ, 도시 녹지축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연결하고, 남북한 환경협력기반을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생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기미집행공원을 개발하려는 사회적 압력은 열악한 대기환경과 도시생태를 취약하게 할 것임. 산악, 해양,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특혜를 보장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중단시켜야 함

### 약속

- 생물다양성협약 목표달성을 위한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 남북 환경협력 기반마련 및 생물다양성 협력 체계 구축
- 국립공원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원천 금지
-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 수립



### 3. 화학물질과 환경성 질환에 안전한 생태복지국가

#### 진단

-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하여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문제라며 피해구제를 방치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시킴
-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4만 4000여종에 대한 독성평가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미세먼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화학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약속

-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강화
- 어린이 등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
-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 국가 환경보건안전망,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 등

## 4.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국가

### 진단

- 대부분 미세먼지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공장과 자동차,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함. 화석연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주범이기도 함
-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울증·자살·치매까지 초래하는 ‘만병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음
- 중국 발 미세먼지에 의한 영향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음. 중국 발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함께 환경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약속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
-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전면 중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와 전기충전소 확충
- 호흡기 취약계층 활동공간, 야외활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 미세먼지 기준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및 예·경보체계 강화
-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차량 2부제 등) 및 위해성 관리강화

## 5. 4대강 재자연화와 적폐청산

### 진단

- 이수, 치수, 수질개선 기능 등 4대강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 현상과 썩어 들어가는 강바닥으로 인해 큰빛이끼벌레, 실지렁이, 붉은깔따구 유충 등 전혀 다른 생태계로 변모하였음
- 펄스형 방류 등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함을 정부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문을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시험적용하기 시작했음. 수문 상시개방에 따라 보의 기능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하천 바닥의 복원을 위해서는 보의 철거가 불가피함

### 약속

-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 4대강 책임자 처벌 및 적폐청산을 위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 6. 물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 진단

- 물관리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유역관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물 관리는 분산되어 있고,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물관리 권한은 대부분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나 규제에 따른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도시화의 진행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자연적인 물순환이 단절되어 지하수가 고갈되며, 도시침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약속

- 「물 기본법」 제정 및 집행권한이 있는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 신설
- 분산된 물순환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
- 빗물 이용, 빗물 관리, 빗물 침투 및 저류 및 물 재이용 기술 집중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순환이용계획 수립 의무화
- 상수도 민간위탁·민간투자 전면 금지
-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
- 상습가뭄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 저소득계층을 위한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값 면제, 수질검사비용 지자체 부담 등 도입

## 7.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복지화

### 진단

- 한강하구에는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 습지 등과 임진강 합수부의 성동습지 등 훼손되지 않은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가 넓게 존재함. 그러나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건설,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가능성이 높아짐
- 새만금 개발사업은 매립할 흙 등이 부족해 석탄화력발전의 슬러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매립했던 지역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함
- 새만금의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농업용지는 물론 새만금 종합 개발사업의 목표인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는 불가능함

### 약속

- 한강하구 습지보전지역 확대 및 임진강 하구 습지보전지역 지정
-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 및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 지정 추진
- 강화도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구간의 (가칭)‘한강하구 DMZ 생명평화 구역’화
- 새만금 석탄화력발전 슬러지 사용 및 환경부의 생태환경용지 사업 중단
- 새만금 해수유통 등 수질개선방안 수립 및 어민들 생존권 보장
-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민관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으로 전환

## 8. 공공수역 관리 예산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 진단

- 상수원이 되는 공공수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임. 장기적인 공공수역 관리를 통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녹조현상, 물고기 폐사 사고 등 원수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해야 함
- 2017년 환경부 물환경 정책국 예산 약 6,200억 중에서 1,300억원(20% 이상,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한 환경개선 특별 회계의 33%)이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예산임
-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96년도까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산업지원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기 시작함

### 약속

-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기업 부담 비율 확대
- 공공수역 수질개선 예산인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등 예산 확대
- 산업폐수의 직접방류와 간접방류의 수질관리 기준 일원화 및 측정항목 확대

---

정의로운 시대 전환

# 동물 복지



- 
- 1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 형성
  - 2 동물의료보험 도입, 반려놀이터 확대 등 반려동물 복지 강화
  - 3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 4 전시·실험·야생동물 권리 강화
  - 5 동물복지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

## 1.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 형성

### 진단

-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법적 위상과 역할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약해 규율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인당 육류소비량(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은 1990년 19.9kg에서 2013년 42.7kg으로 약 2배, 우유도 1990년 42.8kg에서 71.6kg으로 약 1.7배 증가함
- 2006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가축의 긴 그림자-환경문제와 대응책』에서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기구(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라젠드라 파차우리(Rajendra Pachauri) 전 의장도 기후변화에 대안으로 육류 소비를 줄일 것을 제시함

### 약속

-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 동물관련 법률에 동물 보호 및 복지적 가치 강화. 「동물보호법」을 「동물 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정책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한 달에 두 번 고기 없는 채식 식단 제공 및 학교 급식에 우유와 두유 선택권 부여



## 2. 동물의료보험 도입, 반려놀이터 확대 등 반려동물 복지 강화

### 진단

- 2015년 기준 전체가구의 22%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수명이 늘어나 질병치료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에선 대규모 여가 공간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서울수도 보라매공원에 설치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함
- 생명존중의식 함양, 생명존중과 동물윤리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약속

- 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고, 반려인들의 자발적 참여, 공공 관리가 보장되는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을 병행
- 동물복지주간 신설하고, 공원 및 공공기관 옥상에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시설 확대
-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인식장치의 의무화와 외장형 식별장치 폐지

### 3.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 진단

- 밀집사육, 인공시술, 화학약품을 특징으로 하는 공장식 축산으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와 구제역 등 고병원성 수인성 질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항생제 투여로 인간건강도 위협받고 있음
- 유럽연합은 산란계 일반케이저 사육금지(2012년) 및 임신 중 돼지 스톨 사육금지(2013년) 등 동물복지 법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고병원성 AI가 주기적으로 발생함에도 수백만 마리에서 1천만 마리를 대량으로 살처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음. 공장식 축산 및 밀집된 농가, 부실한 방역시스템 등으로 인해서 대량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음

#### 약속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를 위한 10개년 계획수립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도입 및 집단사육동물 사육방식전환(유전자 다양화)
- 농장 및 전통시장 등의 불법 도축 금지
- AI 원인규명 및 대응방향 다양화, 지자체 방역 전문인력 확충

## 4. 전시 · 실험 · 야생동물 권리 강화

### 진단

- 「동물원 및 수족관 법」에 중앙정부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농약,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와 질환연구는 국민건강증진과 건강사회 구현에 필수적임. 연구과정에 동물시험을 대체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성 평가와 질환연구에 있어 최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백두대간,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물서식 공간의 축소 · 단절로,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로드킬(Road Kill)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서식지보존지역 및 관련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함

### 약속

- 동물원, 수족관 사육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법」 전면개정
-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
- 동물시험 현황 파악 및 동물대체 과학기술 공유시스템 구축
- 3R(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반영한 최신 시험법 채택 및 동물 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처 보존지역과 인력 · 예산 확대 및 야생 멸종 위기종 상업적 이용 금지 등 동물학대 제품 생산 · 유통 · 판매 제한

## 5. 동물복지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

### 진단

- 농림축산식품부내에서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는 방역 총괄과에서 담당해 그 위상과 역할이 매우 미미하며 행정공백이 발생함
- 위기에 처한 동물 발견 시 지자체별로 담당 부서가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도 어려운 실정임
- 동물원 및 수족관 법에 중앙정부 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센터 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6.9%에 불과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곤란함

### 약속

- 육상·해양·반려동물 등을 통합관리하는 동물보호국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과 설치
- 국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동물복지주간 신설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 신설 및 중앙정부에 동물원 등 관리 권한 부여
- 동물관련 통계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지원방안 마련
-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

정의로운 시대 전환

# 문화 예술



- 
- 1 「블랙리스트 방지법」 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립
  - 2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 3 문화예술 정책·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 4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 5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 6 예술지원 및 예술인 육성 정책의 전환

## 1. 「블랙리스트 방지법」과 문화예술의 가치 확립

### 진단

-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가(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여 「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였음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과문 발표 정도로 셀프 사면을 하고 85억원의 돈을 풀어 예술가들을 회유하려고 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을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문화예술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임을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약속

- 블랙리스트 관련 부역자 엄중 처벌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법적 처벌과 함께 징계를 통한 인적 청산
- 「블랙리스트 방지법」 입법과 문화예술 관련법 정비
  - 지원사업의 공정성 강화
  - 공무원의 위법 행위 예방·처벌 강화
- 방송사 일정 비율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2.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과 복지확대

### 진단

- 문화예술인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에서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와 고용보험료 지원 등은 배제되었음
- 공공부분 문화예술인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며, 고용형태별로 임금 격차가 심함
- 현재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임

### 약속

-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세분화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확대. 특히 공연과 방송출연자 개런티 등급 간의 격차 완화
- 예술인복지법에 ‘근로자 의제’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기본권 보장하고 산재보험 지원 확대와 고용보험 도입
- 방송, 출판 등 문화산업분야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
- 예술인 복지예산 대폭 증액 등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생활위기 예술인 긴급지원
  - 예술인 인정 범위를 문화예술 교육 분야까지 확대
-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 OECD 평균 수준으로 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고용 확대

### 3. 문화예술 정책 · 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 진단

-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 주도의 중앙 중심적 구조임
- 현재 시행중인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 문화 · 체육 · 관광 재정은 국가재정의 6.6%를 차지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분야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함
- 문화산업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은 행정기관의 심의와 검열,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약속

-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문화예술 지방분권화
  - 중앙 및 지역에 민간 주도 장르별 위원회 구성
- 정부 · 지자체 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문화재정 확충
-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 문화예술의 다양성 보장 과 지속가능한 문화 산업 지원
-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 4.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 진단

- 문화예술교육은 감수성, 창의력,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정량적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간의 역할 구분이 불분명해 기관들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 정책은 학교 예술강사들에게 반복적인 단기계약과 10년간 강사수당 동결을 방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부터 예술강사의 최대 수업시수를 하향조정해 추가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 약속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교육 개편
  - 문화예술교육 확대.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교육과정에 문화예술 강사 의무배치
  - 국가표준등록금으로 예체능계열 대학생의 등록금 등 학비 부담 완화
- 동네에서 누리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적 문화생태계 구축
  - 지역별 예술단체와 연고 예술인 제도 확립으로 생활 속 예술 실현
  - 읍면동 단위의 주민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예술강사) 정규직화

## 5.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 진단

- 국민들의 보편적인 문화적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소기준’ 설정에 대한 정부·자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자체들은 지역문화 진흥계획에 관한 자율적인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음
- 2005년부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공공문화시설이 민간투자로 세워지면서 보편적인 접근권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음. 또한 유희공간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심각한 지역도 있음
-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적자누적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약속

- 문화기본선 도입으로 문화격차 해소
  -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
- 지역문화정책과 생활예술 활성화와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전문성 강화
- 지역내 유희공간을 주민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 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
  - 지역 내 대중소 공연장의 주말 상시 공연 추진
  -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미술 전시 공간 확보
  -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순회공연, 전시회, 시사회 정례화

## 6. 예술지원 및 예술인 육성 정책의 전환

### 진단

- 현재 우리나라 예술 지원은 일반 사업과 같이 공모 중심이어서 문화 예술의 특성이 맞는 지원정책으로의 기조 변화가 필요
- 우리나라는 대학이 예술인 양성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장과 연계가 부족해 졸업 후 진출 기회 거의 없음
-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이 예술인 양성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장과 연계가 부족하고 실제로 졸업 후 진출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약속

- 기성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찾아서 지원’
- 투자 유치나 홍보 마케팅 지원에서부터, 외국 작품 저작권이나 인적 정보력 지원, 관람료 대부분 지원까지 ‘맞춰서 지원’
- 신진예술인 대상의 소액 다건이나 보편 지원 등은 ‘무조건 지원’
- 사전지원과 사후지원,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다액소건(선택과 집중)과 소액다건, 단년도 지원과 다년간 지원, 일시 지원과 지속 지원 등 유연하면서도 복합적인 면을 고려한 지원
- 권역별로 국립예술단체 확대, 광역단위별 공립예술단체 확대 운영
- 전문 예술인 양성지원을 위한 예술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 졸업 후 상당기간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예술 활동지수 개발하고, 예술 영재교육도 정비함

---

정의로운 시대 전환

**국방**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 1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로 군사주권 토대 확립
- 2 기무사 해체 및 유사 기능 수행 부대 통폐합
- 3 한국형 모병제 도입으로 군의 체질 전환
- 4 핵심기술개발청 신설로 첨단 무기체계개발
- 5 문민 국방장관 임명으로 '안보 민주화' 달성
- 6 병 봉급·예비군수당 현실화로 '애국페이' 근절
- 7 군 유리천장 깨트리기 위한 여군 디딤돌 마련
- 8 군 피해자 전담할 '치유지원 전담센터' 설립
- 9 생애주기별 자기 주도형 군복무 모델 도입
- 10 '병사위원회' 신설로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

## 1.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로 군사주권 토대 확립

### 진단

- 미국의 동맹국 중 전시작전권 미보유국은 한국이 유일함
  - 미일동맹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경우, 전시작전권은 주권국이 행사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로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및 연합방위 주도능력 확보가 제한됨
- 한국군의 미군에 대한 종속 심화로 국방개혁 효율적 추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전시작전권은 군사주권 확보의 문제임
  - 군사주권은 한 국가의 방위와 전쟁억지를 위한 국방안보정책과 전략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주성의 개념으로 한국군의 현재 능력 고려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함

### 약속

- ‘2025년 목표군’ 건설에 맞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로 견고한 주권 토대 확립
- 전시작전권 환수 시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정보·감시·정찰 자산, 공군력 등)은 미군이 제공하는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통해 보완
-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함으로써 남북 및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협력적 안보질서 구축
-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 강화로 한국군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

## 2. 기무사 해체 및 유사 기능 수행 부대 통폐합

### 진단

- 기무사령부가 군 내부 권력기관으로 변질 돼 안보 민주화가 훼손됨
  - 군의 정치 개입 및 군 간부 사찰 자행. 장병 대상 보안지침 남발 및 기무부대원들의 권력남용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함
- 합동·국직부대 및 각 군 본부에 비효율적 부대 범람, 유사·공통 기능 수행 부대 중복 등으로 부대구조의 비대화가 초래됨
- 수송사·지휘통신사령부의 경우, 각 군 참모부의 기능과 중첩돼 우수한 고급 자원 및 예산 등의 낭비가 초래 됨
- 육군 미사일사령부·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의 경우, 임무의 유사성과 기능 중복으로 효율적인 작전수행이 저해됨

### 약속

- 기무사령부 해체와 방첩부대로의 재편을 통한 군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 사전 차단
  - 방첩기능을 제외한 기무사령부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방첩부대는 합참 정보본부 산하로 재편
- 비효율적 부대 해체 및 유사·공통 기능 수행부대 통폐합
  -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인사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지휘통신사령부 등 일부 부대 해체
  - 육군 미사일사령부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등 유사 기능 수행부대 통합 추진

### 3. 한국형 모병제 도입으로 군의 체질 전환

#### 진단

-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로 현역 가용자원이 대폭 감소함
-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 병력 감축률은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
- 무분별한 현역징집으로 전투할 수 없는 관리형 군대만 육성되고 있음
- 청년의 사회 진출 평균 약 8년 소요로 청년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

#### 약속

- ‘2025년 목표군’ 일환의 ‘한국형 모병제(의사 모병제)’ 도입 통한 군 체질 개선
  -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간부 20만, 병사 20만) 수준으로 감축
  - 징병제 기본틀을 유지하되, 전문병사와 일반병사로 구분해 모집
  - 전문병사(기술·전문분야): 10만 명, 의무복무 4년 / 일반병사(교육행정 등 일반분야) 10만 명, 의무복무 6개월
  - 전문병사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 및 간부지원 자격 선발 기회 부여
- 병력 감축 고려, 군의 과학화 및 무기체계의 첨단기술화 병행 추진
- 병력 감축에 따른 안보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
  - 현 300만 명 수준의 예비군 100만 명으로 감축
- 노후 무기체계 도태 및 첨단장비 중심으로 전력구조 재정비

## 4. 핵심기술개발청 신설로 첨단 무기체계개발

### 진단

- 한국은 무기체계 완제품 개발에만 집중해온 탓에 핵심 국방과학기술 개발에 소홀함
-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연구개발 정책 추진으로 실패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불가능함
- 미래 전장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술 확보 패러다임이 필요함
- 과도한 국방과학연구소 편중으로 민간 기술 스핀 온(Spin-On 민간기술의 군사기술 적용)이 어렵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연계도 부족함

### 약속

- 도전적·선도적 국방과학기술 연구 기관, ‘핵심기술개발청’ 신설
  - 국방과학기술을 민·관·군 합동으로 연구하는 연구 기관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
- 4차 산업혁명 국방분야 적용 주도하는 전략연구집단 ‘핵심기술개발청’
  - 미래 전장운영 개념 혁신·민간 우수기술 국방분야 적용·선도형 국방과학 원천기술 개발 등에 집중, 고가치 방위산업 기술 확보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형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될 ‘핵심기술개발청’
  - 기존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이나 ADD의 관료적 사업관리 방식 탈피 자유로운 환경에서 동시대 최고 수준 과학기술 개발과제 수행



## 5. 문민 국방장관 임명으로 ‘안보 민주화’ 달성

### 진단

- 예비역 장성을 국방부장관으로 임용하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방부가 시민을 대리하여 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락함
- 국방부와 각 군을 총괄하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고 각종 훈령·지침 등에 역할·기능·업무 등이 분산됨에 따라 국방 관리·운영의 공공성이 실종되고 인치에 의한 패권주의를 초래함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권마다 수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 낭비·전력 공백 등이 발생함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가 확정됐지만 군단급 보통군사법원 30여개는 존속돼 지휘관이 임명한 군 장교가 재판장이 되어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는 여전히 침해받는 현실임

### 약속

- 전역 후 10년 이상 지난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 한국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규정하는 포괄 법령인 「국방기본법」 제정
- 국방개혁 추진의 객관성 및 중립성 보장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 전담기구 편성
- 모든 군사법원을 평시에는 폐지하고 전시에만 운영하도록 제도 전환

## 6. 병 봉급 · 예비군수당 현실화로 '애국페이' 근절

### 진단

- 국방부는 창군 이래 징집 병사들에게 공짜나 다름없는 '애국페이'를 지급하고 있음
- 2017년 병장기준 병사봉급은 216,00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시급 1,033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의 16% 수준에 불과함
- 국방부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청년들에게 하루 13,000원의 실비(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보상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1인당 1만원 정도의 돈을 더 써가면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고 있음

### 약속

- '청년병사 최저임금제' 실시
  -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하여 애국페이 근절
  - 병사 월급을 법정 최저임금의 40%(2017년 기준 54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 유급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 최저임금 지급

## 7. 군 유리천장 깨트리기 위한 여군 디딤돌 마련

### 진단

-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및 우수인력으로서의 여군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여군들은 군 내부에서 보직 제한, 능력에 대한 저평가 및 성폭력 등의 차별을 당하는 실정임
- 국방부 인사관리 훈령 및 각 군 규정에 세부적인 제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여군의 다양한 보직 진출 및 경력 관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약속

- 여군 보직 및 경력 관리의 유리천장 제거
  - 각기 다른 훈령 및 규정의 전투병과 여군 보직 허용 범위를 통일
  - 역대 10명 여성 장군 모두 준장으로 예편, 여군 장군도 임기 제한 없이 지속적인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진급관리 제도 정비
- 전투체력평가제 도입으로 여군 전투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여군에게도 전투병과 지휘관 기회 제공
- 여군 인력 2030년 까지 2만 명 수준으로 목표 설정하여 활용 확대
- 군 내 성폭력 발생 시 원 아웃(One-Out) 제도 의무적 시행, 계급 막론한 확실하고 엄중한 처벌 실시
- 성범죄 신고 접수 시 헌병대 초동수사 강화하여 은폐 및 축소 예방
- 군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마련
  - 민간인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하여 성폭력 상담창구 활성화
  - 군인권보호관 설치하고 군 내 성폭력 전담인원 배치

## 8. 군 피해자 전담할 '치유지원 전담센터' 설립

### 진단

- 2015년 기준 군복무 부적응 또는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한 병사가 약 9,500여 명 수준에 달함
  - 4,461명이 복무부적응자, 자살우려자로 분류돼 그린캠프·힐링캠프 입소, 3,570명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전역, 1,587명 의병전역, 57명이 자살함
- 피해를 입은 병사의 수는 9,500여 명이지만 부모와 그 형제자매 등을 합하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인원은 30,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됨
  - 상당수의 '군 피해자'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

### 약속

- 국가가 군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군 피해자보호법」 제정
- 「군 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군피해 치유지원센터' 설립
  - 민간위탁 법인으로 설립하되 설치 시 운영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
  - 군 피해 상황 발생 시 국방부 소속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포함된 초기대응팀이 가동해 피해수습과 복구 전 과정 전담

## 9. 생애주기별 자기 주도형 군복무 모델 도입

### 진단

- 병사들의 군복무기간은 단순히 21개월이 아니라 입대 전 대기기간과 전역 후 취업, 학업까지 포함한 '총 복무기간'으로 보면 최대 76개월에 육박하고 있음
- 의무복무자들이 입대시기와 원하는 부대를 주도적으로 선택하는데 수많은 제한사항으로 인해 군복무와 취업, 학업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군복무가 취업, 학업에 방해요소가 된다는 인식이 팽배함

### 약속

- 병역판정검사 연령 인하(현행 만 19세 → 만 18세)로 고등학교 재학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졸자의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 실시로 청년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부대에 입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생애주기 맞춤형기병제'를 실시하여 군에서 기술과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병사들이 '군복무-학업, 취업'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의무복무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난 후 자신의 총 복무기간을 정확히 산출하여 자기주도하에 군복무-학업, 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 마련

## 10. '병사위원회' 신설로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

### 진단

- 우리 군은 작전 및 공식 업무와 무관한 병영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 병사들이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는 상태임
- 공군에서는 '병사 위원회'와 '대표병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언어 폭력 문제가 줄어드는 등의 병영문화 개선 효과가 있었음
- 병사들의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의 업무와 생활이 철저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약속

- 중대 단위로 병사위원회 신설, 병사들의 발언권과 자율권 보장
  - 병사위원회 위원은 임기제로 추천 및 지원으로 선발하며, 선출된 인원은 일부 업무 면제 및 활동 보장
- 병사위원회의 주요 건의사항은 부대 지휘관, 주임원사 등과 논의해 최종 결정하도록 제도화
  - 병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군의 작전과 공식 업무와 무관한 병영생활로 한정
- 병사들의 자율적인 병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병사 출퇴근제도 실시

---

정의로운 시대 전환

# 외교 통일



“ 평화 · 공동번영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

- 1 적극적 한반도 비핵 · 평화 프로세스 추진
- 2 신(新)헬싱키 프로세스로 지역 안보협력기구 창설
- 3 미 · 일 · 중 · 러 주변 4개국과 조화 외교
- 4 전시작전권 환수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 5 과거사 반성을 기초로 '신(新)한일관계' 정립
- 6 제3세계 발전과 세계평화 기여하는 적극적 외교
- 7 재외동포청 설립 등 재외국민 보호 대폭 강화
- 8 개성공단 재개와 5.24조치 해제로 남북협력 강화
- 9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유라시아 대륙경제 개막
- 10 특사파견으로 대화 복원, 남북 당국회담 정례화

## 1. 적극적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

### 진단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하고 있음
  - 2016년 4, 5차 핵실험 강행, 2017년 봄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음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고체연료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함
- 정부는 실효성 부재의 즉자적 정책, 현실성 부재의 구호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음
  - 북 핵실험 직후 개성공단폐쇄 등 자해적이고 즉자적 정책을 실시함
  - 사드 배치 강행 추진, 한미일 3각동맹화 추진으로 중국의 반발을 삼
  - 북 핵 문제 악화 방지를 위한 실효성 부재의 정책만 계속 강행함

### 약속

- 대화 재개를 위해 (가칭)‘신 2.29합의’ 등 추진
- 악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 과정 재개를 1차 목표로 함
-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 남북정상회담 통해 조기 포괄적 타결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합의 형성
- 남북미중 정상외 한반도 평화선언 혹은 종전선언
-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 2. 신(新)헬싱키 프로세스로 지역 안보협력기구 창설

### 진단

-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인 한반도의 전쟁과 정전체제, 그리고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비핵화 등 전통적 안보문제와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약속

- 동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지역 안보협력 상설기구 창설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안보협력기구 발전을 닮은 6자회담 → 지역 안보협력 상설기구 창설 추진
  - ‘동북아 3+3 비핵지대화’ 추진.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과 이 지역 주둔 미군의 군비 동결과 군축 추진
  - 남중국해 등 해양영토분쟁의 합리적 해결 추진
  - 핵발전소 안전, 외환위기 예방, 황사·미세먼지와 전염병, 국제적 조직범죄 등에 대한 공동 대처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강화
-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외교·국방·경제 장관회의 성사와 정례화
  - 현재 서울에 있는 한·중·일 사무국 강화
  - 북한, 몽골, 러시아 등의 확대 참여 추진

### 3. 미·일·중·러 주변 4개국과 조화 외교

#### 진단

- 미·중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과 갈등의 복합적 상황.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갈등 증폭되면서도 한반도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지 않도록, 또 한반도 문제로 양국 관계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함
- 박근혜 정부는 북의 4,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가속화하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동참 요구, 사드 배치 강행 등으로 압박에 나서며 해양 대 대륙세력 대결을 오히려 부추김
- 역대 정부의 기계적·소극적 균형외교와 동맹에의 편승은 갈등을 일으키며 ‘동아시아딜레마’의 한계에 봉착함. 미·중·일·러가 포함된 지역 정책이 구상에만 그치고 현실은 반대로 치달는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전개하지 않기 때문임

#### 약속

- 미·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 사이 적극적 평화외교 전개
  - 남북한 및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조기 개최 등 다자외교 활성화
- 지경학적 공동이익 추구를 제창·선도하는 조화외교 전개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중·일·러가 에워싼 동북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렛대 강화

## 4. 전시작전권 환수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 진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환수하겠다고 하였으나, 핵 문제 악화에 대한 완전한 대책 수립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 때 한 차례 연기되었던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빨라야 2020년대 중반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켜버림
-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SOFA)로 인해 2015년 불거진 탄저균 반입 사태뿐만 아니라,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미선이·효순이 사건’ 등 미군에 의한 피해와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함. 수평적인 국가관계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인 한미관계 구축에도 지장을 초래함

### 약속

- 전시작전권의 환수로 안보주권 실현, 국제사회 중견국가로서 위신 회복
-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전면개정
  - 탄저균 반입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자의 반입, 반출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위험물질에 대해 사전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
  - 부당하고 불평등한 모든 규정(적용대상, 형사재판권, 피의자 특혜, 환경오염 등)의 전면개정 추진

## 5. 과거사 반성을 기초로 '신(新)한일관계' 정립

### 진단

- 2015년 12월 28일 구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국민 다수가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갑자기 2015년 11월 2일 정상회담을 갖고 12.28 합의에 이룸
- '법적 보상은 끝났다'는 일본 측의 자세는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에서 비롯됨

### 약속

-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위안부 등의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 '신(新)한일협정'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1910년 한일병탄조약이 불법·원천무효라는 것을 일본정부가 인정하거나 양국 정부가 공동선언
-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 (가칭)'신한일관계 정립 선언'을 통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평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기여 등을 천명
-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미일 3각 동맹화 반대, 대책 수립
- 일본 평화헌법 수호와 한국 헌법의 평화국가 지향 조항의 구현을 위한 양국 국회와 정당, 시민단체 등간의 다차원적 연대 강화

## 6. 제3세계 발전과 세계평화 기여하는 적극적 외교

### 진단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를 자부하면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의 변모를 자랑하고, 파병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지구촌 남북문제, 세계적 차원의 비핵화와 평화군축 문제에서는 개도국 시절 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예산이 국제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 기준이 오도되어 있음

### 약속

-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 적극 전개
  - 2015년 9월 25일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발전에 대한 대안적 접근에 입각한 지원 정책 추진
  - 이권 중심 ODA 근절, 비구속성 원조 명문화 등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
-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평화군축에 기여하는 평화주의 외교 전개
  - 분쟁지역 파병은 평화유지활동으로 제한.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평화유지활동법」 등의 위헌적인 요소 개정
  - 중견평화국가들과 함께 세계적 핵군축과 핵무기 폐기, 군비경쟁 중단과 군축을 위한 외교활동 적극 전개

## 7. 재외동포청 설립 등 재외국민 보호 대폭 강화

### 진단

- 전 세계에 720만이 넘는 재외동포가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재외동포청 설립 법제화가 관료적 이해에 부딪혀 지체되고 있음
- 재외국민 보호는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부실함

### 약속

- 재외동포청 등 재외동포 정책 총괄 정부 기구의 조속한 설립 추진
  - 재외동포청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재외동포들의 본국에 대한 귀속감과 편리함을 제고하고 재외동포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
- 재외국민 보호의 획기적 강화
  -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 등이 연루된 사건·사고 발생 시 누구나 현지법에 정통한 변호사 등의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가 지원 경비 등의 획기적 증대
  - 이 사안을 포함,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적극적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

## 8. 개성공단 재개와 5.24조치 해제로 남북협력 강화

### 진단

-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명분도 합당치 않고 효과도 없는 자해적 조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입주 기업과 종사자 등 우리 국민이 도리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개성공단으로 인한 안보적 이익, 통일기반 구축 등 모두 훼손됨
-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해버림. 동 조치로 인해 북한보다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큼
- 2015년 10월 우여곡절 끝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으나, 일회성 행사로 그침.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한 차례도 가족을 보지 못한 6만여 명이 모두 상봉하려면 60여 차례의 상봉이 필요함

### 약속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남북 당국회담을 통한 공단 재가동-안정화 추진
- 특별법 제정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이를 위해 「정부 조치에 의한 남북 경협 기업과 종사자들의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상설화
- 북한 식량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산림녹화 지원 등 협력사업 재개
-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북한인권 문제 해결과 분단과 대결체제에 따른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 9.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유라시아 대륙경제 개막

### 진단

- 남북 경협 활성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의 효과는 ① 잠재성장률 1% 이상 증가,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 5% 성장 가능, ② 북한경제 역시 발전해 경제적 격차에 따른 부작용 예방, 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주변국과의 평화 환경 조성에 기여해 국방예산 절감, ④ 남북 정권, 인민들의 상호 적대감 해소와 이해 증진 등임
- 남북 철도 연결과 시베리아 철도 및 중국 철도와의 연계, 남북 고속도로 연결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 남·북·러 가스관 건설이 필요함

### 약속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남북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 방지
-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 심화
  - 개성공단 재개 → 개성공단 사업의 2, 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의 경협 재개 → 철도와 도로 연결, 북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제3 개성공단의 건설
-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가교 역할 수행.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
-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중국과 국제사회의 협력 유도. 또한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충,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민간의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 10. 특사파견으로 대화 복원, 남북 당국회담 정례화

### 진단

-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대박’ 등 대통령과 정권이 주도하는 각종 통일담론이 넘쳐흘렀으나 현실의 남북관계는 파탄 상황임
-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은 환상이며, 그 결과는 대박이 아닌 쪽박임. 흡수통일이라고 하지만 독일 통일은 동의에 기반을 둔 통일이었음
- 과거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정상회담 등이 1회성 행사에 그치는 한계. 정례화하고, 장치 상설기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함
- 남북관계가 단지 중앙정부 당국에 일임되지 않고 정치권, 시민, 각급 자치단체 등 교류협력 주체의 다원화를 보장하고, 교류협력 내용의 풍부화가 필요함

### 약속

- 대화 복원 및 정례화를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 재개
  - 1단계 : 특사 파견 돌파구 마련, 민간교류협력 허용, 당국회담 재개
  - 2단계 : 정상회담 조속 개최,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 민간 및 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 보장(「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3단계 : 상주대표부 설치 / 정상회의-장관급회의-부문별 실무자회의 등 각급 회의의 정례화 / 민간 및 자치단체 교류의 전면 자율화
  - 남북연합 이후의 상황은 미리 예단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상호 인식 등 여건에 상응해 통일방안에 대한 남남, 남북 합의 형성

---

#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

지방분권자치 | 지역균형발전

지역별 공약 | 행정조직

---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 지방분권 자치



“과감한 분권으로 지방자치 활성화”

- 1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
- 2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 3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 4 사무체계 개선 및 과감한 사무이양
- 5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6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 7 참여형 주민자치 활성화
- 8 개헌 등 지방분권 강화

## 1.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

### 진단

-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대 2.5로 국세의 비중이 높음. 현재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부가가치세의 11%로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전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되고 있음

### 약속

-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20%로 확대
-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5%포인트 인상하여 24.24%로 확대
-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 지자체 길들이기, 짬짜미 예산 특별교부세 폐지 및 재난안전교부세 증액
- 주요 기초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포괄보조금 도입
- 지방세 비과세·감면시 재원보전대책 마련 및 사전협의 의무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협의체로 위상을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 정책과 법령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2.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 진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부단체장을 몇 명 둘지, 실·국을 몇 개 둘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이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경우 국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또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약속

-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지자체 행정기구·정원은 조례로 규율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실효성 제고

### 3.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 진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빌미로 정부가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자치권 제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이를 제어할 권한이 없음
- 지자체 감사기구는 집행부 소속으로 독립성, 전문성이 떨어짐
-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원보다는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있음. 지방의원 지원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함

#### 약속

- 지자체 사업 중 자체사업비가 1백억원(광역의 3백억원) 이상 소요될 경우 주민공청회 개최와 사업승인 주민투표 실시 의무화
- 1억원 이상 사업 사전·사후 공개 의무화와 주민참여예산 모범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독립적 감사기구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실현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기구 설치 및 공동보좌관계 도입

## 4. 사무체계 개선 및 과감한 사무이양

### 진단

- 역대 정권별 사무이양 완료 실적을 보면 김대중 정부 약 860여 건, 노무현 정부 약 980여 건, 이명박 정부 약 530여 건으로 노무현 정부까지 사무이양 노력이 가속화 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잠깐 주춤했음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무이양은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정부의 사무이양 작업은 중단되었음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김대중 정부 이후 7대 3 구조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감독 하에서 국가 사무를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저해하고 있음
- 사무이양시 재정과 인력이 함께 이양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 늘어나게 됨

### 약속

-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법정수임사무 도입 : 국가의 관여범위와 수단을 명확히 하고 조례제정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자원·인력 동반한 사무이양 추진

## 5.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진단

- 현행 국가경찰은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는 민주성이 취약해 시민이 아니라 국가를 중심으로 경찰행정이 이뤄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기 쉬운 문제를 갖고 있음
- 지방행정은 물론이고 주민과의 협력이 어렵고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경직성이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 창설 당시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역대 정권이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선호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번번이 도입이 좌절되어왔음

### 약속

-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교통과 방범 등 민생에 밀접한 분야부터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점차 자치경찰의 기능 확대
-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민주적 구성과 운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확보



## 6.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 진단

- 광역의회 선거는 소선거구 단수다수대표제로 사표의 비중이 높고 비례성이 떨어짐
-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선거구당 2~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2인선거구가 다수여서 거대정당의 싹쓸이 또는 나눠먹기로 중소정당의 의회진입이 어려움
-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광역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의 10%, 기초의 경우 기초의원 정수의 10%에 불과해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기 어렵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로 단 한 표만 많이 얻으면 당선되어 유권자들은 차선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 약속

- 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 확보
-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의 30% 이상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7. 참여형 주민자치 활성화

### 진단

-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것임
-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직접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청구요건이 엄격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주민중심의 생활·근린자치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이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를 바 없이 권한이 약하고 대표성이 취약한 문제가 있음

### 약속

-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기준, 주민투표 청구요건, 주민감사 청구요건, 주민소환 발의요건 완화
-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참여 관련 표준화된 메뉴얼 제공, 통합적 참여 관리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지수 개발, 주민참여 평가단 구성, 주민참여 유도 예산확보 및 주민참여 인터넷 창구 구축, 주민참여 인센티브 도입
- 읍·면·동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및 의사결정기구화

## 8. 개헌 등 지방분권 강화

### 진단

- 현행 「헌법」은 제8장(지방자치)의 제117조와 제118조 등 단 2개 조항을 통해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제117조①)할 수 있어 자치입법권을 제약 받고 있음
- 또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제도가 매우 제한적임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헌법」에 이와 관련한 근거 조항은 없음

### 약속

- 자치입법권 보장 : 국가 법률과 자치법률 명시
- 자치조직권 보장 :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자치조직 자치법률로 규율
- 자치재정권 보장 : 과세자주권 확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격차 완화 의무 명시
- 지방정부·의회 협의체에 법률안 제출권 부여

---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 지역균형 발전



- 
-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국가균형발전 정책 심의 의결
  - 2 생활권역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 3 중앙-지방 협력으로 지역특화 미래산업 육성
  - 4 풀뿌리 사회적 경제를 GDP의 10%에 이룰수 있도록 육성
  - 5 시도별 도민은행 설립 및 지역금융 활성화
  - 6 공공의료복지 허브화로 서울-지방 의료격차 해소
  - 7 지역간 보육과 교육 격차 해소

## 1.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국가균형발전 정책 심의 의결

### 진단

- 복지사업의 시행과 예산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정책·사업이 정부 내 분산되어 정책의 통합 및 조정  
에 실패함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로 지방재정의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음

### 약속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지방 4대협의체 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립
  - 중앙 지방 간 역할분담,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등 협의
  - 지방균형발전인زي예산서 편성, 지방균형발전 사업성과 평가.
-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 지방분권 과제 및 예산 심의 의결
-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40로,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4.24% 수준으로 변경
-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보조율을 설정하고 지역 협력사업에 포괄교부세 지원

## 2. 생활권역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 진단

- 지방의 생활편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생활인프라 확충이 어려움

### 약속

- 56개 생활권역 별 거점병원,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공동물류센터, 문화센터, 장례예식장, 폐기물처리장 등 설치 운영
- 지역(지방)간 교통 활성화와 함께, 생활권역 맞춤형 버스노선체계 수립, 저상버스 보급율 100%로 확대
- 광역상수도 보급체계 구축, 지방 상수도 보급률 80% 달성
- 중소도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
-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 농어촌 지방도에 보행로를 확보하여 보행안전을 보장하고 보행자 사고 예방

### 3. 중앙-지방 협력으로 지역특화 미래산업 육성

#### 진단

-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등 정부의 분산형 균형발전정책과 지방정부의 유사한 무분별한 특구지정으로 선택과 집중에 실패함
-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사업으로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 같은 메가이벤트나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토건사업에 치중함
- 2015년 창조경제 예산은 총 8.3조 원에 달하나, 창조경제센터 등의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차별성 없이 중복지원되고 있음

#### 약속

-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과 장기투자 로드맵 마련
- 친환경스마트카, 재생에너지 등 지역별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 광역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설립으로 기술혁신 지원

## 4. 풀뿌리 사회적 경제를 GDP의 10%에 이룰수 있도록 육성

### 진단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양극화 해소, 공동체 복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푸는 해법임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00만명이나 저임금 비중이 70%를 차지함

### 약속

- 풀뿌리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하고 목표 달성을 관장
- 지자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 지원
- 정부 부처 간 통합적 ·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원> 설치
- 사회적 경제조직과 사회서비스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굴 및 지원



## 5. 시도별 도민은행 설립 및 지역금융 활성화

### 진단

-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불균형 저해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전북에만 지역은행이 있으며, 제주, 강원,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경북, 울산, 경기, 인천에는 없음

### 약속

- 「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을 제정하고 농협, 우체국, 금융공기업 등에서 우선 시행
- 현재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부터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 추진
- 광역시도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6. 공공의료복지 허브화로 서울-지방 의료격차 해소

### 진단

- 대도시와 지역 간 의료격차 발생. 20~30%의 지방 환자들이 지방의 3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수도권 병원에 집중되는 등 대도시 병원 쏠림 현상 심각. 또한 보건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은 최소의 보건의료인력조차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

### 약속

- 동마다 건강증진지원센터 설치, 읍면 보건지소 인력 등 지원 강화
- 공공의료복지 허브 구축
  - 시군구 지역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로 의료복지허브 구축
  - 시도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시립병원)’을 묶은 특수법인 설치
  - 선진 외국 수준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
  - 공공병상 필요도에 따라 지역거점 지방의료원 단계적 확충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불균형 해소
  - 모든 의과대학 정원의 10% 추가 선발. 지역균형선발 도입 및 전액 국가장학금 지급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 간호 인력 등 부족지역에 정원 추가 배치 및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대형병원 쏠림 중심의 낭비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억제, 지역수가가산제 도입
- 지역간 건강불평등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건강취약지역에 건강 인프라 집중 확충

## 7. 지역간 보육과 교육 격차 해소

### 진단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2015년 기준 서울시 25.7%, 부산 13.6%, 강원 12%인 반면, 대전 3.2%, 대구 3.4%, 충남 4.95 등임. 어린이집이 아예 미설치된 지역도 46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공립어린이집 건축 시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이 과중하기 때문에 보육의 질도 점차 지역별로 양극화되고 있음
-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 · 유연성 중요. 우리나라는 대학서열과 울타리인데, 협력하고 융합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 약속

- 보육균형발전지표 도입으로 지역간 보육격차 해소
  - 국공립 비중 및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 국고 지원 확대
  - 어린이집 미설치된 466개(읍면 433개, 동 33개) 지역에 국공립 설치 지원
  - 리모델링, 민간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등으로 20~30억에 달하는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비용 절감
- 울타리 넘어 유연한 시스템, 서열 넘어 대학균형발전 시스템 구축
  - 대학 네트워크, 대학 연계협력법 제정
  - 1단계는 공동 교육과정, 학점 교류, 전학, 전과, K-MOOC 등 울타리 넘어 교육과정 클러스터, 2단계는 요건 부합하면 공동학위, 3단계는 공감대와 합의 있고 여건 구비시 통합전형

---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 지역별 공약



서울	경기
광주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전남
부산	전북
울산	충남
인천	충북
세종	제주
강원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항 제1호를 기준으로, 복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함

## 시민행복 노동특별시 '서울'

### 진단

- 전월세 대란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함. 또한 오세훈 시장 시절 진행됐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 노후지역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붕괴 가속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중앙정부의 경인운하 연장사업으로 인해 한강의 자연성을 훼손시키는 개발정책이 지속되고 있음(2018년 여의나루 통합선착장, 2025년 잠실 국제업무교류복합지구 및 잠실야구장 수변이전)
- 박원순 시장의 노동존중특별시 선언 이후 광역단체 최초로 노동행정국이 신설되는 등 노동행정이 강화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고 노동이사제 실효성 확보 등 과제가 남아 있음

### 약속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통한 전월세 난 해결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정임대료제도 도입
- 대형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 한강의 무분별한 개발 중단, 경인운하 연장 폐기
- 노동존중특별시의 완성

## 세계인과 함께 하는 민주인권도시 '광주'

### 진단

-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외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주력사업이 부재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재정 확충이 어려움
- 광주광역시가 2004년부터 약 5.3조원을 투자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략적 문화콘텐츠(contents)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학·민·관 대표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노동자 경영참여, 대기업유통업체 진출 등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시도되지 않음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과 사적지 원형 보전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약속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완성
- 친환경자동차·에너지 산업 육성
- 노동자 경영참가,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 재벌유통회사 지역상권 진출 제한 등 <광주형 산·학·민·관 사회적 합의> 지원
- 5.18 민중항쟁 진실규명과 구 전남도청 원형보전
- 국가 트라우마(trauma) 치유센터 설립

## 삶을 보듬는 미래도시 '대구'

### 진단

- 2016년 연간 청년 실업률 12%(청년 실업자 5만 4천명)이 전국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일자리, 바른 일자리가 없는 환경 속에 미래 사회 동력이 위축되고 있음
- 시립희망원 인권 유린 등 위탁 복지 시설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복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복지비율 지수 0.69로 전국에서 최하위임
- 사드(THAAD) 배치 유탄으로 지역 경제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지역 수출국대상 1위인 중국이 본격적인 통상 규제에 나설 경우 지역 산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
- 의료 및 지역 관광업의 경우 작년 9월 이후 대구공항을 통한 중국인 입국이 1만명 이하로 줄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약속

-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사드 배치 즉각 중단
- 친환경·미래 산업(무인이동체,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구·광주 내륙철도(달빛고속철도) 건설
- 대구 시립 희망원 사태 해결 및 장애복지사업 적극 지원

## 안전한 생태과학도시 '대전'

### 진단

- 대전광역시에는 대덕연구단지 조성에 힘입어 풍부한 연구개발(R&D) 자원 및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장점이 있음
- 국토 중앙에 입지한 국내교통의 중심지라는 장점이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고용성장 잠재력이 약하고, 영세업체 중심의 서비스 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수년 간 불법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입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실한 내진보강공사 진행, 원자력폐기물 불법 매립,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용후핵재처리실험) 계획 등으로 인해 도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대전의 주요한 생태축인 월평공원-갑천을 둘러싸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추진 중임. 도시생태계 보전과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생태보전 중심지 조성이 필요함

### 약속

- 파이로 프로세싱 즉각 중단
-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 월평공원을 대전 생태보전중심지로 조성
- 원도심 재생에 구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 탈핵에너지 전환의 도시 '부산'

### 진단

-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음. 현재 인구는 350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심하며, 동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하지만 장기 미래전략에 기초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용산사태 이후 난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음. 엘시티(LCT) 문제는 부산 지방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부패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처벌은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
- 부산은 핵발전소 인근 인구밀집이 세계 최대이지만 신고리 5,6호기의 승인으로 원전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임. 또한 지난 9월 지진과 각종 비리, 부실로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후쿠시마 사태 이후 탈핵운동의 수도는 부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위기의식과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약속

- 실질적인 해양수도의 기능 강화
-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등 세계가 주목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의 도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전환
- 부산 장기 미래전략에 따른 도시계획 공공성 강화
- 미군 8부두와 55보급창 이전 등 원도심의 주민친화적 재생

## 안전한 삶 · 신 산업수도 ‘울산’

### 진단

- 울산은 다수의 수출대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산업수도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의 수출 실적과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대기업의 부진은 협력 중소기업체의 위기로, 다시 지역 상권의 침체로 전파되고 있음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진과 핵발전소 안전 관리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울산은 산업 특성상 위험물질의 취급이 많고 작업공정이 위험해 재해발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하지만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할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함

### 약속

-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
- 울산공공종합병원 건립
- 조선산업 활성화
- 지역 대중교통과 연계한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 강동권 생태친화형 해양관광지구 개발
- 영남알프스, 해안지구, 산업시설을 연계한 산악 · 해양 · 산업 복합관광도시 조성
- 국립 3D프린팅(3D Printing) 연구원 설립

## 교류 · 협력 · 상생의 평화경제도시 ‘인천’

### 진단

-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이 발표되면서 인천은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 비약한다는 명확한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어떠한 것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서해상의 불안한 안보상황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도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인천의 주요한 과제는 동북아의 관문도시이자 물류중심도시라는 원래의 미래 전략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구축을 통한 남북관계의 긴장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동시에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 항만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물류중심 도시로의 기능강화, 교통망 재정비 추진이 요구됨

### 약속

-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
- 서해5도 NLL 평화수역을 위한 남북 수산물 경협사업 추진
- 인천공항 항공기정비사업(MRO) 특화단지조성, 인천항 배후단지 재개발
- 해경부활 및 연안여객 준공영제 추진 국가지원
- 영종-청라 제3연륙교 조속 착공 및 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비용 국가지원
- 부평미군기지 조속반환, 국가책임 오염정화, 녹지 · 생태 시민공원조성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모델 '세종'

### 진단

-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신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지역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회의 서울 잔류로 공무원의 잦은 출장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심각한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 함.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역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임

### 약속

- 대통령 제 2집무실 세종시 설치 (국무회의, 부처별 업무보고 개최)
- 국회 분원 설치 (세종시 소재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금강의 재자연화
- 서해안 화력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 생명! 평화! 경제가 살아 숨 쉬는 '강원'

### 진단

- 대한민국 생태환경의 보고인 강원도는 높은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향후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역사·문화·관광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 강원도의 다양한 관광·산업 자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생태 보전을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도시와 농어촌, 영동과 영서,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함
- 현재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며,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남북 긴장완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약속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강원평화경제 실현
  - 금강산관광 재개, 제2의 개성공단 철원평화공단 건설, 동해안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강원도 정주여건 개선 및 지방재정 확대
-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인력 양성
- 삼척 원전건설 백지화, 강원도 청정 재생 에너지벨트(Energybelt) 조성

## 첨단과학과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안전 '경기'

### 진단

-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총인구는 전국의 24.6%를 차지하고 있음. 각종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제활동인구(679만명), 취업자(652만명) 수를 나타내고 있음
- IT(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display) 등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보유하고 있고 첨단제조업체가 입지하여 첨단지식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의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고 있음
- 경기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40세 미만 인구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생산가능 인구의 노년부양비, 의료비 급증 등을 통해 향후 지역 내 사회복지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역총생산의 80%이상이 경기남부에 치우쳐 있을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약속

- 판교, 광고, 수원, 일산, 광명시흥 지구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 수원화성, 남한산성, 행주산성 등 세계문화유산 지구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 파주·연천·고양·김포의 통일관광특구 및 비무장지대(DMZ) 평화 생태 허브 조성
- 안산 세월호 참사 추모관,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건립

## 비정규직 없는 일하기 좋은 행복한 '경남'

### 진단

- 창원·의령의 기계부품산업, 거제의 조선산업 등이 경남의 주력 산업이었으나 현재는 이들 업종 자체가 사양길을 걷고 있는 상태임. 특히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은 향후 경남지역 고용구조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경남은 기계부품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가 장기간 유지됨으로써 청년층을 흡수할 만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함
- 경남 서부권의 경우 농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약속

- 미래산업 육성
  - 의료장비 서부권 한방산업, 김해·양산지역 정밀의료기기산업
-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센터설치
- 조선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안정대책 마련
- 낙동강 수질 개선(합천 창녕보 해체 검토 등)
- 우포늪·주남저수지 체험형 자연생태공원 확대
- 내륙 및 해양 관광지원 강화(서부권 체험형 관광육성 등)

## 원전제로! 친환경에너지의 메카 '경북'

### 진단

- 경북은 유구한 역사 전통문화가 보존되는 지역임과 동시에 포항(철강), 구미(전자), 경주·경산(자동차 부품)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산업화·현대화를 이끌어 왔던 지역임
- 최근 들어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생산과 수요위축으로 포항철강공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미의 전자 대기업 수도권 이전 등으로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임
- 경북 동해안에 산재한 핵발전소 위주의 전기에너지 정책의 축소와 폐기가 요구되고 있음. 향후 수립하게 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약속

- 영일만 신항 활성화
- 원전 클러스터(cluster) 폐지, 경북 동해안에 해양 풍력 단지 건설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정주여건 조기 안착
- 포항 안동 간 도로 4차선 확장 조기 완공
-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철거
- 성주 사드(THAAD) 배치 백지화
-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이 없는 중3까지의 무상급식 실시



## 정의롭고 활기찬 생명경제 '전남'

### 진단

- 전남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역임. 벼, 배추, 전복, 김, 천일염 등 농수산물 생산량 전국 1위 지역으로 미래의 식량위기 시대를 대비한 식량주권 최후의 보루이기도 함. 하지만 한미·한중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하여 농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 전남 서남권 경제의 근간인 조선산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리고 있고, 재벌기업의 복합쇼핑몰로 인해 중소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음
- 따라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전남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모색이 필요함

### 약속

- 친환경 쌀 직불금을 1헥타아르(ha) 당 연 400만원 지급
- 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 조선산업 활성화 지원
- 햇빛발전소 지원 및 녹색에너지로의 전환
- 차세대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 팽목항과 목포신항만에 세월호 순례지 조성

##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북'

### 진단

- 고유한 역사와 전통문화가 보존되어 있고 산과 들,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전북은 과거부터 농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산업의 중심지였음
- 동학혁명의 발상지이고 전주대사습놀이, 전주국제영화제 등 역사와 전통문화예술이 살아있는 지역임
-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를 잘 보전하고 농생명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식량주권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해야 함
- 전북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자연을 연계한 사업들을 배치하여 문화와 관광의 메카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약속

- 농생명산업 육성·발전
  - 토종 종자 육성, 전국 로컬푸드(local food) 육성 전문기관 설립
- 새만금민관합동검토위원회 설립(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문제 해결)
- 해수유통 조력발전을 통해 60만 가구 전기 공급
- 평화인권박물관 건립
- 청소년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둘레길, 16개 시군 둘레길 사업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선순환 사회 '충남'

### 진단

- 충남에는 천안 삼성단지, 아산 현대자동차, 당진 현대제철, 서산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장치산업이 자리 잡고 있음. 이에 따라 충남지역 경제는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 주도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소득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생산 대비 소득수준이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임
- 이는 충남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상당 부분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임. 충남지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한 대다수 대기업들의 본사는 여전히 수도권에 있고 충남지역을 생산기지로만 활용하고 있음
- 충남의 대규모 장치산업은 이른바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에너지 다소비형·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임. 특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어 충남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임

### 약속

- 석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 (당진에코파워, 신서천화력)
-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을 미래형·자원순환형 산업으로 전환
- 지역 부가가치 역외유출 감축을 통한 지역소득 선순환구조 구축
- 방조제로 훼손된 충남의 연안하구에 대한 전면적 생태복원 실시

## 친환경 먹거리, 생명과학의 미래 '충북'

### 진단

- 충북의 경우 음성, 진천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가 많이 이루어졌고 인구증가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내수경기는 침체상태이며 영세자영업자들의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충북 전체 수출 물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음. 청주공항 이용 관광객이 대폭 감소했고, 중국 수출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던 도내 중소기업과 식품업체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충북은 괴산을 중심으로 유기농엑스포(Expo)를 개최했을 정도로 친환경농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임. 친환경농민들의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하여 농민소득을 높이고, 첨단농업 전문기술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충북 미래 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음

### 약속

- 산업단지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
- 괴산 유기농농업육성 등 친환경농업육성
- 충북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 오송-충주-제천 바이오산업 벨트 조성

## 서민행복 · 생태평화도시 '제주'

### 진단

- 국제자유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음. 하지만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 난개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등으로 도민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음
-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심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제2공항이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민관 갈등이 재현되고 있음. 최근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창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주도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약속

- 「제주특별법」을 「지방자치 확대와 환경보전우선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
- 제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투기 억제책 실시
-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4.3 특별법」 개정)
-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제2공항 원점 재검토, 공군기지 창설 중단
- 강정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철회

---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 행정 조직



- 
- 1 '김영란법' 강화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 도입
  - 2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축소·통제
  - 3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 4 감사원 독립성·전문성 강화
  - 5 공공기관 안전 중심 경영 강화
  - 6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 1. '김영란법' 강화 및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 도입

### 진단

-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 법'이 시행됐으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부분이 배제되어 부정부패 근절에는 실패했음
-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관리감독·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UN 반부패협약, OECD 가이드라인,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에 담겨있음.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관련 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함

### 약속

- 부정부패 근절 실효성 확보를 위한 '김영란법' 개정
  - 1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직무 관련성' 적용 폐지
  -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기본으로 두고, 예외사유를 적용
  - 적용대상은 '공직자와 배우자'에서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
  - 처벌조항 강화(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및 징벌적 몰수제도 도입)
- 투명한 공직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 공직자 취임 시 뿐만 아니라 매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 각 부처 이해관계충돌 심사관 도입, 처리내용 조사 및 위반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 2.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축소 · 통제

### 진단

- 2015년 8월 임시국회에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4700억원 수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됐음. 2015년 기준 8,800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는 국가기밀 등 이유로 배정받는 예산으로 국회 예산 통제로부터 자유로움
- 2006년 9월 국회 감사청구에 의해 4개 부처의 감사 결과, 상당 부문이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등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했으며, 구체적 용도 파악이 어려워 확인조차 불가능 함
- 2008년 국회는 특수활동비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방법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각 정부부처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한 바 있음

### 약속

- 특수활동비로 지출할 수 있는 특정업무 명시
- 국회가 부처별 특수활동비 필요성 평가 후 특수활동비 배정
- 특수활동비 사후결산제도를 도입하여 5년 혹은 10년이 지난 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통제장치 마련



### 3.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 진단

- 토지, 전력, 철도, 수자원, 항만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국 수자원공사의 경우 4대강사업으로 약 10.8조원의 금융부채가 증가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경영감독과 사업감독 기능의 목적과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주무부처 정책 실패로 부채 증가 시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흡함
- 공공기관 이사회에 전문성·독립성이 결여되어 경영감시 통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내부 직원 비리 및 복리후생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인사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약속

-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 추천권 국회에 부여, 노동·시민대표 위원 임명
- 해당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 이사 포함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겸임 금지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4. 감사원 독립성 · 전문성 강화

### 진단

- 감사원은 세입 · 세출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 직무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헌법 기구임. 감사원은 중앙부처지만, 국가원수로서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에 행정부 소속은 아님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원의 직무수행은 어려움. 4대강 사업 관련 양건 감사원장 중도 사퇴, 세월호 특별감사, 자원외교 감사 등에서 드러났듯 대통령 및 정치권력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의 독립성 및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함
-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감찰 수행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감사원 업무에 법규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감찰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 현행 감사위원 자격은 고위관료, 법조인(판검사 · 변호사), 교수 등으로 매우 협소하고, 임명절차 역시 최소한의 검증 없이 대통령 임명으로 이루어짐

### 약속

-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고, 권한 조정으로 전문성 강화
- 감사원의 직무감찰 업무를 폐지하고 성과감사 중심 개편
- 감사위원 자격을 다양화하여 감사전문가 임명 보장
-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4년 중임제에서 최소 6년 이상으로 변경)

## 5. 공공기관 안전 중심 경영 강화

### 진단

- 공공기관은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안전문제에 관한 검사와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민간업체 증가와 더불어 이로 인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문제도 커져가고 있음
- 현재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조직은 안전본부, 안전품질실, 비상안전계획실 등 명칭이 기관별로 다르고, 소속 역시 사장직속, 본부장급으로 다양함. 안전전담부서가 없어 안전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조직돼 있지 않으며, 안전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영·전문성도 기관별로 편차가 심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관련 점수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음. 실제로 201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지표 체계 상 안전관련 점수는 '주요사업' 범주 정도에 해당하며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약속

- 모든 공공기관 안전관리실 설치 법제화
-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경영평가 지표 도입
- 내부인원, 안전점검 전문가, 위탁용역업체, 관련 NGO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안전관리운영위' 설치

## 6.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 진단

- 21세기는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로 정부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참여적 시민사회의 매개 역할이 중요함. 1990년대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대폭적 지원과 함께 전성기를 이룩하며,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았으나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영향력도 오히려 약화되었음
- 현재 시민사회단체의 재정기반은 취약한 반면, 정부지원은 단편적·비체계적임. 현행 관련 법률과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음

### 약속

- 정부(50%)·기업(35%)·시민사회(15%) 거버넌스 협력기금 조성(기업 및 사회적기업 출연금 세제혜택 부여)
- 정부·기업·시민사회 간 실용적 협력사업 개발·지원(자원봉사 프로그램, 공익활동 지원, 사회적 모니터링기능 지원 등)
- 시민사회 활동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내실화
- 일자리 생산 및 지역문제 해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국민이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며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촛불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들의 뜻을 담은 개헌이 돼야 합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지향을 헌법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헌법 개정 논의는 지나치게 권력구조 논의로 치우쳐져 있어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헌법은 첫째,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시민들의 자유권, 정치적 권리는 물론이고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제헌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익균점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5.16 군사쿠데타로 사라질 때까지 있었던 조항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 모두가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또,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 차별이 심한 나라인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될 때입니다.

또한 헌법에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의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도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상 용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국가의 고용안정 의무,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 여성 노동의 보호,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본권을 보장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정보화 시대



에 걸맞는 정보기본권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권 · 건강권의 신설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헌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논의에서 정부형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현재보다 커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권력구조 개헌의 필수적 전제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 논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 비례성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개헌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 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16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제도만으로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 참여의 다양한 제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소환제, 개헌안 · 법률안을 국민이 발안하고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발안제, 주요 정책과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하고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제와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력을 국가권력의 범위 내에서 재분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극도로 중앙집권화된 우리의 국가시스템은 이제 지방분권 국가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라는 점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과도합니다.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분점하는 것임을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의 과세권 보장, 국가의 지방재정격차 해소 의무 명시 등 과감한 지방분권의 원칙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등 양원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상원은 귀족원, 지역 또는 직능대표성, 입법과정의 신중성과 상호견제 등의 측면에서 마





련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양원제를 통해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낮은 권력을 지향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건 다당제에 부합하는 권력구조는 내각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 저와 정의당은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 국민의 판단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특히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과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마땅히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



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새 헌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권력구조가 정부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각책임제나 내각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의원집정부제로 결정될 경우에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2020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헌법을 발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문제와 관련해 선거 시기에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시 선거 이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중론을 모아 결정될 일입니다.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주권자인 시민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헌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사회경제권이 대폭 확대되고,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을 주권자가 채울 수 있도록 참정권이 확대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겸허하게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하는 개헌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 9대 대선 공약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1. 재원조달 방향

-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GDP의 25.1%로 OECD 평균 34.1%의 9% 정도 부족(약 144조원 부족)하여 복지지출도 그만큼 부족함.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하되,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격차를 절반으로 줄여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불로소득 과세, 부자증세 등 조세 형평성 제고, 보편증세 확대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할 것임
- 이와 함께, 연기금의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재정사업의 지출 개혁을 통한 가용 재원을 확대할 것임

### 2. 재원조달 방안

#### 1) 조세 개혁

- 복지 재원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
- 법인세 최고세율(25%) 및 최저한세율 인상과 사내유보금 과세
- 소득세 누진세율과 부동산세 보유세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강화
-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폐지와 기금 간 통폐합 등 재정의 효율성 증대

## 2) 국민연금 투자 및 사회보험 인상

- 실업급여 대상 및 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하고,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 국민연금을 활용, 공공임대주택, 장기요양시설 등에 사회 공공투자

## 3) 재정지출 개혁

- 연례적인 이월 및 불용액 사업, 낭비성, 유사중복, 저효과성 사업 예산 조정 및 전달체계 개선
- 기금 일몰과 유사중복 기금의 통폐합, 부담금 현실화와 감경 축소



### 3. 재원 조달 방안

내역	금액 (연평균)
<b>조세개혁</b>	70.0조원
1. 사회 복지세 - 소득세, 법인세 등에 10~20% 부가	21.8조원
2. 법인세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등	10.6조원
3. 소득세 - 세율 개편,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등	14.6조원
4. 부동산세 - 시가 반영 및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 등	15.4조원
5. 상속·증여세 - 상속공제 5억 한도 등 실효세율 강화	1.5조원
6. 탄소세 - 에너지원별 탄소세 부과	1.3조원
7. 비과세 감면 - 복지확대 연동 비과세 감면 50% 축소	4.8조원
8. 부담금 - 부담금 감경 축소 및 현실화	1.0조원
9. 기금 - 일몰 적용 및 통폐합 등	3.1조원
<b>사회보험 인상</b>	20.3조원
1. 고용보험 - 보험요율 인상	6.1조원
2. 건강보험 - 보험요율 인상	14.2조원
<b>국민연금 - 사회책임투자확대</b>	8.0조원
<b>재정개혁</b>	11.7조원
1.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 예산 축소	2.5조원
2.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2.0조원
3. 낭비성예산, 저효과 사업 예산 축소	3.1조원
4. 기금 일몰 적용 및 통폐합 등	3.1조원
5. 부담금 경감 축소 및 현실화	1.0조원
<b>합 계</b>	110.0조원

#### 4. 공약이행 소요 자원

분야 및 주요 내용	금액 (연평균)
고용·청년 -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 사회상속제 등	19.9조원
농민 - 농민 기본소득, 직불금 확대, 청년취업농 지원 등	4.6조원
중소 상인 - 카드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등	1.0조원
육아 보육 -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11.0조원
교육 - 등록금 무상 및 반값, 고교 무상, 학교환경 개선 등	8.2조원
주거 -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확대, 대학생 주거비 등	5.7조원
보건 의료 - 어린이병원비 무상, 병원비 연100만원 상한제 등	18.0조원
노인 - 모든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장기 요양 지원 등	14.0조원
복지 - 부양의무제 폐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등	16.4조원
안전 지방자치 - 지방재정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8.1조원
국방 통일 - 병사 월급 인상, 한국형 모병제 도입 등	3.1조원
<b>총 소요자원</b>	<b>110.0조원</b>



제 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 노동이 당당한 나라

2017년 4월 15일 초판 1쇄 인쇄

2017년 4월 15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정의당

펴낸이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 정책본부

펴낸곳 (주)피플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김종기·황경실

### 공약개발단

공약개발단 단장 : 김용신 정책본부장

공약개발단 위원 : 강훈구, 고광용, 김건호, 김명정, 김수정, 김수현,  
김하늬, 명등용, 박항주, 손종필, 송경원, 오송이,  
윤재설, 이현정, 임승준, 좌해경, 최철원





